



“국민연금이 드리는 호반의 휴식처”

청풍리조트에서 **수급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드리는 **특별 할인 혜택**

이용안내

1. 국민연금증 카드 또는 신분증 소지(수급자 확인시 필요)
2. 수급자 본인이 직접 이용시 적용(수급자 미 동반시 일반 요금 적용)

할인혜택

1. 객실요금

단위 : 원(VAT 포함)

수급자	레이크호텔				힐하우스	
	스탠다드	슈페리어	훼미리	스위트	디럭스	Jr.스위트
	146,000	194,000	400,000	490,000	264,000	396,000
주중	43,800	67,900	140,000	171,500	92,400	138,600
할인율	(70.0%)	(65.0%)	(65.0%)	(65.0%)	(65.0%)	(65.0%)
주말	58,400	87,300	180,000	220,500	118,800	178,200
할인율	(60.0%)	(55.0%)	(55.0%)	(55.0%)	(55.0%)	(55.0%)
성수기	87,600	116,400	240,000	294,000	158,400	237,600
할인율	(40.0%)	(40.0%)	(40.0%)	(40.0%)	(40.0%)	(40.0%)

이용방법

1. 수급자 본인 1명당 2실까지 예약 가능
2. 단체 행사(단체 식사 및 연회장 이용) 진행시 수급자 객실요금 적용 불가

기타사항

- 레이크 호텔 객실 내 취사 불가 / 힐 하우스 객실 내 취사 가능
- 사우나 및 수영장은 매주 월요일 휴장



이용 및 예약 문의 : 043)640-7000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1798

청풍리조트
국민연금이 드리는 호반의 휴식처

www.cheongpungresort.co.kr



2022 Pension Forum
겨울호 Vol.88

기초연금 그리고 연금개혁	05
기초연금의 과거: 2014년 기초연금 도입 결정 과정 문현경, 홍정민	08
기초연금의 현재: 기초연금에 제기되는 쟁점 및 향후 과제 최옥금	19
연금개혁의 딜레마와 보편적 기초연금 최영준	28
국민연금 A급여와의 관계를 고려한 기초연금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유종성	39
기업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 - CDC 제도를 중심으로 유호선	55
지난 1년 간의 노동시장 평가: 취업자 수, 경제활동참가율, 임금상승률을 중심으로 황선호	63
국민연금 관련 통계(2022년 6월말 기준)	74
연금포럼 발간목차	79



기초연금 그리고 연금개혁



류근혁(서강대학교 특임교수)

기초연금은 2014년 5월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해 7월 1일 시행되어 2014년 7월 24일에 기초연금 이름으로 첫 지급을 시작한 이후 8년여 시간이 지났다. 필자는 당시 국민연금정책과장 그리고 기초연금사업 지원단장을 맡아 법 제정과 시행의 실무 책임을 맡아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일을 수행한 바 있다.

기초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이전에 존재하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하여 기존 10만 원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을 20만 원으로 인상하며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국민연금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연계 감액장치를 적용하여 도입되었다.

기초연금 제도 도입에는 무수한 난관이 있었다. 필자가 2022년 5월 10일 퇴직하기까지 담당했던 여러 보건복지 정책 중에서 가장 길고 어렵고 힘들었던 과제 중의 하나였다.

그도 그럴 것이 18대 대통령 선거공약 중에서 가장 큰 공약 중의 하나였을 뿐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각 정당과 언론 그리고 많은 국민이 기초연금 제도가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고 연일 무수한 언론 기사들이

쏟아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거기에다 기초연금 도입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정치적 공방과 함께 박근혜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과 관련한 여러 이슈로 중도에 사임하는 일도 발생하는 등 술한 논란과 이슈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한창 기초연금 이슈로 혼란스러운 시기인 2013년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모든 국회의원이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한 질의와 지적을 하는 등 큰 관심을 받는 주제였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논의를 시작으로 1년 반의 법령 개정과 제도 도입 준비를 거쳐 드디어 2014년 7월 24일 기초연금 첫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초연금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당초에 기초연금 지급액은 물가상승률과 5년 마다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인상, 조정하도록 하여 매년 물가인상률을 계산하고 이를 반영하였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을 개선과 노후 생활의 실질적 안정을 위해서 20만

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였다.

우선 2019년 4월에는 소득 하위 20% 대상자에게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였고, 2020년 1월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2021년 1월에는 전체 대상자인 노인 70% 수준에 대해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였다.

기초연금 제도는 빈곤한 노인에게 대한 생활 지원이 목적이다. 기초연금의 효과에 대한 기준으로는 보통 노인빈곤율 지표를 많이 사용한다. 우선 기초연금 제도에 의한 빈곤율의 개선은 노인의 시장소득과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이 포함된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분석이 가능한데, 우선 노인 시장소득 빈곤율을 보면 2016년 57.5% 수준에서 2020년에는 58.6% 수준으로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으나 실제 노인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노인빈곤율을 기준으로 보면 2016년 43.6% 수준에서 2020년에는 38.9% 수준으로 개선되어 처음으로 노인 빈곤율이 30%대에 진입하기도 했다.¹⁾

특히, 단계적으로 소득 하위 20%, 40%에 대해 기초연금 급여액 인상이 있었던 2019년과 2020년의 기초연금을 통한 노인빈곤율 감소효과는 2016년에 4.4%p에 달했던 것이 2020년 6.5%p까지 확대되는 효과가 있기도 하였다.²⁾

분명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노인빈곤율이 낮아지는 정책효과는 있다는 것이 이를 통해 증명된다.

기초연금 도입 이후 국민연금연구원에서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설문조사 참여자의 89.3%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였

고, 병원비나 생활비용 부담 경감 등을 수급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어느 정도 정책 효과는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³⁾

이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발전방안 마련을 준비, 추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새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공적 연금개혁방안을 만들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 30만 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며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완화하여 현재보다는 조금이라도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공약하였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초연금은 분명히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노인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초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문제 역시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이다.

당장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우선 2024년에는 현재 30만 원 지급시 23조 3천억 원이 30조 5천억 원으로 30.9%가 더 소요되며 2030년에는 32.9조 원에서 44.7조 원 그리고 2040년에는 48.6조 원에서 71.9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⁴⁾

이처럼 재정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증가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이와 함께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재정을 더 증가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면서 인상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나,

1)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건복지부 자료 재인용
2) 2021년도 가금복 자료를 활용한 추정치(국민연금연구원) 재인용
3) 국민연금연구원 설문조사(21) 재인용
4) 2022년 9월 국민연금연구원 및 보건복지부 자료



이 역시 단기기간의 재정 절감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구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2030년, 2040년의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지출은 기초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성숙과 함께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당장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제도발전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서 또다시 기초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문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두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아마도 낮은 출생률과 노인인구 증가 등 제도 환경적 요인과 함께 낮아지는 잠재성장률 등에 의한 기금운용 수익률 문제 등을 감안하면 이전의 재정추계보다는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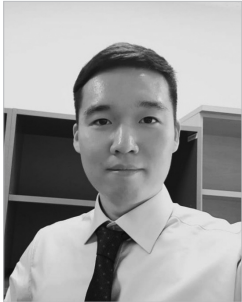
국민연금 개혁이 실제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될지는 예상하기 어려우나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개혁으로 부분적으로 손해를 보는 계층이나 세대는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모수개혁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A급여(소득재분배 급여)나 B급여(소득비례 급여)를 검토하는 구조개혁, 더 나아가서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되는 전체 공적연금 체계를 포함하는 큰 틀에서 연금개혁이 논의되고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층이나 세대가 존재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이번에 인상되는 기초연금 10만 원에 소요되는 재정은 일부라도 공적연금 개혁에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기초연금 인상액을 균등 부분인 A급여를 조정하는 데 사용하거나 국민연금에서 소외된 저소득 저연금 수급자 또는 무연금자를 위한 연금지급액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무엇

보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제도가 되어야 하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연금 개혁이라면 많은 국민이 동의하는 개혁안을 만드는 데 활용하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이다.

기초연금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 문제를 어느 정도 개선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낮은 성숙도를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당분간은 기초연금은 노후 빈곤을 보완하는 큰 역할을 해야 하며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공적연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의 개혁을 목전에 둔 지금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제도적 완충, 마중물로서 역할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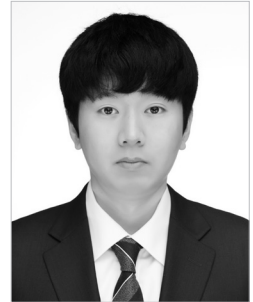
다시 시간이 흘러 또 다른 연금개혁의 시즌이 오고 있다. 아마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회 등 정부 기관과 많은 전문가들이 고심하고 고뇌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여러 사회적 논의도 있을 것이다. 부디 성공적인 개혁논의를 통해 장기간 지속 가능한 공적연금 체계가 만들어지길 기원한다.

여러분의 진투를 빈다.



문현경(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기초연금의 과거: 2014년 기초연금 도입 결정 과정¹⁾



홍정민(국민연금연구원 주임연구위원)

I. 들어가며

기초연금은 2008년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을 계승 및 발전하여 2014년 7월 도입된 비기여형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과 더불어 중추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제도·법적 측면에서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보다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낮은 급여 수준(A값 5%; 2008년 기준 약 9만 원)과 불명확한 장기 발전 방향을 주요 특징으로 한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수준(A값 10%; 2014년 기준 20만 원)과 명확하고 항구적 특징을 지닌 제도이다(이용하·김원섭, 2013). 법적 측면에서는 지급 대상 범위와 연금액 인상 계획이 부칙에 명시하고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는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 2008. 2. 29. 법률 제8852호)과 달리, 기초연금은 핵심적인 제도 사항을 본칙으로 명시할 뿐만 아니라 일반 노인 대상의 소득 지원제도로 명시한다(기초연금법, 2014. 7. 1. 법률 제12617호).

최근 본격화된 공적연금 개혁논의 속에서 향후 기초연금이 어떤 제도로 변화할 것인지 학계는 물론 정책당국 입장에서도 큰 관심사이다. 현 기초연금의 제도적 외형에 주목하여 다양한 개혁 방안이 제안(김원섭 외, 2016; 류재린 외, 2022)되고 있지만, 정작 현재 기초연금이 초기에 어떤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에서 논의 및 도입되었는지 주목하는 연구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2014년 도입된 이래 10주년을 앞둔 역사 속에서 기초연금의 과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논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하면, 현재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관계 설정, ② 국민연금에의 가입 유인 영향, ③ 국민연금 연계 금액의 적절성 등과 같은 주요 쟁점은 과거 2014년 기초연금 도입 결정 과정에서도 줄곧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원고는 기초연금의 현 상황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논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014년 기초연금 도입 결정 과정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기초연금의 전신(前身)인 기초

1) 본 원고는 문현경 홍정민(2022)의 일부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노령연금이 2008년 도입된 이후의 논의 과정을 간략히 소개한다. 다음으로 제3장과 제4장에서는 2014년 기초연금 도입 결정 과정을 네 시기로 분류하여 연대기 순으로 정리한다. 제3장은 ①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②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시기로 나뉘어 살펴보고, 제4장은 ① 정부안의 확정과 ② 국회 논의 시기로 나뉘어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제3장과 제4장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향후 기초연금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이후 과정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은 2007년 국민연금 개혁으로부터 시작된다. 국민연금의 재정적 불안정성과 사각지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보험료율(9%)은 유지하되 급여 수준을 점진적으로 낮추고(2008년 60%→2028년 40%), 기초노령연금을 통해 사각지대 축소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 상쇄 등을 이루고자 했다. 이렇게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시민에게 지급하는 측면에서 보편성을 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자를 선별하는 등 공공부조의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김원섭·이용하, 2014).

하지만 2007년 개혁 이후에도 국민연금의 재정적 불안정성과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존재했다. 따라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및 재구조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및 재구조화 소위원회(이후 통합소위)’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되는 등 기초노령연금의 재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통합소위는 다음

과 같은 두 가지 기초노령연금의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첫째, 기초노령연금을 공공부조화하는 축소안으로서, 기초노령연금을 빈곤 노인층 대상, 국민연금을 주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운영하여 장기 재정부담 축소와 효율적인 노인 빈곤 완화를 목표로 한다. 둘째,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화하는 확대안으로서, 모든 노인에게 1인 1연금을 보장하는 등 기초노령연금은 세대 간 재분배 역할, 국민연금은 세대 내 재분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합소위는 두 안을 중심으로 약 6개월 동안 9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했지만, 정부가 연금을 이슈화할 생각이 없었기에 결과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국민연금사편찬위원회, 2015).

이후 보건복지부는 통합소위에서 제시한 두 방안을 검토하는 용역을 발주하면서, 기초연금 논의는 학술적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김성숙 외, 2011). 이 연구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선별적 공공부조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검토했다. 첫째, 복지연금 성격의 기초노령연금을 공적연금 미수급자 70%에게 지급하여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상호 독립적인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둘째, 두 번째는 기초노령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노인 보장 부분을 기초노령연금과 통합하여 지급 대상을 30~40%로 축소하는 최저소득보장안이다. 셋째,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급여가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연금을 지급하는 최저연금보장안이다.

상술한 기초연금 관련 논의와 연구가 진행된 이후, 기초노령연금의 역할 설정 등의 쟁점은 2011년 8월 3일 당정 협의에서 국고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편적 기초연금안보다 선

별적 공공부조안을 토대로 한 기초노령연금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김원섭·이용하, 2014). 그러는 와중, 제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등장한 박근혜 前 대통령(이후 박근혜)이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초노령연금의 큰 변화가 예고되었다.

III. 2014년 기초연금 도입 결정과정 ①

1.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는 제18대 대선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으나 이는 오래 전부터 줄곧 유지해 온 정책적 소신이었다. 제2차 국민연금 개혁논의가 한창이던 2006년, 그는 한나라당 대표로서 기초연금 도입을 고수하며 보건복지부와의 비공개 협상을 진두지휘했으며(유시민, 2014), 제17대 대선 한나라당 경선을 앞두고 대한노인회를 방문하여 월 최소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도입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김남권, 2007). 박근혜는 제18대 대선에서 ①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기초연금화, ②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운

영, ③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 인상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다.

제18대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는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2013년 1월 초부터 활동을 시작할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후 인수위)를 통해 기초연금 공약을 구체화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① 기초연금 공약의 대전제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통합 운영의 범위 및 수준, ② 기초연금 20만 원을 차등 혹은 정액 지급하든 65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등을 정해야 했다. 이러한 사항은 실제로 인수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다. 인수위 내 기초연금안의 윤곽은 2013년 1월 28일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나온다. 여기서 박근혜의 기초연금 차등 지급이 언급되며, 대선 때 ‘대외적’으로 알려진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새누리당, 2012) 계획이 다르다는 사실이 공식화된다(〈표 1〉 참고).

박근혜의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 발언 이후, 비판점은 기존에 대외적으로 알려진 대선 공약의 축소와 더불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오히려 역차별을 준다는 데로 향한다

<표 1> 박근혜의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 발언과 그 함의

발언	함의
“이분들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깔아 주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	① 차등 지급 기준: 국민연금 수급 여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기초 부분예다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적인 성격이 있지 않나. 기초연금 부분예다가, 그게 20만 원이 안 되니까 20만 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②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A급여와 연계를 통해 차등 지급 ③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은 조세 재원 ④ ‘통합 운영’은 기금의 통합이 배제된 기능과 제도의 통합
“지금 기초 부분(A급여)이 20만 원이 안 된다. 기초 부분에 10만 원 정도를 더 얹게 되는 거다. 그런데 그것을 20만 원을 다 하게 되면 중복이 되니까 그렇다.”	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A급여는 재분배 성격의 똑같은 기능 수행 (기초연금=국민연금 A급여)

주: 박근혜의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 발언은 머니투데이(2013)에서 발췌함



(김용준, 2013; 김재중, 2013). 따라서 박근혜의 토론회 발언은 상당 부분 수정되었고(신성식·정원엽, 2013; 유근형·홍수영, 2013) 인수위 최종안으로 이어진다(〈표 2〉 참고). 전자와 후자는 다음의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첫째,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은 20만 원에서 국민연금 A급여를 뺀 액수였으나 국민연금 A급여액과 별개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20만 원에서 수급자의 소득과 자산, 국민연금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한 차감액을 엮어주는 방향으로 바뀐다. 둘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즉, 국민연금 A급여가 높을수록) 기초연금은 더욱 감액되는 논리(이후 연계 감액)에서 기초연금이 더욱 가액(加額)되는 논리(이후 연계 가액)로 선회한다. 즉,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높이는 방향성이다. 그러나 두 안 모두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계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방향성이 다를 뿐이다(〈표 3〉 참고).

2.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인수위는 기초연금안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고 그 과정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후 행복위)로 넘어간다. 2013년 3월 20일 출범한 행복위는 제3차 회의를 기점으로 구체적인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논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계할 것인지 혹은 기초노령연금처럼 소득에 연계할 것인지 등으로 수렴한다. 〈표 4〉는 제5~6차 회의에서 논의된 일곱 가지 안을 나타내며, 두 가지 측면에서 각 안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주요 내용 관점에서 (1)~(2)안은 간단하기에 설명을 생략하고, (3)안은 박근혜의 인수위 토론회 발언을 구체화한 것, (3)-1안은 석재은의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 원칙을 안의 형태로 구체화한 것이다(석재은, 2015). (4)안과 (5)안은 대한노인회가 제안한 일정 노인 대상

<표 2> 인수위 기초연금 최종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	소득 하위 70%		소득 상위 30%	
	국민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비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비수급자
10년 가입	14만 원 (A값 7%)	20만 원 (A값 10%)	4만 원 (A값 2%)	4만 원 (A값 2%)
20년 가입	16만 원 (A값 8%)		6만 원 (A값 3%)	
30년 가입	18만 원 (A값 9%)		8만 원 (A값 4%)	
40년 가입	20만 원 (A값 10%)		10만 원 (A값 5%)	

주 1: A값은 2014년 기준 200만 원으로 가정함

주 2: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이용하·김원섭(2013)을 일부 수정함

<표 3> 박근혜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 발언과 인수위 기초연금 최종안의 성격 비교

	박근혜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 발언	인수위 기초연금 최종안
재원		조세
차등 지급 기준		국민연금 수급 여부
국민연금 수급자의 차등 지급 기준 ①		국민연금 연계(가입 기간)
국민연금 수급자의 차등 지급 기준 ②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더욱 감액(비례성; 연계 감액)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덜 감액(반비례성; 연계 가액)
국민연금 A급여 성격 규정	국민연금 A급여=기초연금	국민연금 A급여≠기초연금

<표 4> 행복위 제5~6차 회의 논의안

개요	도해	비고	
(1) 일정 노인에게 0.1A (70~100%)		연계 無	(준)보편 수당
(2) 인수위 안 (70~100%)			국민연금 연계
(3) 최대 0.1A-국민연금 A급여 (70~100%)		연계 감액 (국민연금 가입 기간 ∝ 1기초연금액)	
(3)-1 최대 0.1A-국민연금 중 세대 간 이전 부분		연계 감액 (국민연금 가입 기간 ∝ 1기초연금액)	
(4) 노인 100% 대상 차등 지급 (30/50/70/100% 대상 각 0.1/0.075/0.05/0.025A)		소득 연계	
(5) 노인 70% 대상 차등 지급 (30/50/70% 대상 각 0.1/0.075/0.05A)			범주, 차등 지급
(6) 최저생계비 150% 미만 노인에게 0.1A		연계 無	공공부조, 정액 지급

주 1: A값=200만 원 가정
 주 2: (6)안의 최저생계비 150%는 당시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함
 자료: 국민행복연금위원회(2013a; 2013b)를 재구성함



차등 지급안이며, (6)안은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안한 공공부조안이다. 둘째, (1)안과 (2)안, (4)안, (5)안은 국민연금 성숙과 관계 없이 노인인구가 많아지더라도 일정 노인에게 동일한 기초연금액을 지급하는 반면, (3)안과 (3)-1안, (6)안은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 등 노인소득이 늘어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줄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행복위에서 논의된 다수의 안이 박근혜의 '대외적' 기초연금 공약은 물론 인수위 최종안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규정하며 상당한 불만을 표출한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덜 주는 연계 감액안은 절대 불가하다고 선언하며, 이들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제6차 회의 도중 퇴장하며 사퇴 입장을 밝힌다. 어찌 되었든, 국민연금 연계 감액안[20만 원(0.1A)-국민연금 A급여]은 제7차 회의(2013년 7월 15일)에서 3개의 최종안 중 하나로 포함된다(〈표 5〉 참고). 우선 (1)안은 노인 70%를 대상으로 하되, 인구 비중을 70%로 고정하거나 최저생계비와 같은 소득 기준을 고정한다. (2)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깎는 연계 감액 논리에 기반한다. 마지막으로 (3)안은 양대 노총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줄곧 내세운 노인 80% 대상의 정액 지급안이

다. 행복위는 제7차 회의 논의안의 원칙과 방향성을 최종 합의문에 반영하며 7월 17일에 활동을 마무리한다.

IV. 2014년 기초연금 도입 결정 과정 ②

1. 정부안의 확정

행복위가 2013년 7월 17일 자로 약 6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정부는 위원회 합의문을 토대로 기초연금안을 확정하기 위한 장고에 들어간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세부적인 제도 설계 방안을 맡으므로 행복위에서 합의되지 못한 연계 방식과 지급 범위 등을 둘러싼 정책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임무를 갖게 된다. 부처는 행복위가 종료하고 약 두 달 후인 2013년 9월 25일 정부안을 발표한다.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계한 방향성으로서, 박근혜가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2013년 1월 28일)에서 밝힌 연계 감액안이였다(〈표 1〉 참고). 이는 행복위에서 논의된 주요 안이었을 뿐만 아니라 최종 권고안 3개 중 하나였다. 유력한 정책 대안이던 소득 연계안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안에 비해 기초연금 만액(20만 원)을 지급하는 수가 절반 이상 적으면서도 장기적인 재정 소요가 더 많이 예상되어 탈락

<표 4> 행복위 제7차 회의 논의안

개요	연계 기준	비고
(1) 노인 70% 대상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소득 연계 ① 인구 비중 70% 고정 ② 소득 기준 고정 (예: 최저생계비)	범주, 차등 지급
(2) 노인 70% 대상 국민연금 A급여에 따라 차등 지급	국민연금 연계 (20-국민연금 A급여)	연계 감액 (국민연금 가입 기간 × 1/기초연금액)
(3) 노인 80% 대상 정액 지급 (일부 차등)	연계 無	준 보편 수당

자료: 국민행복연금위원회(2013c)를 재구성함

<표 6> 정부안과 소득 연계안의 비교

	정부안(국민연금 연계 감액안)	소득 연계안
내용	(20-2/3×국민연금 A급여)+10 (소득 하위 70%에게 제공)	① 소득 인정액 하위 30%: 20만 원 ② 소득 인정액 하위 30~50%: 15만 원 ③ 소득 인정액 하위 50~70%: 10만 원
도입 시 만액 수급자 수	353만 명 (기초연금 총수급자 90%)	152만 명 (기초연금 총수급자의39%)
재정적 지속가능성	국민연금 성숙 등에 따라 장기적인 지출 증가의 둔화로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가능	국민연금 성숙 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워 국민연금 연계 감액안보다 재정적 지속가능성 작음
국민연금 비수급자와 수급자 간 형평성	국민연금 수급자(88만 명) 중 70%(61만 명)가 만액 수급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만액 수급자 없음
제도 이해 용이성	국민연금 A급여(가입 기간)에 연계하는 방식 이해 어려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하여 제도 이해 용이

자료: 보건복지부(2013a: 9)를 일부 수정함

한다. 반대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안은 국민연금이 미성숙한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기초연금 만액을 주는 효과를 가지나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발전에 따라 지급액 및 재정 소요는 줄어드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표 6〉 참고).

〈표 7〉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계한 정부안을 기초연금 산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특히, 현재까지 많은 사람이 제도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국민연금 수급자 부가연금(②)과 국민연금 A급여(③), 조정 계수(④)의 의미를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첫째, 국민연금 수급자 부가연금은 기초연금이 2014년 기준으로 당시 기초노령연금이 제공하던 액수(약 10만 원)는 최소로 보장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로 표출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 A급여가 산식에 포함된 것은 〈표 1〉에서도 기술했듯이, 국민연금 A급여와 기초연금이 지닌 소득재분배라는 동일한 속성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 국민연금액 이상의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때 나타나는 중복적인 수혜를 상쇄하기 위해 국민연금 A급여(가입

기간)를 기초연금액의 조정 기준으로 정한다.

셋째, 그럼에도 산식에 조정 계수 2/3가 삽입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만약, 조정 계수가 없으면 ‘기초연금=국민연금 A급여’라는 1:1 관계가 산식 상 형성되어 기초연금의 감액 수준이 극대화되는 등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를 둘러싼 역차별 논란은 심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정 계수 2/3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감액 수준과 역차별 논란을 줄이고자 했다²⁾.

정부는 2013년 9월 25일 발표한 정부안을 토대로 입법 절차에 들어갔으며 두 달 후인 11월 25일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2. 국회 논의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당시 제1야당이던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연계를 둘러싼 상당한 정책적 반대가 잇따랐다. 특히, 민주당은 자당(自黨)의 문재인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소득 연계 기반의 기초노령 연금을 더욱 확대하려는 입장에 기반했기 때문

2) 실제(實例)로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200만 원 소득자로 가정할 경우, 2/3이 없으면 10년, 15년, 20년 가입 시 기초연금액이 각각 19만 원, 14만 원, 10만 원인 반면 2/3이 있으면 각각 20만 원, 19만 원, 16만 원으로 감액 수준을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난다(보건복지부, 2013b: 10).



<표 7> 정부안의 기초연금 산식

$\text{기초연금액} = (\text{기준연금액} - \frac{2}{3} \times \text{국민연금 A급여}) + \text{국민연금 수급자 부가연금}$	
⑤	① ④ ③ ②
① 모든 세대 노인들에게 최소 공적연금 20만 원(2014년 현재가치 기준) 보장 목표	
② 모든 세대 노인들에게 최소 현행 기초노령연금만큼 기초연금(10만 원; 2014년 현재가치 기준) 제공	
③ 국민연금 내 기초연금 성격의 급여 부분 반영	
④ 현세대 노인 빈곤 효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정 계수	
⑤ 기초연금 총수급자의 90%인 약 353만 명에게 기초연금 만액 20만 원 지급(2014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13a: 33)를 재구성함

에 정부안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었다. 정부안의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던 와중, 2014년 6월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재창당하여 새로운 정당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했다. 따라서 정부안의 국회 논의는 활성화되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2014년 2월 발족하여 약 두 달간 활동한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당은 소득 연계의 기초연금을 선호한 반면, 여당과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의 정부안을 고수하며 대치가 이어진다. 결국, 기초연금의 타결은 여야정 협의체가 아닌 여야 지도층 간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최종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계하는 정부안

이 채택되는 대신에, 낮은 국민연금액(30만 원 이하)을 받는 수급자에게는 기초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만액 2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하기로 합의된다. 또한, 소득 역전의 방지를 위해 국민연금액이 30~40만 원인 사람에게도 기초연금 지급액과 합산하여 최소 50만 원은 맞춰주도록 했다. 이러한 기준에서 당시 기준연금액(20만 원)의 150%(30만 원)를 초과하는 국민연금액을 받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의 감액이 적용되도록 설정된다(〈표 8〉 참고). 종합하면, 최종 단계는 결국 국회를 통해 정책 협상이 오고 간 연금 정치가 2014년 기초연금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특성을 갖는다.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초연금법, 2014. 7. 1. 법

<표 8>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방식

구분	산정방식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 150% 이하	기준연금액 = 기초연금액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 150% 초과 ~ 200% 이하	(기준연금액-2/3×국민연금 A급여)+ 국민연금 수급자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 250%-국민연금 급여액 중에서 높은 액수 선택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 200% 초과	(기준연금액-2/3×국민연금 A급여)+ 국민연금 수급자 부가연금액

주 1: 부부 감액과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임

주 2: '기준연금액 250%-국민연금 급여액' 산식은 국민연금 가입에 상대적으로 순응한 저소득 장기 가입자보다 불응한 고소득 단기 가입자의 기초연금액이 더욱 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됨

자료: 국민연금공단(2022: 74)을 재구성함

3) 부부 감액과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다.

를 제12617호). 첫째, 기초연금의 지급 범위는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65세 이상인 시민 중 소득 하위 70%로 한다(제3조2항). 둘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는 대신 국민연금 기금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제4조2항). 셋째,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부칙 제1조). 넷째,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처럼 A값에 연동하지 않고 물가에 연동된다(제5조2항). 그러나 이로 인한 장기 급여 가치의 하락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 수준과 A값 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년마다 평가한다(제9조). 다섯째, 국민연금 수급자의 개인별 기초연금액³⁾은 ①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는 만액, ② 150% 초과 200% 이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 절반)과 기준연금액 사이의 금액, ③ 200% 초과는 국민연금 수급자 부가연금액이 된다(제5조4항).

V. 나가며

기초연금의 도입 결정 과정은 약 1년 반 동안 전개되었다. 본 원고가 기술했듯이, 대부분 논의 과정은 기초연금 지급의 기준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와 소득 연계 중에서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나타났다.

그러나 본 원고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물론, 당시에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긴 하나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논의될 정도로 정치적으로도 큰

사안이였을까? 본 원고는 지면의 한계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세부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을 넘어서 기초연금 그 자체를 어떤 복지 제도로 규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거시적 담론 또한 존재했었을 거라고 추론한다. 왜냐하면, 무엇에 연계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인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공적연금 체계 속에서 어떤 성격과 어느 정도의 중요성 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이기 때문이다. 소득 연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보다 기초연금을 공공부조로 보는 성격이 상대적으로 더욱 크다. 반대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는 공적연금 체계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편중되지 않는 성격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나아가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을 둘러싼 오랜 논쟁은 단순히 공적연금 체계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의 지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의 산식인 ‘기초연금액=(기준연금액-2/3×국민연금 A급여)+국민연금 수급자 부가연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앞서 기술했듯이, 기초연금의 도입 결정 과정은 정책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이 동시에 작용했다. 특히, 후자는 앞 절에서 언급한 기초연금의 감액이 적용되는 구간인 기준연금액 150%~200%에 적용된다. 그러나 정책적인 측면이든 정치적인 측면이든 기초연금의 산식과 기초연금 감액 적용 구간은 당시 2013-14년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기초연금 도입 이후, 기준연금액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나 과연 2013-14년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과 오늘날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이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 따라서 향후 공적연금 개혁논

3) 부부 감액과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다.



의에서 2013-14년에 설정된 기초연금의 산식과 기초연금 감액 적용 구간이 오늘날에도 동일한 정책적 기대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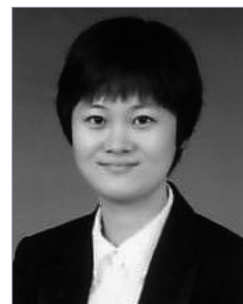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 속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국회 내 연금개혁 특위가 설치된 만큼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국민연금공단(2022). 2022년 직무교재: 기초연금. 전주: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사편찬위원회(2015). 실록 국민의 연금.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 국민행복연금위원회(2013a). 2013년도 제5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 2013년 6월 18일.
- 국민행복연금위원회(2013b). 2013년도 제6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 2013년 6월 27일.
- 국민행복연금위원회(2013c). 2013년도 제7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 2013년 7월 15일.
- 기초노령연금법(2008). 기초노령연금법. 법률 제8852호.
- 기초연금법(2014). 기초연금법. 법률 제12617호.
- 김남권(2007). “박근혜”약속과 상식 통하는 정당돼야”. <한겨레>, 2007년 5월 7일.
- 김성숙, 문형표, 최옥금, 이용하, 강성호, 김경아, 김현수, 유호선, 김순옥, 김형수, 이지은, 신승희 (2011).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 정립 방안. 보건복지부.
- 김용준(2013). “썩었던 국민연금 불만…기초연금이 불 붙였다”. <한국경제>, 2013년 2월 1일 15면 경제.
- 김원섭·강성호·김형수·이용하(2016).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보편적 중층보장체계로의 재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2(4): 1-29.
- 김원섭·이용하(2014).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과정과 평가. 한국사회, 15(2): 69-101.
- 김재중(2013). “‘공공부조’로 변질된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자엔 역차별”. <경향신문>, 2013년 1월 29일.
- 류재린·정해식·이용하·신화연·이다미·이지혜(2022). 공적연금재구조화 방안 연구. 비발간 연구보고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머니투데이(2013). “[전문] 차당선인, 인수위 고용·복지 분과 국정과제 토론회 발언”. 2013년 1월 28일.
- 문현경·홍정민(2022). 2014년 기초연금 도입 결정 과정 분석. 비발간 연구보고서. 전주: 국민연금연구원.
- 보건복지부(2013a). 기초연금 도입 계획. 2013년 9월 25일 설명자료.
- 보건복지부(2013b). ‘14년 7월, 상위 30%를 제외한 65세 이상 거의 대부분 노인에게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2013년 9월 25일 보도자료.
- 새누리당(2012).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 신성식·정원엽(2013).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월 11만~19만원 지급 추진”. <중앙일보>, 2013년 2월 4일 종합 06면.
- 유근형·홍수영(2013).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3만~10만원 더 지급”. <동아일보>, 2013년 2월 4일.
- 유시민(2014).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인터뷰. 면담자: 황창호 박사, 박용수 박사. 2014년 6월 18일.
- 이용하·김원섭(2013). 인수위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 사회보장연구, 29(2): 1-25.



기초연금의 현재: 기초연금에 제기되는 쟁점 및 향후 과제



최옥금(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들어가며

현행 기초연금은 제도의 전신(前身)이라 할 수 있는 노인수당부터 제도 역사가 비교적 짧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이후 노인빈곤 완화 등을 목적으로 제도의 대상과 급여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기존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급여가 최대 2배 상향되어 시행되었으며 이후에도 연금액이 지속적으로 상향되었다. 이에 따라 시행 당시 기준연금액은 20만원이었으나 2018년 9월 25만원, 2019년 노인 하위 20% 대상 30만원, 2020년 노인 하위 40% 대상 30만원, 2021년 이후에는 전체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3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러한 기초연금은 기존 제도들의 한시적 성격을 극복하고 공적노후소득보장에서 영구적 성격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8년이 지난 현재, 기초연금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공약함과 동시에,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연금특위에서 국

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공적연금 개혁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관계 설정 및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제도 간 관계에서의 재구조화 방안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는 등 현행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제도적 틀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기초연금 상황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성과 및 과제를 정리하여 향후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의 역할 분담 방안, 또는 기초연금 발전방향을 논의하도록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II장에서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 내 현황을 진단하고, III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제도 간 관계에서의 현황 및 쟁점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향후 기초연금 발전방향 논의 시 검토할 사항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다.

II. 기초연금 제도 내 현황 진단

이 장에서는 기초연금 제도 내 현황 및 쟁점들

을 몇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도록 한다. 제도 성격과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또한 현행 목표수급률 70%를 유지할 경우의 재정적·사회적 지속가능성 문제, 마지막으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서의 쟁점이 그것이다.

1. 제도 성격과 목적 불명확

현행 기초연금은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여 보편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대부분이 정액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수당적 연금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수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자산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는 부조 성격도 일부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초연금의 제도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기초연금과 관련된 여러 쟁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기초-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로, 기초연금의 제도 성격을 부조로 정의하면 현행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연계감액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약해지고, 기초연금과 일반적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이하 국기초)의 관계에서의 역할과 기능 정립 문제, 그에 따른 기초연금 제도의 빈곤 효율성·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제기도 가능하다. 반면 기초연금의 제도 성격을 연금으로 정의하면 현행과 같이 목표수급률 70%를 설정하여 대상

선정을 위해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기초연금 발전과정을 통해 평가해보면 기초연금은 복지연금(노인수당과 경로연금)에서 기초'연금'의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현행 기초연금이 요구받는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는 노인 빈곤 완화라는 노인 대상 '부조'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곧 기초연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기초연금의 목적, 향후 발전방향, 현행 운영상의 쟁점에 대한 평가-특히 기초·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연금의 목적과 제도 성격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 만약 기초연금의 목적이 노인빈곤 완화라면 현행 기초연금의 대상과 급여 수준 및 급여 결정방식을 노인빈곤 완화에 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재정·사회적 지속가능성

노인인구 증가 및 시행 이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기초연금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음 <표 2>에 의하면 2014년 시행 당시 기초연금 예산은 6.9조 원이었으나,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된 2018년에는 11.8조원, 점진적으로 기준연금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된 2019년 14.7조원,

<표 1> 기초연금의 성격 규정에 따른 연계감액 평가

<p>(연계 찬성) 본인 기여에 비해 세대 간 이전의 혜택을 많이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는 금액 조정 필요성, 공적연금의 혜택을 고르게 나눌 필요성과 기초연금의 장기 재정지속가능성 고려→ 기초연금의 연금 성격 강조, 이미 국민연금에 기초연금 성격을 가진 A급여액이 존재하고, 국민연금이 먼저 도입되었으므로 이후 도입된 기초연금에서 이를 조정할 필요(선진국의 경우 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의 순서로 도입되어 기초연금은 순수하게 기초연금의 역할을, 소득비례연금은 비례연금 역할에 충실), 연계감액 장치가 없을 경우 공적연금에서 소득재분배 역할 과도→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지속가능성 등 문제</p> <p>(연계 반대) 성격이 다른 두 제도(비기여 급여 vs 기여 급여, 재원에서 차이)를 연계하여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장기가입자) 불리, 또한 국민·기초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계감액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기초연금의 부조 성격 강조</p>
--



<표 2> 기초연금 예산 추이

단위: 조원

예산액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비	5.2	7.6	7.9	8.1	9.1	11.5	13.2	14.9	16.1
지방비	1.7	2.4	2.4	2.5	2.7	3.2	3.6	3.9	3.9
계	6.9	10.0	10.3	10.6	11.8	14.7	16.8	18.8	2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20년 16.8조원, 2021년에는 18.8조원에서 2022년 20.0조원까지 증가했다. 향후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예측가능하다.

한편 기초연금 예산 증가와 더불어 검토해야 할 것은 현행 기초연금이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표 3>에서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한 기초노령연금 시행 이후 선정기준액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노인의 소득과 재산이 증가하면서 노인의 70%를 포괄하는 선정기준액도 지속적으로 상향되었다. 노인의 소득 및 재산을 전망하는 것은 어렵지만, 현행 기초연금이 목표수급률 70%를 유지하면 향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재정 소요를 고려할 때, 노인의 70%를 포괄하는 현행 기초연금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노인빈곤 완화방안, 혹은 노후소득보장 패키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초연금은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고 자산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향후 선정기준액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예를 들어 300만원까지 증가할 경우) 그 수준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노인에게 '자산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곧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노인의 70%로 유지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 대상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행 기초연금에서 목표수급률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타당성

현행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제도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 시행 당시 국기초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단순화·완화해서 적용했다. 그런데 노인의 70%를 포괄하여 보편성을

<표 3> 기초노령연금 시행 이후 선정기준액 변화

단위: 만원

구분	단독	부부	구분	단독	부부
2008	40	64	2015	93	148.8
2009	68	108.8	2016	100	160
2010	70	112	2017	119	190.4
2011	74	118.4	2018	131	209.6
2012	78	124.8	2019	137	219.2
2013	83	132.8	2020	148	236.8
2014	87	139.2	2021	169	270.4
			2022	180	288

자료: 각년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담보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최후의 소득보장’ 역할을 담당하는 국기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곧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현재와 같이 노인의 하위 70%를 찾아내기 위한 방식보다는 상위 30%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적절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너무 엄격하고 복잡하다. 또한 현행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복잡성은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신청(수급권자이지만 복잡하여 미신청 등), 제도

수용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시행 이후 노인의 소득·재산이 증가하면서 노인의 70%라는 목표수급률 달성을 위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각종 공제 제도를 확대 및 신설하는 방식을 활용했다.¹⁾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시행안에서는 공제항목이 없었으나, 이후 금융재산 공제 도입 및 확대, 근로소득 공제 도입 및 확대, 일반재산 공제 도입 및 확대,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5%→4%) 등 공제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결과적으로 각종 공제제도가 확대되면서 수급자 간(間) 혹은 수급자 내(內)에서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노인이 보유한 소득과 재산, 재산의 종

<표 4> 2022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0.7×(근로소득-103만원)+기타소득(사업·재산(이자소득에서 4만원 공제)·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 각각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계산
*** 고급자동차는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2022), 『2022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표 5>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변화내용

구분	조치 내용	
기초노령연금	제도시행안	-공제항목 없음 -모든 재산에 대해 소득환산율 5% 적용 · 단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분(3%)를 반영하여 8%로 적용
	2008.7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8%→5% -금융재산 공제 도입: 720만원
	2008.9	-금융재산 공제 확대: 720만원→ 노인부부는 1,200만원까지 확대 -근로소득 공제 도입: 35만원
	2009.1	-금융재산 공제 확대: 노인단독 720만원, 노인부부 1,200만원→ 노인 전체 가구 2,000만원 -주거공제 도입: 대도시 1억 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근로소득공제 확대: 35만원→37만원
기초연금	2014.7	-기존 근로소득공제에 30%의 추가 근로소득 공제 도입
	2015.1	-기본재산 공제 확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2015.10	재산의 소득환산율 4%로 하향 조정
	2016.1	이자소득 공제 도입(월 4만원)

자료: 최옥금·이은영(2017),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방안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1) 현재까지는 선정기준액 상향보다는 소득인정액에서 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을 활용



류, 거주지역에 따라 기초연금과 관련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선정기준액 주변의 수급자/비수급자 간 형평성 문제 등). 따라서 현행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에 현재의 복잡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적절지에 대한 목표 및 방향성 재검토가 필요(공제 확대에 따른 형평성 문제 포함)할 것이다.

III.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국민연금 제도 간 현황 진단

여기에서는 기초연금을 둘러싼 제도 간 현황 및 쟁점이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관계, 그리고 국기초와 기초연금과의 관계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도록 한다.

1. 기초연금-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의 쟁점

현행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노후소득보장의 '불확실성'으로, 현행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고려할 때 향후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제시했던 기초연금의 목표수급률 설정과 관련한 문제로,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이 12%, 국민연금 4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 40%일 때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2%라 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이 65세가 되었을 때 하위 70%에 포함되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특히 기초-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국민연금액이 100% 반영되고 연계감액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까지 고려한 노후소득보장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향후 기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의 국민연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초연금이 현행 목표수급률 70%를 통해 선정기준액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면 기초연금과의 관계에서 국민연금 가입·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초연금액이 인상되면 더 심화될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 국민연금 장기가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의도 있다. 물론 대부분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당연가입자로 이들은 국민연금 가입을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렵고 기초연금에 더해 국민연금을 수급하면 노후소득이 더 많아질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 인상이 국민연금 장기가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그러나 현재 소득파악이 어려운 일부 계층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 또한 기여식 국민연금보다 비기여식 기초연금이 수급의 보편성을 확보²⁾하고 있고 기초연금액이 현행보다 인상될 경우 국민연금 평균소득가입자가 보험료를 최소가입기간(10년) 납부하여

2) 비기여식 기초연금이 70%라는 광범위한 대상을 포괄하고 있는 반면, 기여식 국민연금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노인의 약 46.8% 정도를 포괄하고 있음

3) 기여식 국민연금 평균소득자(2022년 기준 A값 2,681,724), 소득대체율 50%로 가정할 때 최소가입기간(10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는 국민(노령)연금액은 335,216원 정도로 기초연금과 비슷한 수준임

받는 연금수준과 유사³⁾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론적으로는 소득 하위 70%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당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뿐 아니라, 당연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가 어려운 계층은 국민연금 가입유인 회피, 혹은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초연금 인상 시 국민연금 제도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최옥금, 2020).

2. 국기초-기초연금 관계에서의 쟁점

다음으로 국기초와 기초연금과의 관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은 두 제도 간 복잡성 및 역할 중복으로, 상술한 것처럼 기초연금은 수급자 선정을 위해 자산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노인 대상의 범주적 공공부조의 성격을 일부 갖고 있으며 국기초는 전체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때 국기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산정되면서 국기초·기초연금 동시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어 지급(일명 겹다 뺏는 문제)되어 국기초·기

초연금 동시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상관없이 최종 가처분소득은 동일해진다. 이에 가장 빈곤한 노인에게 기초연금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⁴⁾으로 간주하여 일부 공제하자는 법안도 제출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명 ‘ 겹다 뺏는 문제 ’는 보다 근본적으로 일반적 공공부조와 범주적 공공부조의 성격을 가진 제도가 공존하는 현재의 제도 구성이 문제라 할 수 있다. 노인기초보장제도와 관련된 해외사례를 검토해보면 일반적 공공부조만 운영하거나(일본 생활보호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주적 공공부조만 운영(영국 연금크레딧, 호주 기초연금 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노인기초보장제도 간 역할 분담 및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한편 국기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주적 공공부조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 전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조 성격을 가진 제도인 국기초와 기초연금과의 기초연금과의 역할 및 기능 중복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애매한 관계

<표 6>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노후소득보장 현황

단위: 만원

구분	수(명)	비중
전체 노인 인구	8,835,486	100%
기초연금 수급자	5,973,059	67.6%
기초연금만 수급(국민연금 ×)	3,294,478	37.6%
국민(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	3,771,278	46.8%
기초·국민연금 동시수급자	2,650,036	30.0%
국기초 수급자	897,269	10.2%
기초·국기초 동시수급자	819,946	9.3%

주: 2021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국민(노령)연금 수급자는 3,531,492명으로, 전체 노인의 약 40.0%를 차지하고 있음, 국기초 수급자는 생계급여 뿐 아니라 전체 급여 수급자 모두를 포함

자료: 2020년 12월 기준 기초연금 통계월보, 국민연금 사업통계

4) 경로연금의 경우 국기초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으로 간주하여 전액 공제했으며,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비중을 낮추어 2012년까지만 일부 공제하고 2013년부터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표 7>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율 변화

구분	상대적 빈곤율		평균 빈곤율	
	빈곤율	직전년도 대비 차이	빈곤율	직전년도 대비 차이
2011	46.5%	-	42.8%	-
2012	45.4%	-1.1%p	43.3%	+1.0%p
2013	46.3%	+0.9%p	43.3%	0.0%p
2014	44.5%	-1.8%p	41.8%	-1.5%p
2015	43.2%	-1.3%p	40.4%	-1.4%p
2016	43.6%	+0.4%p	39.8%	-0.6%p
2017	42.3%	-1.3%p	39.8%	0.0%p
2018	42.0%	-0.3%p	37.4%	-2.4%p
2019	41.4%	-0.6%p	35.3%	-2.1%p
2020	38.9%	-2.5%p	32.0%	-3.3%p

주: 65세 이상 노인 기준, 상대적 빈곤율과 평균 빈곤율 모두 중위소득 50% 이하,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가구균등화지수(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 적용; OECD 방식)를 적용하여 산출함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로 국기초·기초연금 동시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인상과 상관없이 가처분소득이 동일하므로, 가장 빈곤한 노인에게 기초연금 인상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기초연금 도입 이후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변화를 살펴보면 2014년을 전·후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기초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을 고려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V. 나가며

본 고에서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 내의 쟁점 및 기초연금을 둘러싼 제도 간 현황 및 쟁점을 정리하였다. 여기에서 제기한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 또한 국기초-기초연금 간 관계에서의 쟁점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현행 기초연금 인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현재에도 내재된 기초연금 제도 내 문제, 또한 각 제도 간 관계의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기초연금 제도 성격에 대한 논란, 공적연금의 재분배기능 중복 혹은 과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 영향, 국

기초와의 관계에서 제도 간 관계 복잡 및 역할 중복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곧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전제로 한 개선방안을 통해서는 근본적 문제 해결에 한계를 갖고 있으며, 더 나아가 현행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에 향후 연금개혁 논의의 장에서는 현행 기초연금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중·장기적)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점진적인 제도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선적으로 현행 기초연금을 전제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현재와 같이 노인 대상 규모로 선정기준액을 산출하는 방식(목표수급률 70%)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곧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증가(재정 부담), 노인의 70%가 갖는 의미의 변화(기초노령연금 시행 당시 2008년 노인 하위 70%와 2022년 현재 노인 하위 70%가 갖는 특성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어떤 시점에서 목표수급률 방식을 통해 선정기준액을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결

정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기존 수급자의 수급권은 보호하면서, 소득과 재산이 많아지는 신규 진입 노인의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노인의 보장 규모를 서서히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 선정기준액을 어느 시점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고정할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요구된다.

다음으로는 기초연금이 향후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으로, 이번 정부에서 이미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공약한 바 있으므로 기초연금 급여 보장수준에 대해서는 향후 기초연금이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제도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현행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기본적으로는 현재 노인의 70% 정도를 포괄하고 있는 보편성을 고려하고 하위 70%를 선별하는 방식보다는, 상위 30%를 선별하여 제외하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현행 소득인정액 방식보다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재검토하여 재산에서 소득이 창출되는 농지 등을 제외한 현재 거주주택 등은 현행과 같이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컷오프(cut-off) 방식을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으로 현행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 공제제도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될 것이다.

다만 이는 기초연금이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연금개혁에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공약과 함께 국민기초생활

보장, 기초연금,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 논의 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통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사업통계.

보건복지부(2015~2022). 「기초연금 사업안내」

최옥금·이은영(2017),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방안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정책보고서 201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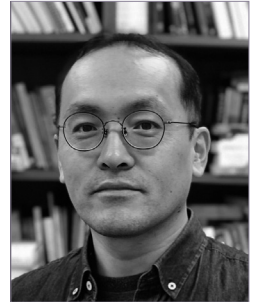
최옥금. 2020.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도의 관계를 둘러싼 쟁점과 발전방향』. 국민연금연구원 정책보고서 2020-02.

최옥금. 2020. 『기초연금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유인의 관계: 기초연급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연구원 정책자료 2020-01.

최옥금·홍정민. 2021.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간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한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정책보고서(출간예정).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연금개혁의 딜레마와 보편적 기초연금



최영준(연세대학교)

I. 재정안정화론 대 공적연금강화론

공적연금 개혁이라는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 프로젝트가 이제 어느 정도 현실화될 것 같은 조건들이 무르익고 있다. 이미 2022년 대선 시기 동안 연금개혁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공언한 바 있다. 또한, 더욱 가파르게 떨어지는 출산율과 이에 비례해서 가속화될 노령화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면서 공적연금 개혁을 추동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적 지속가능성만이 연금개혁을 추동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OECD에서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상당 수준 존재하는 사각지대는 공적연금이 미래에 어떻게 ‘노후소득보장’을 견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 여타 국가들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적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우리의 경우 두 측면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다소 ‘이상한’ 상황이다.

‘이상한’ 상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내는 더욱 복잡하다.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종종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묘사된

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2018)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적립된 기금은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율은 2060년대에 30%에까지 이를 것으로 추계되었다. 즉, 현 세대의 부담을 사전에 빠르고, 지속적으로 올리지 못할 경우 미래 세대가 감당할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추계에 근거하여 재정안정화론을 주장하는 상당수의 학자들과 정책결정가들은 연금보험료율의 즉각적인 인상과 더 나아가 급여 수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재정안정화론자의 주장은 일면 타당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 입장 역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에는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44%에 이르는데 비해(통계청, 2021), GDP 대비 10%의 공적연금 지출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보장위원회(2019)의 제3차 사회보장재정추계 등 다양한 추계자료에 따르면 2060년 공적연금 지출은 국민연금이 GDP의 약 7%를 포함하여 GDP의 약 10.4%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1> 정책영역별 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중 변화(2018-2060년)

(단위: %)

	2018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연평균 증가율
계	10.7	11.7	15.9	20.5	24.9	28.2	5.5
보건	4.2	4.8	7.1	9.7	12.2	13.6	6.0
노령	2.9	3.3	4.9	6.7	8.6	10.4	6.3
유족	0.3	0.3	0.4	0.6	0.7	0.8	5.4
가족	1.0	1.1	1.1	1.0	0.9	0.8	2.7
실업	0.3	0.4	0.4	0.4	0.4	0.4	3.7
근로능력	0.6	0.6	0.7	0.7	0.7	0.6	3.2
주거	0.1	0.1	0.1	0.1	0.1	0.1	3.7
적극적노동시장	0.7	0.6	0.6	0.6	0.6	0.6	2.9
기타	0.6	0.6	0.7	0.7	0.8	0.7	3.7

자료 : 사회보장위원회「제3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2019

이를 현재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그 수준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2021년 기준 OECD 노인인구의 비중은 17.6%이고, 2017년 기준 공적연금 지출은 7.7%를 기록하고 있다(OECD 2022a; OECD, 2022b). 또한 약 20%대의 노인인구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적연금 지출이 GDP 대비 10%를 넘는 국가 역시 여럿 존재한다. 예를 들어, GDP 대비 15%가 넘는 지출을 하는 이탈리아 13.6%를 지출하는 프랑스가 있다. 또한, 핀란드, 그리스, 이태리, 오스트리아 등 역시 10%를 넘는 지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강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노인인구가 거의 45%에 육박하고 있는 국가에서 10% 정도의 연금지출이 과도하다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를 펼친다. 오히려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노인연령에 투입되는 지출이 GDP의 10% 밖에 되지 않는 것은 경제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다 직접적인 증거로 OECD의 Pensions at a Glance 2021에 따르면 OECD의 평균 총소득대체율(Gross pension replacement rates)이 평균소득자 기준

51.8%임에 비해서 한국은 31.2%로 거의 20%p가 낮다. 이상의 두 입장을 검토하면 양 주장 모두가 타당성을 일면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대립하는 주장도 아님을 알 수 있다. 현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9%로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발생하는 재정안정성의 우려는 보험료율을 높임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동시에 공적연금 지출이 너무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는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한편, 강화된 만큼 재정을 고려하면 양 입장이 절충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그 절충을 이루는 것은 왜 쉽지 않을까? 이는 연금개혁의 구체적 과제와 그 실현가능성에 대한 양측의 진단이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전자의 입장에서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는 보험료율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에 반해 후자 입장의 경우 단기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일부 높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의 강화를 공적연금 강화의 가장 주요한 과제로 제시한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주장은 전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소득대체율 증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더욱 획기적으로 올려야만 가

<표2> OECD 국가 연금지출과 고령인구 비중 비교

(단위: %)

국가별	연금지출 (% GDP, 2017)	고령인구 비중 (% population, 2021)
호주	3.99	16.82
오스트리아	12.98	19.36
벨기에	10.51	19.47
캐나다	4.81	18.52
체코	7.70	20.57
덴마크	8.03	20.30
핀란드	11.84	22.87
프랑스	13.64	20.85
독일	10.20	22.09
그리스	15.49	22.69
헝가리	8.54	20.47
아일랜드	3.72	14.81
이태리	15.64	23.67
일본	9.36	28.86
룩셈부르크	8.52	14.68
멕시코	2.66	7.86
네델란드	5.19	19.91
뉴질랜드	4.86	15.99
노르웨이	6.87	18.08
폴란드	10.57	18.80
포르투갈	12.73	22.55
슬로바키아	7.29	17.22
스페인	10.90	19.95
스웨덴	7.19	20.19
스위스	6.67	18.88
터키	7.36	9.63
영국	5.63	18.83
미국	7.08	16.83
칠레	2.82	12.49
에스토니아	6.49	20.39
슬로베니아	10.42	20.91
한국	2.85	16.56
OECD 평균	7.69	17.65

자료: OECD (2022a), OECD(2022b)

능한 일이다. 최근 OECD(2022c)의 연금개혁 권고안과 같이 현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즉각적이고 과감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더욱 강화하려면 보험료율을 보다 더 빠르고 높게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한다.

물론 한 번에 보험료율을 높게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은 양쪽이 대

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공적 연금 강화론자들은 소득대체율을 높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정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여기에서 조세가 등장한다. 조세를 투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험을 보험료만으로 징수하기보다는 다양하게 확보된 조세를 통해서 국민연금 급여를 위해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세은, 2018; 이재훈,



구창우, 2019).

이렇게 우리나라 학계에서 연금개혁을 사이에 둔 가장 대표적인 두 입장은 이러한 지점에서 점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II. 모퉁이돌 보편적 기초연금

1. 국민연금 보험료율 증가와 조세투입의 이슈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결국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조세를 미래에 투입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당장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자영업자의 경우 피고용인과 달리 9%의 보험료율을 오롯이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상승할 때 느끼는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생각한다면 보험료율의 단기적 상승이 더욱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향후에 자영업의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으며, 노동시장에서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 역시 비현실적이다.

다음 <표 3>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논의 중 어떤 안을 가장 선호하는지에 대한 19세부터 69세까지 국민들의 응답을 종사장 지위에 따라 정리한 결과이다(1순위 선호와 2순위 선호의 합).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연금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는 안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이에 반해 ‘재정안정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대에 지나지 않아 가장 낮았다.

연금 보험료율 강화와 관련해, ‘보험료 인상’은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과 ‘증세를 통한 연금재정 안정’에 비해서 낮은 선호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고용주와 자영업자는 피고용인인 상용직이나 임시일용직에 비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 정년이 없는 고용주와 자영업자들은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는 것에 대한 저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이점은 고용주와 자영업자는 ‘연금급여 삭감’에 대한 선호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고용주는 연금급여 삭감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던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취약성이 높은 자영업자는 삭감에 대한 지지가 모든 종사상 지위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증세를 통한 방안은 두 번째로 선호되었지만, 조세를 국민연금 기금으로 투입하는 것에는 상당한 논란이 존재한다. 가장 핵심적인 논란은 조세를 국민연금 기금으로 투입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세 사용의 역진성이다. 역진성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는 재분배요소가 내재해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득비례의 구조를 지닌다. 노동시장에서 높은 소득수준이었던 이들은 높은 연금을 받고 낮은 소득이었던 이들은 낮은 연금을 받기 때문에, 조세를 투입할 경우 결과적으로 고소득자가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된다. 둘째, 여전히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이다. 2020년 12월 자료에 따르면 장기체납자가 1백만 명을 넘어, 납부예외자도 3백만 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원섭, 2022). 또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21년 8월)에 따르면 비정

<표3> 종사상 지위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인다	증세를 하여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 시킨다	보험료를 인상한다	연금 지급액을 삭감한다	재정안정화를 추진하지 않는다	
		사례수	%	%	%	%	%
종사상 지위	고용주	(173)	60.7	50.1	36.5	34.8	18.0
	자영업자	(234)	66.4	58.5	38.5	22.6	13.9
	무급가족 종사자	(22)	74.4	56.4	5.4	45.7	18.0
	상용직	(664)	54.7	57.7	41.0	26.8	19.8
	임시일용직	(188)	54.6	56.6	40.1	28.9	19.8

출처: 저자의 자체 조사(한국갤럽, 2022년 8월, 만 19-69세 1611명 대상)

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6.7%로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김유선, 2021). 더욱이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노동시장이나 소득계층에서 하위를 점유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학교 구인회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5분위 중 1분위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비율은 52% 밖에 되지 않아 평균 66%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¹⁾. 결국 소득비례연금이라는 특징에 더해 안정된 중산층 이상이 더 안정적으로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조세가 투입되어 급여를 보조하게 되면 이 역시 역진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의 저조한 국민연금 가입 현실은 이들이 공적연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앞선 구인회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상위 20%의 경우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충족한 비율이 76%로 높게 나타난 반면, 하위 20%인 1분위 층의 경우 그 비율이 36%에 그쳤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에 적립기금 부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재원을 조세로 마련한다

면 중산층 이상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소득비례성이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며, 사각지대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향후 플랫폼 노동 등 노동시장 변화 양상에 따라서 사각지대가 완전히 사라질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려되는 조세재원 투입의 역진성은 미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 국민연금의 충분성과 기초연금의 역할

한편 국민연금은 그 충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OECD 평균 소득대체율에 비해서 우리의 소득대체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가 40%를 넘어도 국민연금 지출이 7% 정도라는 것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충분성이 이미 낮은 수준임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의 필요소

1)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45851.html> '저소득층, 국민연금 절반만 가입.. 60%는 최소가입기간 못 채워' 2022년 6월 6일, 한겨레신문 (2022년 10월 5일 접속)



득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된다. 구체적으로 성해영과 이은영(2020)은 노인가구의 소비수준을 고려한 필요 노후소득 연구에서 예산표준 방식에 의한 필요 노후소득을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10만 원으로 계산하였다. 이때 2019년 말까지의 가입이력을 가지고 추정을 하게 될 경우 은퇴예정 세대의 약 8.4%만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충족할 수 있을 것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감사원과 재정학회의 2020년 연구에서도 30년 후에 국민연금과 현재의 저소득층이 받는 기초연금을 합하여 1984년생은 91만5천원을, 1974년생의 경우 약 99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이러한 수치는 성해영과 이은영이 계산한 필요소득에 못 미치는 액수이다²⁾.

물론 이들의 계산에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도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여전히 연금화되지 못해 실질적인 노후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개인연금은 연간 약 4조 원이 수령액으로 지출되고 있지만, 계약 당 수령액이 연간 30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금융감독원, 2022). 이에 더하여 개인연금은 고소득층 가입자 위주이기 때문에 보편적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결국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한계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가장 유력한 대안은 기초연금이 된다. 하지만, 현재의 기초연금이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안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먼저, 기초연금이 가지고 있는 모호성이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의 한시성을 극복하고자 영구적 노인 기초보

장 제도로서 도입되었다(최옥금, 2022). 하지만, 여전히 최저보장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 소득보장에는 국민연금이 존재하여 그 사이에서 역할의 모호성이 발견된다. 최근, 가장 강력한 기초연금의 개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최저소득보장(minimum guarantee pension)의 경우에도 사실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그 성격이 상당히 중복됨을 알 수 있다.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기초연금을 미래에 소득 하위 70%에 속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인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소득보장의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초연금의 선별성과 관련된 이러한 모호성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기초연금의 한계를 극명히 드러낸다. 앞선 감사원과 재정학회 연구에서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합해도 100만 원이 넘지 못하는 이유는 기초연금을 받는 계층이 전체 노인의 70%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국민연금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만으로는 필요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이상을 보충하는 역할을 기초연금이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선별성과 모호성에 더하여 기초연금의 액수가 증가할수록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70%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는 현 기초연금은 과거 10만 원이었던 때와는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가 있다. 그 예로 현재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수급액은 약 50만 원에 이르는데, 이는 곧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는 최대 50만 원의 연금소득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 국민연

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11474371> '월급 440만원' 받는 30대... 30년 후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까 [장진규의 국민연금 테크]' 한국경제, 2021년 11월 20일. (2022년 10월 5일 접속)

금 평균 수급액이 57만 원인 것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평균 급여를 받는 가입자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³⁾, 국민연금에 전혀 가입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공적연금의 액수가 거의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기간부터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을 공약한 바 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차이는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개인들로 하여금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게 만든다.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서 발견된다. 이들은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보충급여의 성격상 기초연금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다. 소위 ‘줬다 뺐다’ 기초연금은 급여의 선별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추후 35%)로, 생계급여만으로는 OECD 기준 노인빈곤(중위소득 50%)을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생계급여에 더해 기초연금을 통해야만 그 대응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상의 문제들에 대한 대안은 기초연금의 보편화이다. 기초연금의 보편화가 주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기초연금 수급여부가 불투명했던 수많은 중산층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기초연금을 상수에 두고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개인연금 가입자가 1년에 받는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향후 기초연금이 추가 혹은 대체해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상승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초연금은 소득대체율이 12% 정도여도 그 선별적 성격상 국민연금의 명목상 소득대체율 40%에 더하여 계산될 수 없었다(최옥금, 2022). 하지만, 추후에는 40%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12%의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이 하나로 더해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성혜영과 이은영(2020)이 제시했던 노후의 필요소득 130만 원에 1974년생과 1984년생의 연금액이 근접해질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장점은 제도의 단순화를 통해 제도의 신뢰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제도가 복잡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3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소득 하위 70%를 결정하는 과정을 개인이 쉽게 파악하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기초연금액 감액 또한 세 종류로 복잡하게 이루어진다. 첫째 부부감액으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 둘째,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의 기초연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액이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장기 가입이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되는 역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보편화를 실시하게 되면 이러한 감액 제도가 상당 부분 단순화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역차별이 사라지게 된다. 동시에 하위 70%에 들어가려고 하는

3)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9090300501> '국민연금 월 최고수령액 246만원...평균은 57만2천원' 연합뉴스, 2022년 5월 10일 (2022년 10월 5일 접속)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신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은 특수직역연금과의 중장기적 통합 논의에 있어서도 모퉁이돌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배제되고 있다. 하지만,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들도 상대적으로 가입기간이 길지 않은 이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이 규정에 대한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통계청, 2022)에 따르면 공무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5년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33%로 가장 많지만, 10-20년 사이 근속기간을 가진 이들도 27%에 이르렀으며, 10년 미만 근속이 4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차 장기-평생근무 형태에서 다양한 근무형태로 변화하는 만큼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서 특수직역연금 배제는 형평성에 어긋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향후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공무원연금 등의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한 요구는 이미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다. 저자가 직접 수행한 2022년 8월 한국갤럽과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는 경우에 대해, 국민연금 방식(9% 보험료율과 30% 소득대체율)으로의 통합을 25.7%가 지지하였고 공무원연금 방식으로의 통합(18% 보험료율과 51% 소득대체율)을 18%가 동의하였다. 또한 56.2%는 두 방식 간의 절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개혁 논의가 진전될 때 특수직역의 경우 연금의 삭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할 수 있다. 하지만, 보편적 기초연금이 대신 들어오게 되면

줄어드는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상쇄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불만을 완화하여 개혁의 원활유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3. 보편적 기초연금에 대한 비판

보편적 기초연금 역시 비판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핵심 비판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고려해보고자 한다. 가장 강력한 비판점은 재정과 세대간 부담에 대한 것이다. 고령화가 빠른 사회에서 보편적 기초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노령층이 증가하면 기초연금의 액수가 증가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근로연령대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 비판은 타당하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할 점과 대안들이 논의될 수 있다. 첫째, 실제 어느 정도 재정이 소요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감당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한 정부연구기관 내부 추계⁴⁾에 따르면, 현재의 제도와 같이 수급 대상을 70%로 한정하고 급여수준을 임금수준에 연동했을 경우 2060년에 3.5%를 지출할 것으로 추계가 되며, 수급대상을 100%로 늘리게 되면 5.1%로 약 1.6%p를 더 지출하게 된다⁵⁾. 물가연동으로만 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70%와 100%일 때 각각 1.6%와 2.3%로 반 이상 지출이 줄게 된다. 하지만, 노후의 실질적 소득보장 성격은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수급연령을 2025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증가하여 2045년까지 70세로 상향할 경우 임금에 연동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 100% 3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4.1%로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50만원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같은 시나리오 하에서 2060년에 지출이 GDP 대비 6.8%

가 된다⁶⁾.

질문은 GDP 대비 4%나 약 7%가 감당 가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다. 일단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의 변화가 없고 지금과 같은 지출을 유지할 때 2060년에 약 7%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기초연금 지출이 더해지면 약 GDP 대비 11%에서 14%의 지출이 전체 인구의 약 44%의 노인들에게 지급된다. 이 수치는 표2의 현 OECD 노령인구 비율과 연금지출을 고려할 때 높은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초연금이 보편화되고 그 수준이 5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국민연금에서 A값을 제외하여 소득비례형으로 국민연금을 재조직화하는 방안이나 보험료율 상승에 대한 논의와 맞물려 국민연금에 자동안정화 장치 등을 도입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비판들은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과 기초연금에 대한 약속이 미래에도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다. 이 두 비판 역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부과방식이기 때문에 미래세대가 더 많은 고령층을 부양해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먼저 연금수급연령에 대한 향상을 통해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이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5세에 시작해도 기초연금은 점차 수급연령을 높여 70세 높이는 것이다. 이보다 더 직접적인

대안은 뉴질랜드 정부가 도입한 기초연금을 위한 연금기금제도(NZ Superannuation Fund)이다. 뉴질랜드의 정부는 미래에도 기초연금 급여가 재정상황에 따라 삭감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세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기초연금을 위한 기금을 만든 바 있다(은민수, 2015). 기초연금 기금을 만들게 되면 한편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현 세대가 기여를 통해서 만든 기금이기 때문에 미래에 제도가 감축되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것도 정치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0%가 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급여 축소 개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초연금이 저소득층에게 두툼하게 제공하는 최저보장제도나 70%를 줄 때보다 보편적 기초연금이 도입될 때 개인이 국민연금이나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하는데 있어서 역유인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미래세대 부담을 오히려 줄여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III. 연대와 신뢰를 높이는 연금개혁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되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것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국민연금의 상황과 여전히 낮은 노령화 수준, 그리고 노인빈곤이라는 더 가시적 이슈가

4) 본 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6)의 중위가정과 거시경제변수가정은 KDI 2017년 12월 전망자료에 근거하여 2018년에 국민연금연구원에 의해 추계되었다.

5) 현재의 연동방식은 기본적으로 물가연동이지만, 5년마다 적정성 평가를 통해 조정하는 기제를 가지고 있다.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② 기준연금액은 그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기초연금법 제9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6) 또 다른 정책적 옵션은 현재 노인빈곤을 감안하여 즉각 50만원을 지출하고, 미래 국민연금 평균급여액 증가를 고려하여 임금연동이 아닌 물가연동하여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경우 2022년 기준 약 2.7%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급연령을 유지했을 경우 2060년에 3.8%, 70세로 조정했을 경우 3.1%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는 사이 기초연금은 한시적이고 임의적 제도에서 실제 현 노령층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재정적 우려는 상존하였지만, 기초연금의 급여수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광범위한 노인빈곤과 낮은 노후소득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후세대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동시에 소득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의 액수가 높아지면서 개편에 대한 압력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형평성 논의와 통합 논의 역시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기초연금을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노후소득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보편적 기초연금 안을 제안하였다. 즉, 보편적 기초연금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국민연금이 현재의 재정안정화론과 노후소득보장 강화론을 절충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모쪼록 연금개혁이 국민통합과 연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8. 201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 금융감독원. 2022. 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 2022.4.11. 보도자료.
- 김원섭. 2022. “한국 노인빈곤과 연금개혁의 방향”. 정책기획위원회 노후소득보장 정책간담회. 2022.2.15
- 김유선. 202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1.8)결과. KLSI ISSUE PAPER.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사회보장위원회. 2019. 『제3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사회보장위원회.
- 성혜영, 이은영. 2020. 『노인가구의 소비수준을 고려한 필요 노후소득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 은민수. 2015. 뉴질랜드 정당체계의 변동과 기초연금 제도(superannuation)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49(5): 193-221.
- 이재훈, 구창우. 2019. 국민연금 개혁의 논쟁 지형과 쟁점 평가. 연구보고서 2019-05.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공공연구원.
- 정세은. 2018. 4차 재정추계 결과와 의미. 국민연금 제도 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 “4차 재정추계그 의미와 과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2018년 8월 23일. 국회 의원회관.
- 최옥금. 2022. “기초연금 현황과 쟁점, 발전방향”, 220125 정책기획위원회 발표자료.
- 통계청. 2021. 2021 고령자 통계. 2021.9.21. 보도자료.
- 통계청. 2022.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2022.1.20. 보도자료.
- OECD (2021). Pensions at a Glance 2021. Paris: OECD
- OECD (2022a). Pension spending (indicator). doi: 10.1787/a041f4ef-en (Accessed on 05 October 2022)
- OECD (2022b). Elderly population (indicator). doi: 10.1787/8d805ea1-en (Accessed on 05 October 2022)
- OECD (2022c). OECD Review of Pension Systems in Korea. Paris: OECD.

국민연금 A급여와의 관계를 고려한 기초연금의 바람직한 발전방향¹⁾



유중성(가천대학교 초빙교수 겸 불평등과사회정책연구소 소장)

I. 들어가며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둘러싸고 찬반 및 우려 표명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동공약이었고, 정부의 추진 의지 천명과 아울러 제1야당은 더욱 확대해서 실시하자는 주장이니 늦어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40만원 인상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럼에도 40만원 인상시 소요 재원의 문제,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유인 저하 문제 등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 인상이 전반적인 공적연금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 이전에 이슈로 떠오르고 기정사실화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기초연금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국민연금 개혁의 맥락 속에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

다. 그러나, 현 노인 세대의 극심한 빈곤 문제의 해결은 국민연금 개혁에 앞선 선결과제이다.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현 노인 세대의 빈곤을 방치하면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미래 노인 세대에게나 효과가 나타날 국민연금 개혁논의에 종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OECD 최고의 노인 자살률도 노인 빈곤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²⁾ 이런 점에서 필자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우려의 시각들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재정적 부담이나 국민연금 가입유인 저하 가능성 등 모두 가볍게 볼 문제들이 아니다. 또한 단순히 기초연금의 40만원 인상 여부를 넘어서서 기초연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국민연금의 균등급여(A 급여)와의 관계 및 제도적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특히 기초연금의 완전 보편화와 같은 의제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

1) 본 고의 내용은 유중성(2022), “국민연금의 트라일레마, 해결방안을 찾아서”에서 상당 부분 가져 온 것임을 밝힌다.

2) 한국건강형평성학회(2018)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 중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에는 기대수명에 6.6년의 격차가 있는데, 소득수준 간 기대수명 격차에 기여하는 주요 사망원인 중 두 번째가 자살이라고 한다. 뇌혈관장애 다음 순위이다. 높은 노인 빈곤율과 높은 노인 자살률 사이에 단순한 상관관계를 넘어서서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과 분리해서 논할 수 없다. 즉, 기초연금의 40만원 수준 인상은 현 노인세대의 빈곤 해결을 위한 시급성을 생각할 때 미룰 수 없지만,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관한 논의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균등급여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고찰을 하고, 기초연금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소요재정을 국민연금의 개혁방향과 무관하게 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II.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균등급여의 성격과 역할

1. 사실상 두 개의 기초연금

우리 나라는 사실상 두 개의 기초연금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초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의 일부가 사실상 기초연금의 성격을 지닌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A 값)에 기초하는 ‘균등 급여’(A 급여)와 개별 가입자의 가입기간 평균소득(B 값)에 기초하는 ‘소득비례 급여’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균등급여는 자신의 소득과 무관하게 기여 기간에만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소득비례 급여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데, 두 가지 제도가 국민연금이라

는 하나의 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

OECD(2021)의 연금 보고서는 한국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균등 급여를 1층 연금으로 분류하고, 국민연금 소득비례 급여를 2층 연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1층 연금으로 일정한 거주 요건 외에 일체의 자산조사 없이 조세 기반으로 운영하는 ‘거주 기반 기초연금’, 자산조사에 기반한 공공부조 형태의 ‘표적화된(연금)’, 기여 기간에 따라 급여액에 차등을 주는 ‘기여 기반 기초연금’, 최소한의 기여를 한 경우에 대해 일정한 최저선의 연금급여를 보장하는 ‘최저연금’의 4 가지를 들고 있다. 한국의 기초연금은 표적화된 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균등 급여는 기여 기반 기초연금이라고 보고 있다. 즉, OECD의 관점에서 한국은 사회부조 형의 표적화된 급여로서의 기초연금과 기여 기반 기초연금의 성격을 지닌 국민연금 균등 급여라는 두 가지 종류의 기초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³⁾

이처럼 한국은 사실상 두 가지의 기초연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두 제도의 성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기초연금은 기여에 기반하지 않고 조세에 의한 일반재정으로 운영하며 자산심사를 거쳐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에 표적화된 사회부조형 연금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소득평가액 산정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액(2022년 현재 103만원)을 뺀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를 한다. 다만, 여기서 근로소득이란 연말정산을 하는 상용근로소득만을 의미하며,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성

3) OECD(2021)의 연금보고서는 표적화된 사회부조형 급여를 1층 연금의 일종으로 보는지 아니면 연금과는 구별되는 사회부조로 보는지 다소 모호한 점이 있어 국내 학자들중에는 OECD가 한국의 기초연금을 OECD 기준의 기초연금으로 분류하지 않고 사회부조로 분류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1층 연금에 대한 절의 제목이 “기초, 표적화된 및 최저 연금들”(Basic, targeted and minimum pensions)라고 되어 있는 것은 표적화된 급여(연금)도 1층 연금의 일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격의 인적용역소득은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과 무료임차소득(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도 전액 소득평가액에 포함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은 다소 복잡한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택과 같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 대해 일정액의 기본공제(일반재산 기본공제액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기본공제는 2,000만원)를 하고 부채를 제외한 후 연 4%를 적용하며,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액 전체를 월소득으로 적용한다. 재산의 소득환산률이 높은 편이어서 일정액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 기준 상위 30%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70% 대상자 중에서도 모두가 기준연금액(2022년 현재, 30만7,500원)을 다 받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가 부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으로 감액된 금액을 받고 있다. 또한, 70%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매년 실제 수급률은 66% 내지 67% 사이로 나타나고 있다.⁴⁾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균등 급여(A 급여)는 기여기반 기초연금의 성격을 지니며, 가입자 본인의 소득과 무관하게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 값)에 기초한다. 그러나,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한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급여액은 정액 급여가 아니라 가입 기간에 비례한다. 2020년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850만명 중 322만명이 노령연금을 수급하여 수급률이 37.9%에 불과하며, 국민연금 수급률에 유족·장애연금을 포함시켜도 44.4%(377만명)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유희원 외, 2022).⁵⁾ 특히 현 세대 노인 중 국민연금의 핵심인 노령연금의 수급률이 매우 낮음을 보여준다.

2020년말 기준으로 노령연금(특례·분할연금 제외) 수급자 전체의 평균 수급액은 54만 1천 원인데, 소득뿐만 아니라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액에 차이가 크다. 유희원 외(2022)에 의하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대부분(96.6%)을 차지하는 20년 미만 가입자의 평균 수급액은 39.6만원에 불과하다. 노령연금 수급액은 기여기반 기초연금의 성격을 가지는 A 급여와 소득비례 연금의 성격을 가지는 B 급여를 더한 금액이다. 20년 미만 가입자의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 39.6만원 중 A 급여액의 평균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대략 2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기초연금에 비해 수급률이 훨씬 낮을 뿐 아니라 다수의 수급자에게는 A 급여의 금액이 기초연금(2020년, 기준연금액 30만원, 평균 수급액 약 24만원)보다 작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1〉은 OECD 주요 국가들의 1층 연금의 급여 수준(2020년 평균임금 대비)과 수급률(2018년 65세 이상 인구)을 보여준다. 급여 수준이 임금 근로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표시

4) 기초연금의 2022년 기준연금액은 30만7천5백원이다. 매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조정된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21년) 원자료의 분석 결과 2020년에 65세 이상자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67.5%, 이들의 평균 수급액은 23만 8천원으로 나타났다.

5)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21년) 원자료의 분석 결과 2020년에 65세 이상자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50.8%로 나타났다. 이 중 특수직역연금 수급률을 빼면 국민연금(노령·유족·장애연금 포함)은 대략 45% 내외의 수급률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공적연금 평균 수급액은 60만 2천원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한 평균이어서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일 것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분리하지 않고 공적연금으로 묶어서 조사하고 있다.

되므로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인 A 값을 기준으로 표시할 때보다 낮게 나온다. 한국의 경우 기초연금(표적화된 사회부조형 연금)은 포괄대상은 비교적 넓은 편이나 급여 수준이 매우 낮다. 평균임금 대비 급여액(2018년, 7.8%)이 미국(15.6%)의 절반 수준, 다른 나라들의 1/3 이하 수준으로 나타난다. 국민연금 A 급여(기여 기반 기초연금)는 급여수준도 낮은 편이지만 포괄 대상이 매우 낮다. 영국이나 일본의 기여기반 기초연금이 100%를 넘거나 100%에 가까운데 비해 한국은 절반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의 괴리

한국은 1973년 박정희 정권에서 국민복지연금 도입을 계획했다가 석유파동으로 무기 연기한 후 1977년 의료보험 도입이 먼저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연금 도입은 늦춰지게 되었다. 마침내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6년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국민복지연금법 제정안과 1986년 국민연금법은 공히 특이하게도 균등 급여의 기초 부분과 소득비례 급여의 2층 구조로 급여 산식을 설계했다. 다른 점은 1973년 법안에서는 기초 부분이 정액 급여였지만, 1986년 법에서는 가입 기간에 따라 비례하도록 한 것이다(국민연금사편

2. 국민연금 균등 급여 도입의 이상과 현실

<표 1> 국가별 1층연금의 급여수준(2020 평균임금 대비 %)과 수급률(2018, 65세 이상 %)

	거주기반 기초연금		표적화된 연금		기여기반 기초연금		최저연금	
	급여수준	수급률	급여수준	수급률	급여수준	수급률	급여수준	수급률
오스트레일리아			27.0	63.0				
캐나다	12.9	98.0	19.2	32.0				
덴마크	17.6	103.0	19.6					
핀란드			21.9	38.0				
프랑스			28.4	4.0			20.2	38.0
독일			19.3	1.0				
이탈리아			19.8	7.0			22.7	32.0
일본			18.0	3.0	15.1	92.0		
한국			7.8	69.0	11.9	43.0		
네덜란드	29.2	104.0						
뉴질랜드	39.8	105.0						
노르웨이	15.4	103.0	30.5					
포르투갈			27.0	7.0			28.6	38.0
스페인			20.4	3.0			35.5	25.0
스웨덴			22.2	35.0				
영국			21.6	16.0	16.7	105.0		
미국			15.6	2.0				

주: 1) 급여수준은 A 값(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 기준이 아니라 임금근로자만의 근로소득 평균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A 값 기준으로 표시할 때보다 작은 수치가 나옴.

2) 수급률이 100%를 넘는 경우는 65세 미만자나 해외 거주자 중 수급자를 포함하기 때문임.

자료: OECD(2021), Pensions at a Glance 2021(p. 125)



찬위원회, 2015).

한국처럼 소득비례 공적연금에 균등 급여를 포함한 사례는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많은 서구 국가들에서는 정액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을 두 개의 독립된 제도로 운영한다. 소득비례 급여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하더라도 실업 크레딧, 출산 크레딧 제공 등 부차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처럼 강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사회보장연금(OASDI)도 급여 산식은 단층 구조로 소득대체율이 소득에 따라 채감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국민연금 A 급여는 조세에 의한 일반 재정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보험료만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점에서도 서구 국가들의 기초연금과 다르다. 일본의 경우도 기여기반 기초연금에 상당한 정도의 국고 부담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국민연금은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 외에 소득비례 급여는 물론 균등 급여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A 급여를 재정지원 없이 전액 보험료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1973년 법안과 달리 1986년 법에서는 A 급여를 정액 급여가 아닌 가입 기간에 비례하는 급여로 설계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의 작동에도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급여 산식(2028년 이후)을 보자. 1988년 시행 당시 평균소득자 소득대체율 70%에서 두 차례에 걸친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이 60%로, 그리고 다시 2028년까지 점차 40%로 내려가게 된 것을 반영한 산식이다.

$$\text{연간급여액} = 1.2 * 0.05n * (A+B) \quad (1)$$

위의 식 (1)에서 n은 가입년수를 나타내는데 10년 이상, 40년 이하로 제한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가 된다는 뜻은 자신의 가입기간 평균소득(B값)이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2022년 기준 268만원)과 같은 평균소득자(B=A)가 40년간 가입했을 때 노령연금 수급액이 $1.2 * 0.05 * 40 * (A+A) = 4.8A = 12 * 0.4A = 12 * 0.4B$, 즉 매월 자신의 가입기간 평균소득(B값)의 4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됨을 말한다. 1986년 법에서는 A 급여와 B 급여의 비율을 4대 3으로 했던 것이 이후 개혁과정에서 1대 1로 전환되었다.

이처럼 국민연금 노령연금 급여가 소득비례 급여뿐만 아니라 균등 급여를 포함함으로써 소득대체율이 저소득자일수록 높고 고소득자일수록 낮아진다. 가령 B값이 평균소득의 절반(B=0.5A)인 저소득자가 40년 가입했을 경우 연간급여액은 $1.2 * 0.05 * 40 * (A+0.5A) = 12 * 0.3A = 12 * 0.6B$ 로 소득대체율이 60%가 된다. 한편 B값이 평균소득의 두 배(2A)인 고소득자의 경우 연간급여액은 $1.2 * 0.05 * 40 * (A+2A) = 12 * 0.6A = 12 * 0.3B$ 가 되어 소득대체율이 30%가 된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대체율이 작아지며, 수익비(기여액 총액 대비 연금 수급액 총액의 비율)도 낮아지게 되는 반면 저소득자일수록 높은 소득대체율과 수익비를 누리게 되어 강력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현실

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는 균등 급여를 정액급여로 하지 않고 가입 기간에 비례하도록 한 결과이다. 노령연금 급여 산식을 아래와 같이 두 부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

$$1.2 * 0.05n * (A+B) = 0.06nA$$

$$(균등 급여) + 0.06nB (\text{소득비례 급여}) \quad (2)$$

식 (2)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균등 급여(0.06nA)와 소득비례 급여(0.06nB)가 모두 n(가입년수)에 정비례함을 보여준다. 소득비례 급여를 나타내는 0.06nB는 자신의 가입 기간 평균소득(B값)이 높을 수록, 그리고 가입 기간(n)이 길수록 커지는데, 일반적으로 고소득자일수록 가입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중으로 커진다. 균등 급여를 가리키는 0.06nA에서 A값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만, 급여액은 가입 기간(n)에 정비례한다. 결국 소득비례 급여는 물론 균등 급여도 일반적으로 가입 기간이 긴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이 받고, 가입 기간이 짧은 저소득자일수록 더 적게 받는 불균등 급여가 되고 만다.

실제로 대부분의 저소득 불안정 취업자들은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못 채워 무연금자가 되거나 10여년의 짧은 가입 기간으로 용돈 수준의 낮은 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특히 보험료의 절반을 고용주가 부담해주는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 중에는 저소득의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이 많아 이들은 납부예외나 장기체납 등으로 가입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다. 2020년 12월 말 기준 공적연금 가입실태를 보면, 18-59세 총인구 3,167만 2천명 중에서 비경제활동인구,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를 포함해 39.4%

에 해당하는 1,248만 5천명이 국민연금의 실질적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1). 결국 현 근로연령층 가운데 40% 가량은 노후에 무연금 또는 저연금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위원회가 구축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이용하여 2019년 10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을 분석한 결과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사이에, 그리고 소득계층별로 가입 기간에 커다란 격차를 보여준다(구인회 외, 2021). 가입자 전체의 평균 가입 기간은 114.2개월(남자 132.1개월, 여자 92.1개월)인데, 사업장가입자 평균은 136.2개월, 지역가입자 평균은 74.3개월로 큰 차이가 났다. 연령대별로 소득계층별 가입 기간 격차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대체로 마무리한 55~59세 연령대에서 소득 1분위의 평균 가입 기간이 104.6개월로 노령연금 최소 가입 기간에도 미치지 못함에 비해 5분위의 평균 가입 기간은 231.5개월로 두 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또한, 55~59세 연령 구간에서 1분위 중 노령연금 최소 가입 기간 충족률이 35.7%에 그친 반면 5분위의 노령연금 수급권 충족 비율은 76.1%로 역시 두 배가 넘는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이 분석에서 평균 가입 기간과 노령연금 수급권 충족률의 소득계층별 격차가 젊은 연령대일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소득에 따른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 이 분석 자료에서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아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무소득층 및 저소득층의 상당수가 국민연금에 미가입이었을 것이므로, 이들을 포함하여



본다면 소득계층별 평균 가입기간 격차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의 균등 급여를 가입 기간에 비례하도록 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됨을 알 수 있다. A 급여가 안정된 고용의 고소득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불균등 급여가 되고, 비정규인구와 저소득 불안정 취업자들이 고령이 되어도 대부분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처해 A 급여를 한 푼도 못 받거나 짧은 가입 기간으로 인해 소액밖에 받지 못하는 현실이 된 것이다.

3. 기초연금의 성격과 역할

국민연금의 A 급여가 기여 기간에 비례함으로써 가지는 한계와 함께 국민연금이 성숙하기 이전까지는 당장 현 노인 세대의 빈곤 문제에 대처할 수 없는 한계는 국민연금 도입 초기부터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정액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으로 이원화하는 개혁안이 계속해서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2007년 국민연금 2차 개혁과 패키지로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고,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발전하였다.

기초연금은 (준)보편적인 기초연금 또는 인구학적 수당의 성격과 자산조사에 기초한 사회부조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 지급액이 국민연금 급여에 연계하여 감액된다는 점에서 최저연금으로서의 성격도 간접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최옥금, 2020). 따라서 기초연금의 복잡성과 모호성을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보편적 수당, 최저연금, 보충급여 성격 중 하나 또는 결합의 형태로 구조적 개

혁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상은, 2018; 정찬미·이상은, 2022).

이처럼 기초연금의 성격이 모호해진 것은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이 정치적 절충에 따라 사회부조와 보편적 기초연금의 중간적 형태로 이루어진 데 기인한다. 2006년 정부의 당초 기초노령연금안은 지급 대상을 45%로 시작하여 국민연금의 성숙에 따라 점차 축소하여 2030년에 32%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국민연금사편찬위원회, 2015: 288). 또한 열린우리당 법안은 지급 대상을 60%로 시작하여 역시 국민연금 수급률의 상승에 따라 2030년에는 46.3%로 축소될 것으로 추계하였다(정해식, 2020). 사회부조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즉, 국민연금의 성숙에 따라 노인빈곤이 점차 완화되리라 보고 기초노령연금은 현 노인세대의 빈곤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점차 국민연금의 일부 사각지대에 대한 잔여적 역할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 본 것이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의 보편적 지급을 주장한 한나라당과의 타협 속에서 지급 대상을 70%로 정함으로써 준보편적인 기초연금 또는 인구학적 수당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은 물론 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 도입시에도 국민연금 A급여와의 통합을 통해 완전 보편화하는 구조개혁을 하지 못하였다. 국민연금 구조를 그대로 놔 둔채로 기초연금 포괄범위는 70%로 유지함으로써 기초연금의 성격과 지향하는 목표가 불분명해졌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빈곤과 소득불평등 완화에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다. 기초노령연금도 미약하나마 노인 빈곤과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는 했지만, 그 효과가 너무 작아 노인 인구의 증가와 가구 구성의 변화에 따른 노인 빈곤과 소

득불평등 강화 추세를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이 실시된 2008년 이후에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4년부터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의 두 배 수준으로 지급되면서 노인 빈곤과 불평등 완화효과가 다소 증대되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노인소득 불평등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적연금은 노인소득 불평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노인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다(최혜은·유종성, 2022). 여기서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연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민연금 급여와 직역연금 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합해서 제공하고 있다.

2020년에 기초연금은 노인소득 불평등(균등화가처분소득 기준)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4.9%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반해 공적연금은 노인소득 지니계수를 16.8% 올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에 노인빈곤율 개선효과는 공적연금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공적연금 11.0 내지 12.7% 포인트, 기초연금 5.2 내지 6.9% 포인트), 노인의 빈곤갭 개선효과는 기초연금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공적연금 6.6 내지 9.8% 포인트, 기초연금 12.4 내지 13.8% 포인트)(최혜은·유종성, 2022). 공적연금에 비해 기초연금의 빈곤율 개선효과가 적게 나타난 것은 기초연금의 지급액 수준이 낮아 많은 빈곤 노인가구를 중위소득 50%의 상대빈곤선 위로 끌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빈곤갭 개선효과에서 기초연금이 공적연금보다 우위를 보인 것은 빈곤 노인 중에 기초연금

수급률이 공적연금 수급률보다 월등히 더 높기 때문에 비록 이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상대빈곤선 아래에 위치하지만 빈곤의 정도가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는 통계청(2021)의 가계금융복지조사(약칭 가금복) 원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65세 이상 노인의 개인 가처분소득 10분위별로 공적연금(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합계)과 기초연금 수급 현황을 보여준다. 가금복 자료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수급액을 분리하지 않고 있고,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 중 A 급여액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가처분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기초연금 수급률이 공적연금 수급률보다 훨씬 더 높고 평균 수급액도 기초연금이 공적연금보다 더 큰 것을 보여준다. 소득 7분위까지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공적연금 수급률보다 더 높으며, 소득 6분위까지는 기초연금 평균 수급액이 공적연금 평균 수급액보다 더 많다.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수급률과 수급액 면에서 공적연금이 기초연금보다 더 높아 노인소득 불평등에 기여하는 것과 반대로 노인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이 확인된다. 반면 저소득 분위에서는 공적연금 수급률과 수급액이 매우 낮게 나와 국민연금이 노인 빈곤 완화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특히 공적연금의 5분위배율과 지니계수가 개인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보다 높아서 공적연금이 노인의 소득불평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그러나, 이 표는 기초연금의 역할의 한계도 보여준다. 비록 저소득층에서 기초연금 수급률과 수급액이 공적연금에 비해 높게 나타나긴 하지만, 저소득 분위에서도 기초연금 미수급자 비율이 적지 않게 나오고 수급액이 작아 빈곤 해소에는 모자라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



인 가처분소득 1분위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률이 44.1%에 불과하며 기초연금도 공적연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비율이 무려 51.6%에 이르는 것으로 나온다. 이 중에는 본인의 소득은 없지만 배우자 등의 소득이 높아 지급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도 1분위에서 기초연금 지급률이 85%에 불과하며 기초연금도 공적연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비율이 7.1%로 나타난다.⁶⁾ 균등화소득 기준으로 보아도 공적연금은 고소득분위로 올라갈수록 지급률과 평균 지급액이 올라가며 5분위배율과 지니계수가 균등화 가처분소득보다도 더 높아서 노인의 소득 불평등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기초연금은 고소득분위로 올라갈수록 지급률과 평균 지급액이 내려가서 노인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확인된다.

가금복 자료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국민연금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

해서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저소득분위의 공적연금은 대부분이 국민연금일 것으로 가정하고 보더라도 국민연금 A 급여를 포함한 국민연금의 역할의 한계는 뚜렷하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33년, 1999년 전국민으로 확대된 이후 22년이 된 2020년에도 저소득 노인들에게 국민연금의 A 급여는 여전히 기초연금에 비해 지급률도 평균 지급액도 더 낮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은 비록 낮은 지급액 수준에도 불구하고 현 세대 노인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에 확실하게 기여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완전 성숙한 후에도 국민연금 A 급여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III. 기초연금의 장기적 발전방향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균등급여의 역할 분담?

<표 2> 노인의 가처분소득 10분위별 기초연금과 공적연금과 지급현황(2020년)

소득분위	가처분소득	기초연금	공적연금	기초수급	공적수급	기초only	공적only	Both	Neither
1	151	107	13	44.1%	5.7%	42.8%	4.3%	1.4%	51.6%
2	350	278	18	91.3%	6.7%	87.9%	3.3%	3.5%	5.4%
3	518	250	101	83.6%	40.0%	52.3%	8.7%	31.3%	7.7%
4	721	270	137	87.6%	44.0%	51.1%	7.4%	36.5%	5.0%
5	921	258	167	84.8%	48.8%	43.8%	7.9%	41.0%	7.3%
6	1,172	242	241	83.0%	59.6%	33.5%	10.1%	49.5%	7.0%
7	1,528	205	295	73.1%	64.9%	27.7%	19.5%	45.4%	7.4%
8	2,074	156	436	58.8%	70.9%	19.9%	32.0%	39.0%	9.2%
9	2,926	124	777	50.1%	80.0%	13.9%	43.7%	36.2%	6.2%
10	5,825	47	1,489	19.9%	88.1%	3.8%	72.0%	16.1%	8.1%
평균	1,617	193	367	67.5%	50.8%	37.5%	20.9%	29.9%	11.7%
5분위배율	17.7	0.5	73.9						
Gini	0.5045	0.4125	0.7604						

자료: 유종성(2022). 원자료는 통계청(2021), 가계금융복지조사.

6) 균등화소득 기준 표는 지면관계 상 실지 않음.

기초연금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논하려면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떠나서 할 수가 없다. 국민연금 A 급여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필자는 현 노인 세대의 극심한 빈곤 문제는 국민연금 개혁에 앞선 선결과제이므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초연금의 보편화와 같은 의제는 국민연금과의 관계 속에서 장기적 발전 방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기초연금의 발전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는 국민연금이 A 급여와 B 급여로 이루어진 구조를 근본적 개혁 없이 유지할 경우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A 급여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이다. 둘째는 국민연금 A 급여와 기초연금의 통합과 같은 구조적 개혁을 할 경우이다.

국민연금이 현재와 같이 일반 재정의 지원 없이 보험료만으로 A 급여와 B 급여를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필자는 이를 국민연금의 트라일레마(trilemma)라고 하였다(유종성, 2022). 국민연금이 소득비례 급여 외에 균등 급여를 포함함으로써 수익비가 저소득 가입자일수록 높고 고소득 가입자일수록 낮게 설계되어 있는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평균 수익비를 1로 하면 고소득 가입자의 수익비는 0.74 정도로 낮아지게 된다. 조세가 아닌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는 고소득자도 낸 것 만큼 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수익비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소득자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이들의 수익비를 1 또는 1

에 가깝게 하면 평균소득자의 수익비는 1.35 또는 1.35에 가깝게 된다. 평균 수익비가 1.35에 가깝게 되면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을 아무리 잘 해서 수익을 많이 낸다고 하여도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결국 국민연금이 A 급여와 B 급여를 계속 유지하려면 보험료 수입 외에 상당한 정도로 일반 재정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거주 기반의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한 나라들은 전액 조세로 재원을 충당하며, 기여 기반의 기초연금을 도입한 나라들도 상당한 정도의 재정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보험료만으로 A 급여까지 충당하려고 한 것이 애당초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것이었다.⁷⁾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저소득 불안정 취업자와 비경활인구는 국민연금에 미가입 또는 짧은 가입 기간으로 인해 노후에 국민연금 수급에서 배제되거나 저연금 수급자가 되기가 쉽다. 따라서 조세에 의한 일반 재정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층보다 중간소득층 이상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역진적인 결과가 된다. 이는 정당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A급여를 분리해내어 기초연금과 통합하고,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의 B 급여만을 유지하되 보험료만으로 재정수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이러한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국고 지원을 받아 현재와 같이 A 급여와 B 급여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기초연금의 장기적 발전방향은 매우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우선 국민연금에 상당한 규모의 국고지원을 하면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현재와 같이 7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재

7) 일본의 경우 기여기반 기초연금(국민연금이라 칭함)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1/3로 하다가 1/2로 인상했는데, 조세에 기반한 보편적인 정액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자는 개혁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이 성숙함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률이 점차 상승하게 될 것이고, 저소득층 가운데도 일부는 장기 가입을 통해 A 값의 20% 또는 이에 가까운 A 급여를 포함한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A 급여는 가입 기간에 비례하므로 여전히 상당수 저소득 불안정 취업자와 비경활인구는 A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소액만 받게 되고 고소득층일수록 A 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 재정의 지원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더 많이 주어질 것이므로, 기초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처럼 국고 지원이 국민연금 A 급여와 기초연금 양쪽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국민연금 A 급여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큰 혜택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은 수급 대상을 무연금자와 저연금자 중심으로 점차 축소하면서 기준연금액을 높여 공공부조 성격을 강화시키는 선택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보다 강화시키라는 요구가 커질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가운데 국민연금 장기 가입 유인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유인 저하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빈곤 노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능하면 부작용이 적은 차선택을 찾을 수밖에 없다. 아마도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70%보다 점차 축소해나가면서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일정한 비율로 감액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그나마 차선택이 되지 않을까 한다. 장

래에도 무연금자와 저연금자의 비중이 최소한 40% 내외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 지급 대상을 점차 축소해도 40-50% 이내로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진다.

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균등급여와의 통합 방안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 A 급여와 기초연금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연금을 수익비 1의 소득비례 연금으로 전환하되 A급여를 국민연금에서 분리하여 기초연금과 통합하여 A 급여와 기초연금 간의 제도적 충돌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A 급여와 기초연금 통합할 때 가장 단순명료한 방안은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는 OECD의 1층 연금 분류에서 가장 일반적인 '거주 기반 기초연금'(residence-based basic pension) 유형에 속한다. 통합된 기초연금의 지급액은 40년 가입시의 A 급여액에 해당하는 A 값의 20% (2022년 기준, 268만 원*0.2=53만 6천원)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부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 일체의 감액을 폐지하는 방안이다.

다만, 보편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정액 급여를 할 때에는 국민연금이 순수 소득비례 연금으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특수지역연금도 국고 지원에 의한 특혜적 요소가 없어지거나 대폭 완화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논리적 근거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특수지역연금 수급자들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논거도 없어질 것이다. 또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시에는 일정한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며, 증세가 어렵

다면 소득비례 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도 과세소득으로 취급하여 소득 계층에 따라 누진적인 한계세율로 부분 환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증세가 어려울 경우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통합된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A값의 20%로 하여 소득이 없는 노인에게는 전액을 지급하되, 소득이 있는 노인에게는 소득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소득이 A값보다 큰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된다. 소득이 A값인 경우에는 A값의 20%를 감액하니 지급액이 0이 된다.

위에서 보편적 기초연금 방식을 기본소득(basic income) 방식, 소득에 따른 감액지급 방식을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Gregory Mankiw가 지적한 바와 같이 기본소득의 재원을 정률 소득세로 충당하는 방식(basic income/flat tax)은 평균소득을 기준소득(손익분기점)으로 하는 마이너스 소득세와 똑같은 재분배 효과를 낸다.⁸⁾ 소득이 있는 노인에게 20% 감액 지급하는 것은 모든 노인에게 A 값의 20%를 정액 지급하면서 소득의 20%를 과세하는 것과 같을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는 A 값을 기준소득으로 하되 기준소득 초과자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이 마이너스 소득세의 원형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편적 기초연금을 실시할 경우에 A 값의 20%를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거나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

을 수 있다. 수급 대상 연령을 65세로부터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그리고 가령 65세-74세와 75세 이상을 구분하여 각각 A 값의 15%(2022년 기준, 40만 2천원)와 20%(2022년 기준, 53만 6천원)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Barr & Diamond는 연령이 빈곤의 대리 지표(proxy indicator)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65세와 75세 이상을 기준으로 보편적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언급한다.⁹⁾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70대까지 일을 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노인들이 20 이상의 연령집단으로 세분하여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65세와 75세 이상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기준금액을 A 값의 15%와 20%로 차등 지급하면서 마이너스 소득세 방식으로 소득에 따라 각각 15% 또는 20% 감액 지급하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65세 이상이든 75세 이상이든 소득이 A 값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 급여액이 0가 된다.

통합된 기초연금을 자산조사를 통해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 지원하는 사회부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소득비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가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보험료율을 크게 올리지 않고 2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거나 보험료율을 올리더라도 25% 이상으로 소득대체율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때 기초연금이 자산조사에 따른 사회부조 방식으로 된다면,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이

8) Mankiw, Gregory N.(2021). "How to Increase Taxes on the Rich (If You Must)", in Blanchard and Rodrik, eds., Combating Inequality: Rethinking Government's Role, 137-140. The MIT Press.

9) Barr, N. and Diamond, P. A. (2008), Reforming pensions: Principles and policy choic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 또는 기껏해야 25%에 머무르게 된다. 평균소득자가 노후에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에 따라 사회부조형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자가 될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만일 자산조사가 아닌 소득조사에 따른 관대한 최저소득보장제도로 운영한다고 하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장기 가입 유인을 현저히 저해할 수도 있다.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은 경로의존성이다. 한국의 경우 이미 기초연금이 70%를 대상으로 준보편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급여대상 축소보다는 확대 여론이 더 많았던 것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소득비례 연금으로 전환하면서 기초연금의 포괄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은 정치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유지 보완 기능, 저소득 취업자들의 소득비례 연금 가입유인 저하와 기존 수급자들의 반발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을 소득비례로 전환하면서 A급여와 기초연금을 통합해 빈곤 노인 지원에 집중하는 사회부조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선택지는 모든 노인에게 정액 지급하거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기본소득 방식의 보편적 기초연금과 소득에 따라 일정하게 감액 지급하는 마이너스 소득세 방식의 기초연금으로 압축된다. 두 방안 모두 소득비례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유인을 저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소득유지 보완 기능으로 소득비례 연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을 공유한다.

다음으로 재정적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보자. 소득비례 국민연금은 수익비를 1로 하여 보험

료만으로 재정 안정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초연금만 일반재정으로 지탱할 수 있으면 된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A값의 20%를 지급하는 방안은 통계청(2021)의 장래 인구 중위추계를 가정할 때 2050년에 GDP의 5.6%가 소요되며, 그 이후는 인구감소에 따라 약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장차 2060년이면 GDP의 2.8%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현행 기초연금(40만원 인상이 이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것)과의 통합하게 되므로 추가 재정지출은 최대 GDP의 2.8% 이하가 될 것이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의하면 2060년에 GDP 5.1%, 2088년에 GDP 6.6%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소득비례 국민연금이 재정수지 균형을 이루게 되면 보편적 기초연금의 총 소요 재정은 장기적으로 현행 국민연금의 적자 보전에 소요되는 재정규모보다 작으며 현행 기초연금보다 추가 소요되는 재정은 국민연금 예상 적자 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규모이다. 그리고, 65세-74세에게는 A값의 15%, 75세 이상에게는 A값의 20%를 지급하는 방안을 선택하면 2050년의 총 소요재정이 GDP의 5.1%로 줄어들며, 현행 기초연금에 비해 추가되는 소요재정은 GDP의 2.3% 이하로 줄어든다.

다음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 또는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 방식의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경우를 보자. 소득의 20%를 감액 지급하면 GDP의 3.4%로 소요재정이 대폭 줄어들어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할 때 들 비용(GDP의 2.8% 이상 전망)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¹⁰⁾ 앞의 <표 2>

10) 65세 이상 노인에게 개인소득의 20%를 감액 지급하는 마이너스 소득세 방식의 기초연금 소요재정은 2020년 가금복 자료의 노인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A값과 GDP가 같은 비율로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 추계하였다.

에 제시한 가급복 자료의 노인 소득분포를 토대로 볼 때 소득의 20% 감액 지급시 80% 이상의 노인이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마이너스 소득세 방식 기초연금의 장점은 보편적 기초연금의 장점을 상당부분 공유하면서도 소요재정 규모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점이다. 다만, 평균소득자에게 20%의 소득대체율을, 평균 두 배 소득자에게 10%의 소득대체율을 더해 주던 기능은 다소 약화된다.

보편적 기초연금을 A 값의 20% 수준으로 하는 것은 한국 경제가 감당하기에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뿐더러 국제적으로 비교해보아도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보편적인 거주 기반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덴마크는 임금근로자 평균임금(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하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나타내는 A값보다 높음)의 17.6%, 네덜란드는 평균임금의 29.2%, 뉴질랜드는 평균임금의 39.8%에 이르는 높은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앞의 <표 1> 참조).

IV. 결론

현재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큰 방향은 일치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차이가 드러난다. 윤석열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는 “연금개혁과 병행해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40만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포괄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인상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하위 70%에 대한 40만원 인상은 물론 나머지 30%에게도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등 전면 보편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부부 감액 폐지 등을 공약한 바가 있다.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소요재정이나 국민연금 가입유인 저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현 세대 노인 빈곤의 해소는 국민연금 개혁에 앞선 선결과제이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적어도 2022년 A 값의 15%(40만 2천원)에 근접하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결론에 관계 없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기초연금의 보편화와 같은 의제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A 급여의 제도적 충돌 문제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고려해서 논의되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국민연금을 소득비례 연금으로 전환하여 보험료만으로 재정안정화를 이루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A 급여와 통합하여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지급액은 A값에 연동하여 65세-74세는 15%, 75세 이상은 2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액의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은 보편적 증세를 전제로 해야 하나, 보편적 증세가 어렵다면 마이너스 소득세 방식으로 소득에 따라 각각 15% 또는 20% 감액을 하여 소득이 A 값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할 수 있다.

노인빈곤 해소에 보다 역점을 둔다면, 현 정부



임기 내에 65세-74세는 40만원, 75세 이상은 60만원을 기준연금액으로 하되 소득에 따른 감액을 각각 20%와 30%로 하여 200만원 이상의 소득자를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득인정액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국민연금이나 특수지역연금 수급액을 소득에 포함하면 A 값, 또는 200만원 이상의 고액 공적연금 수급자는 자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다만, 부부감액이나 국민연금 연계감액 등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부부감액은 일종의 결혼에 대한 벌금(marriage penalty)이며 황혼이혼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의 발전방향을 논의할 때 국민연금 A급여와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바람직한 해법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국민연금 B 급여는 물론 A 급여까지도 국고 지원 없이 전부 보험료 기반으로 설계한 것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한 점(트라일레마)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미봉적인 모수개혁을 넘어서서 구조개혁을 지향해야만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도 제대로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구인회·강성호·박형준·손병돈·우해봉·이원진·최옥금·함선유·한경훈. 2021.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심층분석』.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1. 『2020 국민연금 생생통계 Facts Book』.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 국민연금사편찬위원회. 2015. 『실록 국민의 연금』(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 유종성. 2022. “국민연금의 트라일레마, 해결방안을 찾아서.” 『사회보장연구』 제38권 제3호, pp. 1-37.
- 유희원·류재린·김혜진·김아람. 2022.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현황과 대응방안』. 국민연금연구원.
- 이상은. 2018. “기초연금의 제도성격 및 발전방향.” 『연금포럼』 제72호, 3-13.
- 정찬미·이상은. 2022. “기초연금의 형평성 평가: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접근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제74호, pp.209-235.
- 정해식. 2020.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기적 변화 방향과 기초연금과의 관계.” 『연금포럼』 제80호, 26-41.
- 최옥금. 2020.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제도 간 관계.” 『연금포럼』 제80호, 4-13.
- 최혜은·유종성(2022),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이 노인의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연금연구』 제12권 제1호, pp. 21-50.
- 한국건강형평성학회(2018), 『지역별 건강격차 프로파일: 공정한 사회, 건강한 삶』.
- Barr, N. and Diamond, P. A. (2008), *Reforming pensions: Principles and policy choic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nkiw, Gregory N.(2021). “How to Increase Taxes on the Rich (If You Must)”, in Blanchard and Rodrik, eds., *Combating Inequality: Rethinking Government’s Role*, 137-140. The MIT Press.
- OECD(2021), *Pensions at a Glance 2021: OECD AND G20 INDICATORS*, Paris: OECD.



기업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 - CDC 제도를 중심으로



유호선(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I. 서론

지난 30여 년 간 기업연금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연금에서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연금으로의 변화이다. DB형 연금은 고용주의 책임 하에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제도이나, 투자 및 장수(longevity) 등의 위험을 고용주가 전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있는 제도이다. 반면, DC형 연금의 경우 고용주는 보험료 기여의 책임만 있을 뿐, 투자, 장수, 상품 선택 등 모든 책임을 근로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에 DC형 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관점에서, 2008년 등과 같은 경제 위기 시 은퇴하여 마이너스 상태의 은퇴자산을 연금화해야 하는 세대는 노후준비에 큰 차질이 일어날 수 있다. 반면, 고용주들은 2000년대 이후 찾아진 경제 위기 및 고령화 등의 위기에서 DB형 연금의 고용주 책임을 줄이기 위하여 점차 DC형 기업연금 제도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DC형 기업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역할을 하는 DB형 기업연금과 달

리,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DC형 기업연금에서 금융에 대한 지식이 많은 일부 개인들은 공격적인 투자로 수익률을 제고하여 은퇴 자산(occupational pension capital)을 크게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개인들은 잦은 경제위기 및 고령화의 위험을 전적으로 책임지며, 위험 상황에 대한 노출 확률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DC형 기업연금의 경우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의 기능은 많이 축소되고 있다. 한 예로 CFPB(2020)에 의하면, 1992년부터 2014년 사이 은퇴한 DC형 기업연금을 수급한 미국인 5명 중 1명은 은퇴 후 첫 5년 이내에 대부분의 은퇴 자산을 사용하며, 5년 후 동일한 생활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에 충분한 돈을 가진 사람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MetLife(2017)에 의하면, DC형 연금에서 퇴직 시 일시금을 받는 사람 5명 중 1명(21%)은 평균 5.5년 만에 해당 자산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DB형 및 DC형 연금의 단점을 완화하며, 두 가지 연금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연

금(hybrid pension)¹⁾ 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연금은 미국, 네덜란드, 영국 등 많은 국가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CDC(Collective Defined Contribution), 미국의 CBP(Cash Balance Plan), 영국의 DA(Defined Ambition), 캐나다의 TBP(Target Benefit Plan) 등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 기업연금들 중 대표격인 네덜란드의 CDC를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CDC는 하이브리드 연금의 한 종류로서 DB형 연금의 장점인 위험의 공유(risk pooling)를 DC형 연금에 결합시킨 제도이다.²⁾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연금 제도에서 CDC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본 후, 네덜란드의 CDC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II . CDC(Collective Defined Contribution) 연금의 장점 및 단점

1. CDC 연금의 장점

1) 전문적 투자 지식, 위험 및 비용의 공유

CDC형 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연대 기금을 조성하여 가입자들(근로자들) 간 투자 및 장수 등의 위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대 기금 조성의 첫 번째 주요 이점은 개인

이 금융 전문가의 전문 지식과 경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에 문외한인 개인이 복잡하고 어려운 선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DB형 기업연금제도는 사전에 결정된 급여 지급 공식에 의해 연금이 지급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급여액을 미리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료를 수리적 계산에 기초하여 산출하며, 고용주는 이에 기초하여 급여지급을 위한 보험료를 매년 기여해야한다. 그리고 미리 확정된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금 투자를 책임질 CIO(Chief Investment Officer)와 직원을 고용한다. 이러한 투자팀의 목표는 보험계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기간 동안 퇴직자에게 연간 혜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연기금을 투자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내 DB 투자팀은 보험계리사와 위험 관리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외부 전문가 및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외부 투자 관리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전문가들이 개인 투자자를 능가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많은 연구에 따르면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DB형 기업연금에서의 CIO 등의 체계는 다양한 투자 가능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험계리사, 위험 관리자, 컨설턴트 등 전문가에 의하여 분산투자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한다(Millard, Pitt-Watson and

1)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혼합형연금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혼합형 연금은 DB형 연금과 DC형 연금을 일정 비율로 운영하는 형태를 지칭한다.

	제도의 목적	연대 기금 조성 여부	최종 급여 수준의 보장 여부
DB	노후 소득원	연대 기금 (pooled)	보장 (고용주 책임)
DC	은퇴 시 자산 형성(일시금 수급 혹은 연금화)	개인 계좌 (individual)	미보장 (개인 책임)
CDC	노후 소득원	연대 기금 (pooled)	미보장 (모든 가입자 위험 공유)

자료 : Millard, Pitt-Watson and Antonelli (2021)



Antonelli, 2021).

그러나 DC형 기업연금에서는 위와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 없이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CDC에서는 DB형 연금의 이러한 장점을 내재화하여 DC형 연금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2) 장수 위험의 공유

연대 기금 조성의 두 번째 주요 이점은 개인이 장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들은 아무도 자신의 기대여명을 알 수 없다. 따라서 평균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은퇴이후 약 20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노후준비를 하였으나 15년을 더 살게 될 경우, 개인들은 노후빈곤의 위험에 빠질 것이다. 즉, 자신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저축해야 하는지와 은퇴 후 얼마를 지출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연대기금을 조성하여 장수 위험을 공유할 경우, 연기금에서는 상당히 정확하게 퇴직자 그룹의 평균 기대 수명과 이에 해당되는 재원의 규모를 계산할 수 있다. 이에 연대 기금을 조성하여 조기 사망자로부터 장수자로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장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물론 연대기금의 조성을 통한 집합적 계산이 절대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을 계산하는 것은 개인의 상황보다 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정확할 수 있다. 장수 위험을 집합적으로 통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Mirza-Davies, 2022 ; Millard, Pitt-Watson and Antonelli, 2021).

3) 시간관련 위험의 제한(Limit timing risk)

연대 기금 조성의 세 번째 주요 이점은 은퇴 시기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2008년의 금융위기 시 은퇴자들은 은퇴자산 폭락을 경험하였다. EBRI(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20년 이상 401(k)에 가입한 55~64세의 평균 은퇴자 자산은 2008년에 약 25% 감소했다(VanDerhei, 2009). 대부분 주식에 투자한 DC형 기업연금 가입자들은 더 많은 손해를 보았을 것이다. 또한 은퇴를 앞둔 개인은 주식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이 언제 회복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손해를 입은 은퇴자산을 바로 연금화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위기 상황에서 DB형 기업연금 혹은 CDC 연금 가입자들의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즉, DB형 및 CDC 기업연금을 책임지는 CIO는 장기적 관점에서 분산투자를 하였을 것이며, 2008년과 2009년 주기적인 재조정(rebalancing)을 하였을 것이다(Willis Towers Watson, 2020 ; Millard, Pitt-Watson and Antonelli, 2021). 이에 순수 DC형 기업연금에 비하여, DB형 및 CDC 기업연금의 손실은 줄어들었을 것이다.

4) 기금 운용을 통한 장기 투자 정책의 혜택 공유

연대 기금 조성의 네 번째 이점은 장기 투자 정책을 통하여 더 다양하고 덜 변동적인 투자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DC형 기업연금 가입자는 기업연금이 은퇴 후 주요 소득원임을 알기 때문에 원금 손실에 대한 매우 큰 부담이 있다. 따라서 퇴직 후 예측 가능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위험도가 낮은 채권 중심의 안전한 연금을 구입한다. 반

면, CDC에서는 CIO에 의하여 주식, 채권, 부동산 보유, 기반 시설 투자 등에 분산투자를 한다. 또한 CDC에서는 은퇴하는 사람들과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투자 구성은 동일하게 유지된다(Willis Towers Watson, 2020 ; Millard, Pitt-Watson and Antonelli, 2021). 이에 CDC에서의 포트폴리오 개인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잘 분산되고 잘 계획된 포트폴리오가 된다. 즉, 이러한 포트폴리오에 의하여 더 많은 수익을 내며 동시에 변동성이 적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CDC 연금의 단점

1) 급여에 대한 보증 부재

CDC는 고용주가 급여 수준을 보증해주는 부분만 제외하면 DB형 기업연금과 유사한 제도이다. 이에 일반적 상황에서는 CDC형 기업연금에서의 급여수준과 DB형 기업연금의 급여수준이 유사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 수익률과 평균 기대수명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DB형 기업 연금은 고용주가 책임을 전담하는 반면 CDC에서는 가입자들이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즉, 이러한 경우, DC형 기업연금과 같이 급여수준은 다양해질 수 있다.

따라서 CDC 제도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가지고, 가입자들에게 다양한 상황 변수들을 잘 이해시켜야 한다. 특히, 네덜란드의 CDC 제도의 사례는 DC제도에 비하여 상당히 안정적임을 제시한다(Willis Towers Watson, 2020 ; Millard, Pitt-Watson and Antonelli, 2021).

2)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

CDC 제도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제도 내에서 세대 간 이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현 노인세대가 보다 많은 혜택을 받으며 현 근로세대는 보다 적은 혜택을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다양한 연구들에서 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Iwry, 2021 ; PPI, 2014). 제도가 영속적이며 노인을 부양할 젊은 세대가 항상 충분하다면 이러한 세대 간 불평등은 각 근로자의 평생 동안 균등해질 것이다. 즉, CDC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젊은 근로자의 의무 가입과 제도의 영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CDC의 경우 다른 제도에 비하여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Mirza-Davies, 2022 ; Millard, Pitt-Watson and Antonelli, 2021). 즉, 세대 간 이전의 핵심 문제는 한 세대가 다른 세대와 동일하게 저축한 경우 다른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CDC를 DB형 기업연금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다른 DC형 기업연금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인 비교일 것이다. 이에 CDC를 다른 DC형 연금제도와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CDC 소득의 변동성이 개인 저축을 통해 발생했을 것보다 작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CDC에서와 같이 완충기금을 별도로 만들 경우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크게 완화될 수 있다.

3) 수탁자 책임(fiduciary responsibility)의 문제

CDC제도에서 제기되고 있는 세 번째 단점은 수탁자 책임의 문제이다. 연금과 같은 장기 저축은 돈이 관리되는 방식과 부과되는 수수료가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결정된다는 엄청난 신뢰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CDC 시스템



에서는 확정된 급여(보장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수탁자 책임의 이슈가 잘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이슈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CDC를 DB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DB형 기업연금에서는 고용주가 이미 약정한 확정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CDC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에 CDC를 다른 DC형 기업연금들과 비교해볼 경우, 다양한 연구에서 CDC의 수익률이 DC형에 비하여 약 70% 정도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Willis Towers Watson, 2020).

III. 네덜란드 CDC 사례연구

1. 네덜란드 기업연금의 개요

네덜란드 기업연금은 준 의무가입제도로써, 산업별 기금형 연금제도가 대표적인 형태이다. 산업별 연금제도는 특정 산업에 속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연금제도로, 유사 업종의 여러 중소기업이 모여 단일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형태이며 2021년 기준 전체 가입자의 약 91%가 산업별 연기금에 가입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기업연금은 주로 DB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2006년 CDC 제도 도입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전체 연기금 178개 중 24개(약 14%)가 CDC 제도에 해당된다. 가입자 수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전체 586만 명 가입자 중 CDC형 연금가입자가 17만 명으로 약 3%정도로 보고되고 있다(Ed Westerhout, Eduard Ponds, Peter Zwaneveld, 2021).

2. 네덜란드 CDC 도입 배경 및 개요

네덜란드는 2000년 초반 주식시장 하락과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DB형 연금제도의 적립률이 크게 하락하였다. 이에 DB형 운용리스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증가 하면서 CDC 제도의 도입이 본격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네덜란드 CDC 제도는 기업이 사전에 약정한 기여금을 적립하고, 투자 결과에 따라 급여액을 조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다만, 일반적인 DC제도와는 차이는 연기금을 집단적으로 운용하며, 기금 적립수준을 급여액에 자동 연동시켜서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연금의 산식이 정해져 있고, 개인의 연금계정 없이 연기금이 집단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DB형의 특징을 가지나, 기업연금 급여 수준이 적립금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운용책임이 전체 근로자 집단에게 있다는 점에서 DC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부연하면, 운용실적 악화로 적립 부족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추가 부담하거나 연금급여액이 감액되므로 기업연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네덜란드 CDC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네덜란드 기업연금은 노사간 합의를 통하여 결정되며, 연대성을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산업별 연금제도의 경우 기업연금 설계에서 산별차원의 노사가 합의한 대로 해당 산별노조에 속한 모든 기업에게 강제된다. 특히, CDC는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이 적을 경우 연금을 적립하는 현 세대의 기금이 노인세대에게 이전되는 구조이므로 제도 운영에서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장점은 사용자의 추가 재정 부담이 없고 규모의 경제에 의한 관리비용 절감이 가

능하며, 적립금은 전문가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운용되므로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투자 의사결정 역시 필요 없다. 뿐만 아니라, CDC에서는 수급단계 근로자와 적립 단계 근로자의 적립금이 함께 운용되므로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침체 등의 이유로 기금이 최소적립률 이하일 경우 10년에 걸쳐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 CDC제도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적립금 운용결과가 목표 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면 급여가 감액되어 운용책임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세대 간 운용리스크 이전 문제로 형평성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CDC 운영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CDC의 적립금 운용은 노사 대표로 구성된 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운용결과에 대한 부담은 근로자 단체가 가지므로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기업연금 운용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CDC제도는 신뢰 및 연대에 대한 합의에 기반하여 제도화되어야 한다. 즉, CDC 제도는, 공적연금과 같이, 동일한 기금 내에서 보험료를 기여하는 근로세대와 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세대가 함께 공존하여 운용 리스크 이전 문제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Ed Westerhout, Eduard Ponds, Peter Zwaneveld, 2021 ; Sinéad Agnew, Paul S Davies, C Mitchell, 2020).

3. 최근 기업연금 연금개혁

2019년 6월 연금개혁안에 노사정이 합의하였으며, 본 개혁의 주요 내용은 연금 수급연령의 상향조정과 CDC 연금이 결정되는 방식의 변

경이다. 즉, 기업연금의 수급연령을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2024년 이후부터 연금수급연령을 기대여명에 연계한다. 또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모든 기업연금에 대하여 연령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여율을 설정하였다. 기존의 DC형 제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여율이 높아지고, DB형 제도는 연령과 무관하나 실질적으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연금 가치가 증가하는 제도였다. 그리고 더 이상 새로운 DB 제도가 허용되지 않으며, 향후 모든 연금은 IDC 또는 CDC 제도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투자 수익 변동으로 인한 세대 간 리스크 이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대 기금(Solidarity reserve)”을 적립하는 것이다.

IV. 결론

고령화 및 잦은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DB형 기업연금의 지속가능성은 더 이상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기업들은, 특히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DB형 기업연금을 DC형 기업연금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기업연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수 및 투자 등의 위험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기업연금에서 담당하였던 개인들의 노후소득보장은 더 이상 담보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선진국들은 DC형 기업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방안들로 연대성을 제고한 하이브리드형 연금의 활성화 및 디폴트옵션의 활성화 등을 도입하고 있다. CDC 등의 하이브리드형 연금은 네덜란드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디폴트옵션은 호주 등을 포함한 영미권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제도이다. 두 제도



모두 개인의 선택은 최대한 배제하고 전문가들의 기금운용 혹은 전문가들의 선택을 대용하여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최대화하려는 의도이다. 다만, CDC는 연대의 특성을 강화하여 가입자들 간 장수 및 운용리스크 등의 위험을 분산하는 특성을 가진 제도이며, 디폴트옵션은 전문가들의 선택을 대용함으로써 운용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제도이다. 즉, 네덜란드와 같은 형태의 CDC는 공적연금의 성격이 보다 강화된 제도이며, 디폴트옵션은 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에서는 두 가지 제도가 모두 2022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³⁾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방향으로 DC형 퇴직연금을 발전시키는 것이 옳은 선택인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경우 디폴트옵션을 강화하는 방향이 더 쉬운 선택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목적만을 가지고 생각할 경우, CDC 제도의 활성화가 어렵지만 보다 타당한 선택지라고 판단된다. 이에 NEST를 통하여 디폴트옵션을 매우 강하게 제도화하였던 영국도 최근에 CDC제도인 DA를 도입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3) 그러나 두 가지 제도 모두 일반적인 CDC형 기업연금 그리고 디폴트옵션제도와는 다르게 변형되어 도입되었다.

〈참고문헌〉

- Ed Westerhout, Eduard Ponds, Peter Zwaneveld, 2021, Completing Dutch Pension Reform, CPB Background Document
- Iwry J. Mark, David C. John, Christopher Pulliam, William G. Gale, 2021, “Collective Defined Contribution Plans” Economic Studies at Brookings
- MetLife (May 10, 2017). “The Risks of Taking a Lump Sum Payment in Retirement,” MetLife Blog Post; and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 Millard, C.E.F., Pitt-Watson, D., and Antonelli, A.M. 2021. “Securing a Reliable Income in Retirement: An Examination of the Benefits and Challenges of Pooled Funding and Risk Sharing in Collective Defined Contribution (CDC) Plans.” Center for Retirement Initiatives, McCourt School of Public Policy, Georgetown University.
- Mirza-Davies, James, 2022, “Pensions : Collective Defined Contribution Schemes”, Research Briefing, House of Commons Library
- Office of Financial Protection for Older Americans (May 2020). “Retirement Security and Financial Decision-making,” Research Brief
- Pensions Policy Institute, 2014, “Risk Sharing Pension Plans: The Dutch Experience”, PPI Briefing Note Number 71
- VanDerhei, Jack (2009). “The Impact of the Recent Financial Crisis on 401(k) Account Balances,” EBRI Issue Brief, no. 326.
- Willis Towers Watson, 2020, “Collective Defined Contribution pensions would on average be 70% higher than traditional DC and 40% higher than typical DB” Press Release, 5 October 2020
- Sinéad Agnew, Paul S Davies, C Mitchell, 2020, Pensions : Law, Policy and Practice, Hart Publishing



지난 1년 간의 노동시장 평가: 취업자수, 경제활동참가율, 임금상승률을 중심으로



황선호(재정추계분석실 부연구위원)

I. 서론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은 큰 영향을 받았으나, 최근 전염병 확산세가 진정되어 가며 고용 여건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주요국 통화정책 등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한 염려가 커지는 상황이며, 재고가 늘어나는 등 수출 악화에 대한 신호도 감지되고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해지는 가운데 임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만큼 오르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국민연금 가입자의 변화는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의 변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과정에서는 임금상승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노동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에는 GDP 성장률, 물가상승률, 이자율과 함께 임금상승률에 대한 전망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의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임금상승률의 방향성에 대하여 짐작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본 고에서는 지난 1년 간의 노동시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임금상승률을 중심으로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각 수치에 대하여 기술해보려고 한다. 본 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제III장, 제IV장, 제V장에서는 각각 취업자 수, 경제활동인구, 임금상승률에 대하여 통계수치를 제시하고 기술한다. 제VI장에서는 본 고의 내용을 요약하려고 한다.

II. 노동시장 동향

먼저 고용노동지표를 살펴봄으로써 노동시장 동향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에는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확대되고 있다.¹⁾ <표 1>와 <표 2>는 지난 1년 간의 노동시장 통계를 정리한 것이다.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

1) 노동수요가 확대되면 기업의 제시임금(offered wage) 수준과 고용수준이 상승한다. 노동공급이 확대되면 근로자의 요구임금(reservation wage) 수준이 하락하고 노동시장 참여유인이 강해진다.

는 전년동월대비 2.4%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4.1%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80.7만명 증가한 2,841만 명을 기록하였다. 실업률은 올해 1월 4.1%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8월에는 2.1%를 기록하였다. 고용률은 전월대비 0.1%p 감소한 62.8%를 기록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주요국 경기 둔화 가능성, 반도체업종 약세 등으로 노동시장 상황이 긍정적 흐름을 지속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Ⅲ. 취업자 수

코로나19 확산 이후 크게 감소했던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자 수는 2022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전년동기 대비 100만 명, 88만 명 증가하였다.

[그림 1]의 (a)는 1996년 6월-2022년 8월까지의 취업자 수를 선형추세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취업자 수는 선형추세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¹ [그림 1]의 (b)는 취업자 수를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1월을 100으로 정규화한 것이다. 취업자 수는 경제위기 이

<표1> 고용노동지표

(단위: 천명, %)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2020	44,785	28,012	26,904	1,108	16,773	62.5	4.0	60.1
2021	45,080	28,310	27,273	1,037	16,770	62.8	3.7	60.5
2021Q3	45,106	28,451	27,645	807	16,655	63.1	2.8	61.3
2021Q4	45,178	28,445	27,611	833	16,734	63.0	2.9	61.1
2022Q1	45,211	28,360	27,369	990	16,851	62.7	3.5	60.5
2022Q2	45,242	29,227	28,347	880	16,015	64.6	3.0	62.7
2021/8	45,104	28,346	27,603	744	16,758	62.8	2.6	61.2
2021/9	45,124	28,439	27,683	756	16,685	63.0	2.7	61.3
2021/10	45,148	28,528	27,741	788	16,620	63.2	2.8	61.4
2021/11	45,181	28,528	27,795	734	16,653	63.1	2.6	61.5
2021/12	45,206	28,278	27,298	979	16,929	62.6	3.5	60.4
2022/1	45,200	28,096	26,953	1,143	17,104	62.2	4.1	59.6
2022/2	45,213	28,356	27,402	954	16,857	62.7	3.4	60.6
2022/3	45,219	28,627	27,754	873	16,592	63.3	3.0	61.4
2022/4	45,233	28,942	28,078	864	16,291	64.0	3.0	62.1
2022/5	45,245	29,374	28,485	889	15,871	64.9	3.0	63.0
2022/6	45,249	29,366	28,478	888	15,882	64.9	3.0	62.9
2022/7	45,258	29,311	28,475	836	15,947	64.8	2.9	62.9
2022/8	45,270	29,025	28,410	615	16,246	64.1	2.1	62.8

자료: 통계청



<표 2> 고용노동지표(전년동기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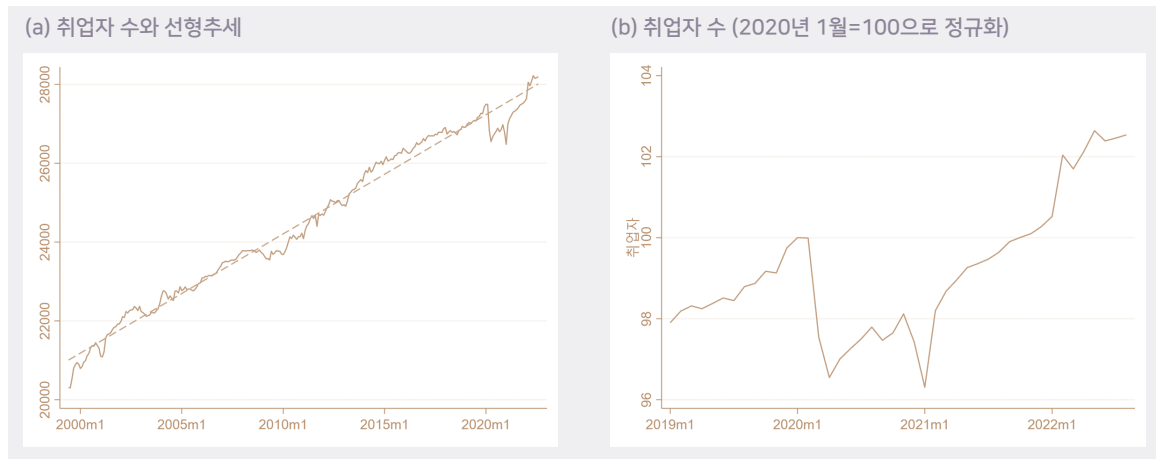
(단위: %)

	만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2020	0.6	-0.6	-0.8	4.2	2.8
2021	0.7	1.1	1.4	-6.4	0
2021Q3	0.7	1.4	2.1	-19.4	-0.5
2021Q4	0.7	1.6	2.4	-20.1	-0.9
2022Q1	0.5	2.2	3.8	-28.2	-2.3
2022Q2	0.4	2.2	3.2	-22	-2.7
2021/8	0.7	1.4	1.9	-13.9	-0.6
2021/9	0.7	1.5	2.5	-24.4	-0.8
2021/10	0.7	1.5	2.4	-23.4	-0.7
2021/11	0.7	1.1	2.0	-24.1	-0.1
2021/12	0.6	2.2	2.9	-13.8	-1.9
2022/1	0.5	2.6	4.4	-27.2	-2.7
2022/2	0.5	2.3	3.9	-29.5	-2.4
2022/3	0.5	1.7	3.1	-28.2	-1.6
2022/4	0.5	2.1	3.2	-24.7	-2.3
2022/5	0.4	2.4	3.4	-22.5	-2.9
2022/6	0.4	2.2	3.0	-18.7	-2.8
2022/7	0.4	2.6	3.0	-9.1	-3.5
2022/8	0.4	2.4	2.9	-17.4	-3.1

자료: 통계청

[그림 1] 취업자 수

(단위: 천명)



주: 계절조정
자료: 한국은행

2) 또한, 취업자 수는 Hodrick-Prescott 필터를 이용한 장기적 추세도 상회한다.

후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에 1998년 외환위기 시기에는 31개월이 소요되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는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에 취업자 수는 16개월이 소요되었다(황수빈·이종하, 2022). 위의 그림을 바탕으로 판단해보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1월 이후 22개월 뒤인 2021년 10월에 이르러 코로나19 이전의 취업자 수를 회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한 취업자 수의 회복속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느리고 외환위기 때보다는 빨랐다고 볼 수 있다. 취업자 수 변화를 산업별로 나누어 보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증

가한 반면, 건설업, 위생환경업 등에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비스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의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452.9만 명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4만 명 증가하였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주로 수출에 의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최근 제조업 재고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주요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은 향후 취업자 수 전망경로에 대한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표 3> 산업별 취업자 수

(단위: 천명)

	농림 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위생 환경업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금융 부동산·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교육· 보건복지	기타 사회 및 개인 서비스	
2020	1,445	4,389	4,376	2,242	2,016	153	18,828	5,647	5,288	5,246	2,647
2021	1,458	4,380	4,368	2,331	2,090	169	19,104	5,451	5,533	5,517	2,605
2021Q3	1,572	4,322	4,310	2,379	2,134	174	19,372	5,461	5,573	5,703	2,635
2021Q4	1,472	4,387	4,376	2,374	2,125	172	19,379	5,421	5,678	5,653	2,628
2022Q1	1,310	4,489	4,476	2,320	2,071	173	19,250	5,424	5,672	5,540	2,614
2022Q2	1,630	4,518	4,507	2,393	2,164	153	19,805	5,486	5,709	5,922	2,688
2021/8	1,573	4,302	4,289	2,392	2,149	173	19,337	5,467	5,542	5,688	2,639
2021/9	1,572	4,309	4,299	2,383	2,133	175	19,420	5,431	5,603	5,742	2,643
2021/10	1,594	4,334	4,324	2,374	2,127	170	19,439	5,427	5,624	5,772	2,615
2021/11	1,510	4,412	4,402	2,388	2,140	171	19,485	5,402	5,683	5,762	2,638
2022/12	1,311	4,414	4,403	2,360	2,109	175	19,213	5,433	5,728	5,424	2,629
2022/1	1,246	4,479	4,467	2,305	2,055	173	18,923	5,428	5,681	5,235	2,578
2022/2	1,276	4,462	4,450	2,297	2,044	176	19,367	5,430	5,694	5,609	2,633
2022/3	1,408	4,525	4,512	2,359	2,115	171	19,462	5,415	5,640	5,776	2,631
2022/4	1,545	4,531	4,518	2,357	2,123	157	19,646	5,453	5,669	5,869	2,655
2022/5	1,669	4,515	4,504	2,417	2,183	156	19,882	5,514	5,732	5,933	2,704
2022/6	1,677	4,508	4,498	2,406	2,185	145	19,888	5,492	5,725	5,964	2,707
2022/7	1,664	4,528	4,520	2,366	2,137	146	19,917	5,530	5,713	5,960	2,714
2022/8	1,663	4,535	4,529	2,354	2,126	146	19,858	5,521	5,695	5,944	2,697

자료: 통계청



IV. 경제활동인구

[그림 2]의 (a)는 경제활동인구를 선형추세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코로나 19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최근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는 선형추세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위기 이후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에 1998년 외환위기 시기에는 52개월이 걸렸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는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에 31개월이 소요되었다(황수빈·이종하, 2022). 다음 [그림 2]의 (b)를 통해 경제활동인구는 24개월 이후인 2021년 12월에 이르러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회복속도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에 비해 빨랐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중으로 정의되므로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에 경제활동참가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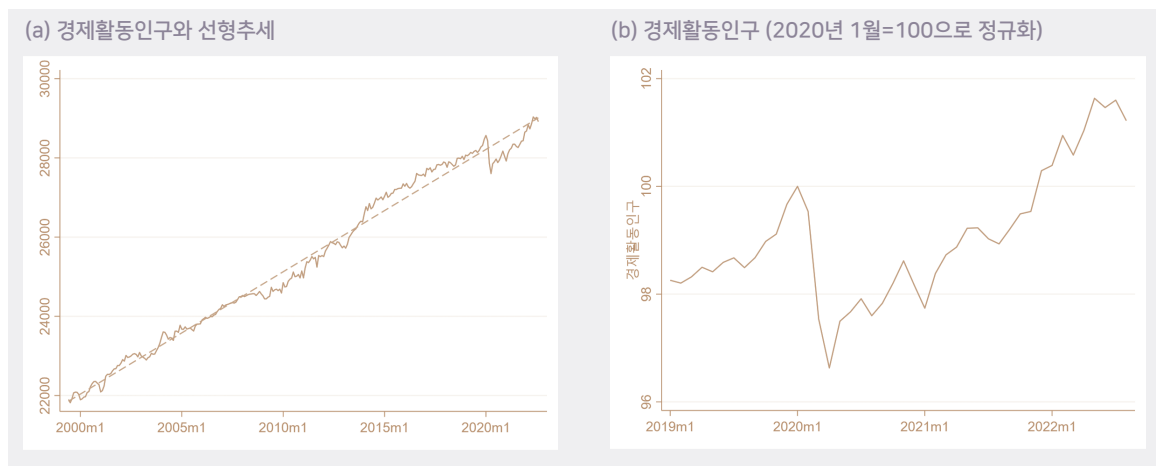
곱해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 증감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증감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감률로 분해할 수 있다. 또는 다음과 같이 로그 차분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Delta \ln(\text{경제활동인구})_i = \Delta \ln(\text{만 15세 이상 인구})_i + \Delta \ln(\text{경제활동참가율})_i$$

[그림 3]은 위의 식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에 자연로그를 취한 다음 전년동월대비 차분을 계산하였다. 경제활동인구는 2021년 3월 음(-)의 증감률에서 양(+의 증감률로 전환된 다음 2022년 8월까지 그 증감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만 15세 이상 인구의 로그차분은 2020년 1월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음(-)의 증감률을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 경제활동참가율의 로그차분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음(-)의 값을 보였으나 그 이후 양(+의 값으로 전환되었고 2022년 8월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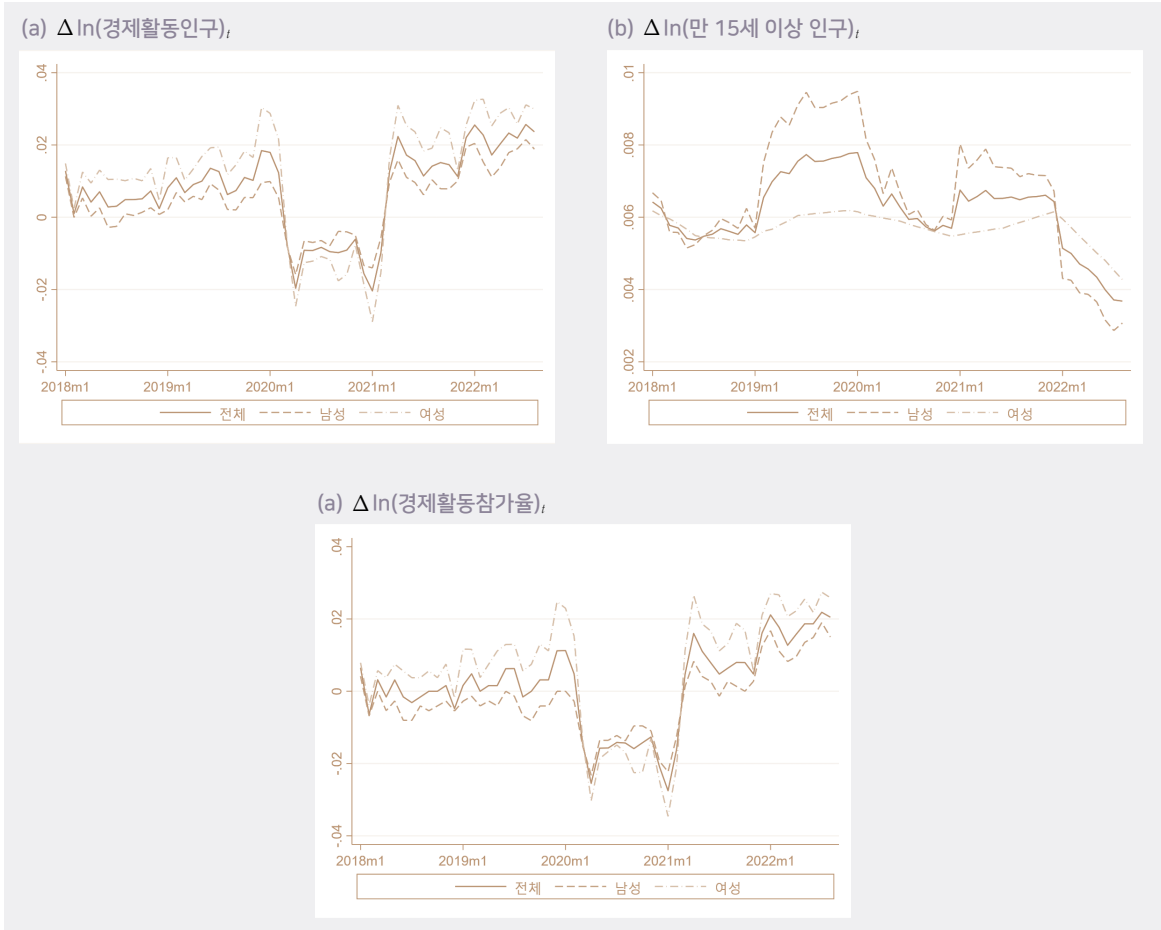
[그림 2] 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주: 계절조정
자료: 한국은행

[그림 3] 경제활동인구 증감율



주: 각 변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다음 전년동월대비 차분
 자료: 통계청

은 만 15세 이상 인구에 의한 요인보다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요인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를 성별에 따라 나누어 보면, 코로나19 충격에 따라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남성보다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보다 더 크게 하락하는 현상은 과거 외환위기(1998년 1월-2000년 6월)과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12

월-2010년 2월)에도 유사하게 발생하였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대면서비스 업종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 해당 산업은 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³⁾ 황수빈·이종하(2022)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보다 더 크게 하락하게 된 이유를 경제위기 시기에는 여성이 일자리를 잃으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보다 가사, 육아 등을 전념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하였다. 오삼일·이종하(2021)는 코

3) 김지연 (2021), 오삼일·이종하 (2021)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자녀돌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여성의 노동공급이 감소했을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로나19 위기는 여성 고용이 남성에 비해 더 크게 악화되었다는 점에서 shecession (she+recession)의 성격을 지녔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경제활동인구가 음(-)의 증감률에서 양(+)의 증감률로 전환된 2021년 3월 이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남성에 비해 더 크게 상승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V. 임금상승률

다음 <표 3>은 명목임금상승률을 나타낸 것이다. 비교를 위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함께 나타내었다. 1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체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7월 전년동월대비 4.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

비 6.3%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임금상승률은 -2.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상승률이 음(-)으로 전환된 것은 4월부터이다. 이는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으로, 4월부터 7월까지 실질임금상승률이 음(-)의 값을 보인 것은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임금상승률은 향후 노동시장 내 임금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 간의 연쇄상승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즉, 임금을 올리게 되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므로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다시 임금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 임금상승률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단위: %

	전체근로자		상용 근로자	임시 일용 근로자	규모별						CPI 상승률
	1인 이상	5인 이상			1~ 4인	5~ 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2020	1.1	0.7	0.4	7.8	4.7	2.7	2.6	1.2	0.0	-2.1	0.5
2021	4.6	5.0	4.7	3.9	2.6	4.8	2.9	4.6	6.5	6.5	2.5
2021Q3	5.0	5.4	5.1	4.2	2.4	5.1	3.1	4.5	7.1	7.4	2.5
2021Q4	5.2	5.7	5.2	3.2	2.8	5.3	2.9	4.2	7.0	8.3	3.5
2022Q1	7.2	7.6	7.6	3.3	4.4	4.9	3.5	5.0	7.1	13.2	3.8
2022Q2	4.2	4.1	4.4	2.4	4.7	4.2	2.8	3.8	5.1	4.1	5.4
2021/8	4.2	4.6	4.4	3.2	2.2	6.0	2.9	4.4	5.1	5.5	2.6
2021/9	3.8	4.1	3.9	3.8	2.5	4.2	2.2	3.9	8.4	3.8	2.4
2021/10	3.6	3.9	3.5	3.7	2.5	4.7	2.6	2.9	5.9	4.4	3.2
2021/11	4.0	4.1	3.9	3.1	3.7	4.3	2.9	4.3	5.8	3.8	3.8
2021/12	7.5	8.3	7.8	2.8	2.2	6.8	3.3	5.1	8.8	14.6	3.7
2022/1	21.8	23.2	22.8	4.0	11.9	15.2	12.8	15.5	21	38.2	3.6
2022/2	-6.5	-7.0	-6.5	3.1	-2.2	-4.6	-6.5	-5.0	-5.2	-11.0	3.7
2022/3	6.4	6.8	6.7	3.0	3.9	4.4	4.7	4.8	6.2	10.8	4.1
2022/4	2.7	2.5	2.9	2.3	4.1	3.6	2.0	2.6	4.8	0.1	4.8
2022/5	5.1	5.1	5.3	2.7	4.9	4.6	2.4	4.2	4.2	8.1	5.4
2022/6	4.9	4.9	5.0	2.3	5.0	4.4	4.1	4.7	6.2	4.3	6.0
2022/7	4.0	3.8	4.3	2.7	5.3	4.3	3.1	3.9	3.6	3.6	6.3

자료: 고용노동부

<표 4> 산업별 임금상승률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단위: %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2020	-0.9 [-0.7]	3.4 [2.7]	1.0 [1.5]	1.1 [1.6]	-3.0 [0.2]	3.1 [3.4]	4.9 [4.6]
2021	6.2 [6.2]	3.8 [2.4]	3.9 [3.7]	7.6 [7.5]	1.4 [1.4]	4.0 [4.0]	6.4 [6.7]
2021Q3	6.4 [6.5]	4.1 [2.7]	4.1 [3.9]	7.2 [7.1]	1.5 [1.0]	3.3 [3.2]	5.6 [6.1]
2021Q4	7.2 [7.2]	5.4 [4.8]	4.2 [4.0]	11.2 [11.2]	5.8 [4.0]	4.4 [4.4]	3.5 [4.5]
2022Q1	10.9 [10.8]	6.2 [4.3]	6.2 [6.1]	6.5 [6.5]	6.0 [4.0]	3.8 [3.6]	11.4 [11.6]
2022Q2	5.0 [4.8]	4.0 [4.1]	5.2 [5.2]	5.0 [5.1]	8.0 [6.2]	4.6 [4.5]	0.8 [1.1]
2021/8	4.8 [4.8]	5.0 [3.7]	4.8 [4.7]	4.1 [4.1]	0.2 [0.1]	3.9 [3.8]	0.7 [1.3]
2021/9	4.0 [4.0]	3.2 [1.9]	2.6 [2.3]	8.7 [8.7]	2.7 [1.8]	1.8 [1.9]	7.0 [7.7]
2021/10	4.6 [4.7]	4.8 [4.2]	3.8 [3.7]	5.9 [6.1]	2.4 [1.2]	2.0 [2.2]	2.7 [3.4]
2021/11	3.8 [3.9]	5.2 [4.9]	4.0 [3.9]	4.0 [4.2]	4.5 [2.8]	3.5 [3.6]	3.8 [5.2]
2021/12	11.9 [11.9]	6.1 [5.1]	4.8 [4.4]	21.3 [21.1]	10.5 [7.9]	7.1 [7.0]	4.0 [4.7]
2022/1	32.2 [32.0]	18.5 [12.6]	16.4 [15.7]	13.0 [13.0]	10.0 [7.1]	28.5 [28.2]	35.4 [35.7]
2022/2	-9.2 [-9.1]	-5.3 [-4.3]	-6.2 [-6.0]	-4.0 [-4.0]	1.5 [0.1]	-9.2 [-9.2]	-11.3 [-11.3]
2022/3	8.0 [8.1]	6.5 [4.7]	9.2 [9.2]	11.1 [11.1]	6.4 [4.7]	-6.1 [-6.1]	12.3 [12.5]
2022/4	1.9 [1.8]	4.3 [3.9]	3.7 [3.8]	4.1 [4.3]	6.3 [4.4]	4.3 [4.1]	-4.9 [-4.6]
2022/5	7.8 [7.4]	3.5 [3.8]	5.1 [5.2]	7.6 [7.6]	8.4 [6.7]	4.9 [4.8]	4.8 [5.1]
2022/6	5.5 [5.3]	4.2 [4.8]	6.7 [6.6]	3.5 [3.6]	9.2 [7.6]	4.6 [4.5]	3.1 [3.3]
2022/7	3.7 [3.5]	4.5 [4.4]	6.3 [6.1]	5.4 [5.4]	9.2 [7.2]	3.9 [3.7]	-2.0 [-1.8]

주: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나타냈으며 []는 전체근로자의 임금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다음으로 산업별로 나누어 임금상승률을 살펴보자. <표 4>에는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산업별 임금상승률을 보여주며 [] 안에는 전체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나타내었다. 7월 전년동월대비 임금상승률에서 산업별 이질성을 관측할 수 있다. 7월 숙박 및 음식점업(9.2%), 협회 및 단체수리업(7.5%),

부동산업(7.1%)은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도매 및 소매업(6.3%), 운수 및 창고업(5.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4.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4.6%), 건설업(4.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1%), 정보통신업(3.9%), 제조업(3.7%), 교육



<표 4> 산업별 임금상승률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계속)

단위: %

	부동산업	전문, 과학, 서비스업	사업시설 및 지원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예술 및 스포츠	협회 및 단체수리업
2020	3.2 [3.4]	-0.3 [-0.6]	2.5 [3.4]	-6.1 [-3.1]	-0.4 [-0.6]	0.7 [1.9]	0.0 [1.8]
2021	3.6 [3.7]	4.4 [4.8]	3.6 [3.4]	0.0 [-0.3]	2.6 [2.5]	5.5 [4.2]	4.1 [5.4]
2021Q3	0.5 [0.7]	7.8 [8.1]	4.7 [4.3]	0.5 [0.2]	3.5 [3.4]	5.8 [3.7]	4.5 [5.2]
2021Q4	5.3 [5.5]	4.4 [5.8]	3.1 [2.8]	0.4 [0.0]	2.9 [2.6]	5.9 [5.3]	3.1 [4.7]
2022Q1	8.0 [7.8]	9.0 [8.8]	4.7 [4.2]	2.7 [2.4]	4.3 [4.1]	4.8 [4.2]	5.0 [5.3]
2022Q2	3.3 [3.2]	5.2 [5.0]	4.4 [3.9]	1.5 [1.1]	3.7 [3.6]	1.4 [1.8]	4.4 [4.2]
2021/8	2.5 [2.6]	7.6 [7.4]	3.8 [3.6]	-0.2 [-0.5]	2.9 [2.7]	9.5 [7.5]	5.5 [6.2]
2021/9	4.9 [5.2]	2.4 [3.5]	5.5 [4.9]	1.2 [0.8]	4.5 [4.5]	5.5 [3.3]	2.9 [3.7]
2021/10	4.1 [4.3]	1.1 [2.5]	2.4 [2.1]	0.1 [-0.3]	2.4 [2.3]	9.8 [9.2]	2.6 [4.4]
2021/11	5.7 [5.9]	4.3 [5.7]	2.6 [2.6]	0.4 [0.3]	2.4 [2.0]	4.5 [3.7]	3.1 [5.0]
2021/12	6.1 [6.1]	6.8 [8.1]	4.2 [3.6]	0.6 [-0.1]	3.9 [3.5]	2.4 [1.9]	3.4 [4.6]
2022/1	14.1 [14.0]	24.5 [24.1]	12.4 [11.8]	15.4 [15.2]	11.6 [11.4]	18.1 [14.7]	14.5 [14.8]
2022/2	1.6 [1.6]	-4.8 [-4.9]	-2.4 [-2.4]	-11.3 [-11.2]	-2.6 [-2.8]	-3.2 [-3.3]	-2.4 [-1.9]
2022/3	8.8 [8.5]	8.6 [8.5]	4.3 [3.5]	4.7 [3.8]	4.2 [4.0]	0.5 [1.6]	2.9 [3.1]
2022/4	5.5 [5.3]	3.8 [3.6]	4.5 [3.9]	0.0 [-0.3]	4.4 [4.1]	0.1 [0.4]	4.7 [4.4]
2022/5	0.9 [0.8]	5.1 [4.9]	3.6 [3.0]	2.3 [1.7]	3.2 [3.2]	1.1 [1.4]	4.8 [4.9]
2022/6	3.6 [3.4]	6.6 [6.4]	5.2 [4.7]	2.1 [1.9]	3.5 [3.5]	3.2 [3.5]	3.7 [3.3]
2022/7	7.1 [6.8]	4.7 [4.5]	4.6 [3.8]	3.7 [3.3]	4.1 [3.9]	-0.6 [-0.6]	7.5 [7.1]

주: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나타냈으며 []는 전체근로자의 임금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서비스업(3.7%)을 기록하여 명목임금은 상승했으나 실질임금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 및 보험업은 -2.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0.6%를 기록하여 명목임금조차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임금상승률에서 관측된 이질성은 산업별 회복속도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숙박 및 음식점점은 2020년 -3.0%를 기록하여 교육서비스업(-6.1%) 다음으로 임금상승률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1년에는 숙박 및 음식점

점 1.4%, 교육서비스업 0.0%로 다른 산업에 비해 임금상승률이 낮게 나타났다. 최근 거리두기 해제 등에 따라 숙박 및 음식점업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6.0%, 8.0%의 임금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교육서비스업은 올해 1분기 2.7%, 2분기 1.5%를 기록하여 7월까지도 아직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물-물가상승률 간의 연쇄상승 악순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뢰성있는 물가상승률 및 임금상승률 전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VI. 나가며

본 고에서는 지난 1년 간의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다. 취업자 수와 경제활동인구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인구의 변화는 만 15세 인구의 변화 요인보다는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라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남성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남성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수는 제조업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수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주요국의 경기침체 가능성과 수출 악화 가능성 등은 전망경로 상·하방리스크로 잠재해 있다. 명목임금상승률은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나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 실질임금상승률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7월 명목임금상승률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양(+)의 수치를 보이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 협회 및 단체수리업, 부동산업을 제외하고는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이다.

본 고에서는 노동시장 통계수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간단히 기술하였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예컨대, 임금상승



참고문헌

- 김지연. 2021. "코로나19 고용충격의 특이성: 여성 고용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21-10.
- 송상운·배기원. 2022. "최근 취업자수 증가에 대한 평가." BOK 이슈노트 No. 2022-30.
- 오삼일·이종하. 2021. "코로나19와 여성고용: 팬데믹 vs 일반적인 경기침체 비교를 중심으로." BOK 이슈노트 No. 2021-08.
- 황수빈·이종하. 2022.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요인 분석: 경제위기별 비교를 중심으로." BOK 이슈노트 No. 2022-05.

국민연금 관련 통계(2022년 6월말 기준)

1) 연도별 가입자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연도별	총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계	농어촌	도시		
'88.12	4,432,695	58,583	4,431,039	-	-	-	1,370	286
'92.12	5,021,159	120,374	4,977,441	-	-	-	32,238	11,480
'95.12	7,496,623	152,463	5,541,966	1,890,187	1,890,187	-	48,710	15,760
'96.12	7,829,353	164,205	5,677,631	2,085,568	2,085,568	-	50,514	15,640
'99.12	16,261,889	186,106	5,238,149	10,822,302	2,083,150	8,739,152	32,868	168,570
'02.12	16,498,932	287,092	6,288,014	10,004,789	2,007,196	7,997,593	26,899	179,230
'03.12	17,181,778	423,032	6,958,794	9,964,234	2,062,011	7,902,223	23,983	234,767
'04.12	17,070,217	573,727	7,580,649	9,412,566	2,009,142	7,403,424	21,752	55,250
'05.12	17,124,449	646,805	7,950,493	9,123,675	1,969,017	7,154,658	26,568	23,713
'06.12	17,739,939	773,862	8,604,823	9,086,368	1,972,784	7,113,584	26,991	21,757
'07.12	18,266,742	856,178	9,149,209	9,063,143	1,976,585	7,086,558	27,242	27,148
'08.12	18,335,409	921,597	9,493,444	8,781,483	1,940,510	6,840,973	27,614	32,868
'09.12	18,623,845	979,861	9,866,681	8,679,861	1,925,023	6,754,838	36,368	40,935
'10.12	19,228,875	1,031,358	10,414,780	8,674,492	1,951,867	6,722,625	90,222	49,381
'11.12	19,885,911	1,103,570	10,976,501	8,675,430	1,986,631	6,688,799	171,134	62,846
'12.12	20,329,060	1,196,427	11,464,198	8,568,396	1,956,215	6,612,181	207,890	88,576
'13.12	20,744,780	1,290,557	11,935,759	8,514,434	1,962,071	6,552,363	177,569	117,018
'14.12	21,125,135	1,389,472	12,309,856	8,444,710	1,972,393	6,472,317	202,536	168,033
'15.12	21,568,354	1,537,250	12,805,852	8,302,809	1,949,757	6,353,052	240,582	219,111
'16.12	21,832,524	1,661,502	13,192,436	8,060,199	1,881,248	6,178,951	296,757	283,132
'17.12	21,824,172	1,760,279	13,459,240	7,691,917	1,787,649	5,904,268	327,723	345,292
'18.12	22,313,869	1,860,527	13,817,963	7,694,885	1,769,845	5,925,040	330,422	470,599
'19.12	22,216,229	1,949,286	14,157,574	7,232,063	1,651,896	5,580,167	328,727	526,557
'20.12	22,107,028	2,037,009	14,320,025	6,898,118	1,570,974	5,327,144	362,328	526,557
'21.12	22,347,586	2,137,619	14,580,825	6,827,009	1,554,241	5,272,768	396,632	543,120
'22.6	22,293,775	2,188,008	14,751,338	6,629,007	1,502,060	5,126,947	389,830	523,600



2) 가입종별·성별 가입자 현황

(단위: 명, %)

성별 \ 구분	계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인원	비율				
계	22,293,775	100	14,751,338	6,629,007	389,830	523,600
남자	12,125,031	54.4	8,481,086	3,417,919	65,122	160,904
여자	10,168,744	45.6	6,270,252	3,211,088	324,708	362,696

3) 지역가입자 총괄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도시	농어촌
계		6,629,007	5,126,947	1,502,060
소득신고	인원	3,613,632	2,745,222	868,410
	비율	100	76.0	24.0
납부예외	인원	3,015,375	2,381,725	633,650
	비율	100	79.0	21.0

4) 징수율 현황

(단위: %)

구분	계	사업장	지역가입자			
			지역계	도시	농어촌	
월수	당월	78.2	87.7	67.8	67.2	69.5
	누적	96.9	98.7	96.0	95.5	97.0
금액	당월	92.8	95.3	68.0	68.3	67.2
	누적	99.0	99.6	94.1	94.0	94.5

※ 당월 징수율은 당월 고지 대비 징수 현황이며, 누적징수율을 누적고지 대비 징수 현황임
 당월 및 누적 징수율은 납부기한(매 익 월 10일) 기준임

5) 연도별 급여 종별 급여지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해당년도 누계))

구분	계	연금				일시금				
		소계	노령	장애	유족	소계	장애	반환	사망	
총계	수급자	17,994,182	7,082,387	5,838,571	191,390	1,052,426	10,911,795	86,519	10,597,817	227,459
	금액	270,996,569	246,733,929	213,298,223	6,219,006	27,216,700	24,262,640	880,409	22,679,681	702,550
2022.6	수급자	6,204,415	6,098,891	5,110,700	72,834	915,357	105,524	1,339	96,442	7,743
	금액	16,441,318	15,879,324	14,270,323	195,162	1,413,839	561,994	24,919	499,310	37,765
2021	수급자	6,070,124	5,864,373	4,894,452	77,726	892,195	205,751	2,897	189,205	13,649
	금액	29,136,791	28,080,664	25,083,266	384,944	2,612,454	1,056,127	49,746	940,751	65,630
2020	수급자	5,588,154	5,388,022	4,468,126	78,079	841,817	200,132	2,904	184,342	12,886
	금액	25,654,071	24,628,326	21,816,877	383,031	2,428,418	1,025,745	48,366	919,192	58,187
2019	수급자	5,163,110	4,961,143	4,090,497	77,872	792,774	201,967	3,028	186,921	12,018
	금액	22,764,343	21,711,564	19,069,258	378,720	2,263,586	1,052,780	48,847	953,068	50,865
2018	수급자	4,769,288	4,596,690	3,778,824	75,734	742,132	172,598	3,072	157,867	11,659
	금액	20,752,686	19,800,820	17,384,044	359,198	2,057,577	951,866	46,669	859,082	46,113
2017	수급자	4,692,847	4,475,143	3,706,516	75,486	693,141	217,704	2,916	201,278	13,510
	금액	19,083,886	18,155,323	15,931,616	349,017	1,874,690	928,563	42,131	842,325	44,107
2016	수급자	4,362,254	4,135,292	3,412,350	75,497	647,445	226,962	2,577	207,751	16,634
	금액	17,068,159	16,107,103	14,047,956	337,333	1,721,814	961,056	36,048	874,649	50,359
2015	수급자	4,028,671	3,832,188	3,151,349	75,688	605,151	196,483	2,597	179,937	13,949
	금액	15,184,010	14,342,683	12,415,111	336,568	1,591,004	841,327	35,522	759,704	46,101
2014	수급자	3,748,130	3,586,805	2,947,422	75,387	563,996	161,325	2,651	146,353	12,321
	금액	13,779,943	13,087,468	11,295,917	331,604	1,459,947	692,475	34,471	618,469	39,535
2013	수급자	3,633,770	3,440,693	2,840,660	75,041	524,992	193,077	2,993	179,440	10,644
	금액	13,112,752	12,361,973	10,705,594	326,168	1,330,211	750,779	38,737	679,145	32,897
2012	수급자	3,499,522	3,310,211	2,748,455	75,934	485,822	189,311	2,862	175,716	10,733
	금액	11,550,754	10,837,244	9,327,087	314,463	1,195,694	713,510	34,654	648,045	30,811
2011	수급자	3,166,983	3,015,244	2,489,614	75,895	449,735	151,739	3,480	136,628	11,631
	금액	9,819,296	9,273,039	7,905,180	305,547	1,062,312	546,257	41,919	475,051	29,287
2010	수급자	2,975,336	2,820,649	2,330,128	76,280	414,241	154,687	3,447	141,347	9,893
	금액	8,635,467	8,107,420	6,861,876	296,305	949,239	528,047	37,299	465,123	25,625
2009	수급자	2,770,344	2,602,630	2,149,168	74,535	378,927	167,714	3,836	154,119	9,759
	금액	7,471,934	6,946,490	5,814,825	287,016	844,649	525,444	40,940	460,476	24,028
2008	수급자	2,517,579	2,366,626	1,949,867	72,166	344,593	150,953	4,902	137,654	8,397
	금액	6,180,804	5,764,986	4,765,528	268,100	731,358	415,818	47,921	348,026	19,871
2007	수급자	2,244,477	2,110,519	1,731,560	67,091	311,868	133,958	5,167	121,200	7,591
	금액	5,182,611	4,748,988	3,857,709	245,878	645,401	433,623	48,325	368,374	16,924
2006	수급자	1,985,502	1,858,769	1,517,649	61,762	279,358	126,733	4,898	115,394	6,441
	금액	4,360,239	3,899,369	3,103,161	225,607	570,601	460,870	44,239	400,674	15,957
2005	수급자	1,757,674	1,651,681	1,349,626	54,467	247,588	105,993	4,147	96,078	5,768
	금액	3,584,901	3,210,044	2,531,536	193,931	484,577	374,857	35,713	324,885	14,259

※“총계”란의 수급자(노령, 장애, 유족연금)의 수는 '88년~현재까지의 수급자이었던 자(소멸자)를 포함



6) 급여종별 수급자 현황(당월 수급자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노령연금						장애	유족
		소계	가입기간 20년~	가입기간 10~19년	조기	특례	분할		
수급자	6,044,936	5,069,353	849,674	2,183,741	729,587	1,245,415	1,245,415	68,874	906,709
(%)	100.0	83.9	14.1	36.1	12.1	20.6	20.6	1.1	15.0

※2018년 12월 이후 노령연금 금액의 세부내역은 내부통계추출방식 변경으로 제공되지 않음

7) 연령별 급여수급자 현황(당월 수급자 기준)

(단위 : 건)

구분		합계	20세 미만	20세 ~ 29세	30세 ~ 39세	40세 ~ 49세	50세 ~ 59세	60세 ~ 64세	65세 ~ 69세	70세 ~ 74세	75세 ~ 79세	80세 이상	
계	계	6,044,936	7,323	15,366	8,139	41,000	154,462	1,480,622	1,717,196	1,162,801	841,544	616,483	
	남자	3,326,304	3,632	8,010	2,830	12,678	43,036	815,100	988,001	684,377	469,851	298,789	
	여자	2,718,632	3,691	7,356	5,309	28,322	111,426	665,522	729,195	478,424	371,693	317,694	
노령	소계	소계	5,069,353	0	0	0	18,102	1,348,387	1,561,382	989,811	689,237	462,434	
		남자	3,191,642	0	0	0	12,349	797,044	973,423	669,948	457,644	281,234	
		여자	1,877,711	0	0	0	5,753	551,343	587,959	319,863	231,593	181,200	
	가입 기간 20년~	소계	849,674	0	0	0	264	447,106	300,338	101,806	159	1	
		남자	729,156	0	0	0	264	367,067	268,384	93,297	143	1	
		여자	120,518	0	0	0	0	80,039	31,954	8,509	16	0	
	가입 기간 10~ 19년	소계	2,183,741	0	0	0	72	622,058	921,215	514,849	125,506	41	
		남자	1,177,733	0	0	0	72	255,471	480,973	337,662	103,522	33	
		여자	1,006,008	0	0	0	0	366,587	440,242	177,187	21,984	8	
	조기	소계	729,587	0	0	0	17,766	258,965	312,813	91,146	38,371	10,526	
		남자	503,602	0	0	0	12,013	173,432	220,814	62,868	26,619	7,856	
		여자	225,985	0	0	0	5,753	85,533	91,999	28,278	11,752	2,670	
	특례	소계	1,245,415	0	0	0	0	217	563	271,980	521,770	450,885	
		남자	774,242	0	0	0	0	99	358	174,188	326,621	272,976	
		여자	471,173	0	0	0	0	118	205	97,792	195,149	177,909	
	분할	소계	60,936	0	0	0	0	20,041	26,453	10,030	3,431	981	
		남자	6,909	0	0	0	0	975	2,894	1,933	739	368	
		여자	54,027	0	0	0	0	19,066	23,559	8,097	2,692	613	
	장애	소계	68,874	0	234	2,769	11,190	24,995	11,880	6,697	6,059	3,609	1,441
		남자	53,687	0	156	1,759	8,178	20,455	9,500	5,168	4,678	2,775	1,018
		여자	15,187	0	78	1,010	3,012	4,540	2,380	1,529	1,381	834	423
	유족	소계	906,709	7,323	15,132	5,370	29,810	111,365	120,355	149,117	166,931	148,698	152,608
		남자	80,975	3,632	7,854	1,071	4,500	10,232	8,556	9,410	9,751	9,432	16,537
		여자	825,734	3,691	7,278	4,299	25,310	101,133	111,799	139,707	157,180	139,266	136,071

8) 기금관리 현황(시가기준)

(단위: 억 원, %)

구분	'13.12	'14.12	'15.12	'16.12	'17.12.	'18.12.	'19.12.	'20.12.	'21.12.	'22.6.
조성	5,231,235	5,803,222	6,385,779	7,022,056	7,852,750	8,237,908	9,450,964	10,685,295	12,133,963	11,641,591
(증감률)	10.25%	10.93%	10.04%	9.96%	11.83%	4.90%	14.73%	13.06%	13.6%	-4.1
연금 보험료	3,329,186	3,669,961	4,034,222	4,424,580	4,842,429	5,286,164	5,764,165	6,276,336	6,811,739	7,085,761
운용수익	1,894,080	2,124,407	2,341,820	2,587,260	2,999,390	2,940,529	3,674,776	4,396,213	5,308,265	4,541,732
기타	7,968	8,855	9,737	10,216	10,931	11,215	12,024	12,745	13,960	-14,099
지출	961,689	1,104,993	1,262,538	1,439,065	1,636,139	1,850,097	2,084,426	2,348,019	2,646,770	2,815,049
(증감률)	16.53%	14.90%	14.26%	13.98%	13.69%	13.08%	12.67%	12.65%	12.8%	6.4
연금급여 지급	911,314	1,049,113	1,200,953	1,371,635	1,562,474	1,770,000	1,997,644	2,254,185	2,545,552	2,710,201
운영비 등	50,376	55,880	61,585	67,430	73,665	80,097	86,782	93,834	101,217	104,848
운용	4,269,545	4,698,229	5,123,241	5,582,991	6,216,611	6,387,811	7,366,538	8,337,276	9,487,194	8,826,542
(증감률)	8.93%	10.04%	9.05%	8.97%	11.35%	2.75%	15.32%	13.18%	13.8%	-7.0
공공부문	-	-	-	-	-	-	-	-	-	-
복지부문	1,249	1,264	1,362	1,396	1,433	1,446	1,663	1,800	2,005	2,063
금융부문	4,264,473	4,692,534	5,116,983	5,576,819	6,210,372	6,382,168	7,360,790	8,331,384	9,481,060	8,810,784
기타부문	3,823	4,431	4,896	4,777	4,806	4,196	4,085	4,092	4,128	13,695

※해당월 말일 기준의 누계실적이며, “증감률”은 전년도 12월말 기준대비 현금주의로 작성됨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2018년 이후 시가 기준을 수록하여, 이전 연금포럼호와의 자료 연계성이 존재하지 않음

연금포럼 VOL. 1 (창간호)

권두언

02 연금제도 발전을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도록 | 인경석

기획주제

04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 | 노인철

16 2001년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방향 | 공방환

정책분석

27 국민연금 장기재정계획의 과제 | 김순옥

36 공적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국제기구의 입장 비교 | 윤석명

50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체계 개선방안 | 이용하

62 국민연금기금과 금융시장 | 박무환

73 2000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주요내용 | 노연홍

국내외 연금동향

84 한·미 사회보장협정 발효에 즈음하여 | 김혜진

88 독일 연금개혁안 | 이용천

연금포럼 VOL. 2

권두언

02 명실상부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 | 정경배

기획주제

04 운용규모 100조원 시대의 기금운용 방향 | 김선영

정책분석

13 2000년 국민연금 금융자산 운용실적평가와 시사점 | 정문경

21 공적기금의 운용과 위탁투자 | 오규택, 신성환

34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 한성윤

49 국민연금기금의 현·선문연계 투자 | 임병진

60 국민연금 급여간 병급조정 개선방안 | 김성숙

74 경제활동인구의 추이와 국민연금 가입자 전망에 대한 시사점 | 최기홍

국내외 연금동향

88 부시행정부의 공적연금 개혁전망 | 주은선

95 2001년 상반기 금융시장 동향 | 김시오

부록

101 국민연금 통계(2001년 5월말)

연금포럼 VOL. 3

권두언

02 21세기의 국민연금 과제 | 민재성

기획주제

04 최근 EU 국가들의 연금개혁 방향과 시사점 | 노인철

정책분석

15 OECD 연금개혁안 평가 | 윤석명

22 해외 연금 자산운용사를 통해 살펴본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방향 | 신성환

33 급여수준과 보험료율과의 관계 | 박성민

45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노령연금 수급자 추계 방안 | 박상현

57 추계모형 구축을 위한 유족연금 수급자 분석 | 신경혜

66 평균-분산-VaR방법에 의한 최적포트폴리오 | 김경응

국내외 연금동향

72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조변화(1990년대를 중심으로) | 조준행

82 최근 금리하향화 추세의 주요 원인과 전망 | 김대철

부록

89 국민연금 통계(2001년 8월말 기준)

연금포럼 VOL. 4

권두언

02 장기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 | 이해경

특별기고

04 전국민연금으로 복지국가 길 열어 | 김원길

기획주제

09 21세기의 연금문제와 정책과제 | 민재성

19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 | 노인철

정책분석

31 표준소득월액등급체계 조정방향 | 김성숙

43 보험료면제제도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 이용하

53 1990년대 이태리 연금개혁의 주요내용 및 개혁평가 | 윤석명

66 2001년 상반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성과분석 | 정문경

77 국민연금기금 주식포트폴리오의 KOSPI200 선물을 이용한 헤지전략 | 임병진

국내외 연금동향

84 캐나다 연금제도 및 재정계산 | 강성호

93 선진기업 지배구조하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 | 원종현

부록

104 국민연금 통계(2001년 11월말 기준)

연금포럼 VOL. 5

권두언

02 2003년 재정계산을 앞두고 | 인경석

기획주제

04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 실행방향 | 윤석명

18 국민연금 재정계산, 그 모델사 | 김순옥

정책분석

30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 2001 | 김순옥

39 가입자의 추계모형과 주요결과 | 최기홍

49 가입기간별 가입자 추계모형 | 박성민

60 노령연금 수급자 및 급여액 추계모형 | 박상현

72 장애·유족연금 수급자 추계모형 | 신경혜

국내외 연금동향

82 공적연금의 수리평가기준 | 신화연

90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및 탈퇴빈도 분석 | 한정림

부록

99 국민연금 통계(2002년 2월말 기준)

연금포럼 VOL. 6

권두언

02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투자정책위원회를 마무리하며 | 정운찬

정책분석

04 국민연금기금운용철학 및 중장기 자산배분 | 신성환

20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요성 | 김우찬

29 국민연금기금운용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 | 김연명

39 2001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 평가 분석 | 정문경

54 시장금리와 거시경제변수간 장기적 관계 | 박무환

63 국채선물(KTB)을 이용한 국민연금기금 채권포트폴리오 해지에 관한 소고 | 임병진

국내외 연금동향

74 최근 동남아시아 연금기금의 운용추세 | 김대철

81 성과평가 공시 기준의 변화(2002년 새로이 개정된 AIMR-PPS를 중심으로) | 원종현

89 미국 OASDI 제도 및 재정전망 | 강성호

부록

97 국민연금 통계(2002년 5월말 기준)

연금포럼 VOL. 7

권두언

02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 노인철

정책분석

04 국민연금 급여제도의 변천과정과 개선방향 |

- 17 국민연금 징수업무의 타 기관 이관방안에 대한 고찰 | 이용하
- 28 덴마크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 윤석명
- 39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성과평가 개선방안 | 정문경, 김시오
- 51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소비실태 및 적정소득대체율분석 | 원동욱
- 65 공무원연금제도의 이상과 과제 | 최재식

국내외 연금동향

- 79 사회보장의 역할과 세계적 동향 | 이용천
- 85 일본판 401K(확장각출형 기업연금제도)의 도입과 그 전망 | 원종현

부록

- 97 국민연금 통계(2002년 9월말 기준)

연금포럼 VOL. 8

권두언

- 02 癸未年새아침, 先進福祉社會를 향하여 | 김성호

정책분석

- 04 인구고령화, 제도의 성숙과 국민연금재정계획 | 김순옥
- 17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미가입자 유형분류 | 박성민
- 28 2003년 노령연금 수급자 및 급여액 추계방법 | 박상현
- 43 노동생명표를 이용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정 | 신경혜
- 53 Aaron의 조건과 부과방식의 수익률 | 최기홍

국내외 연금동향

- 59 공·사연금의 부채 평가 방법 | 조준행
- 70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수익률 분석 | 한정림
- 78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범위 확대적용에 따른 가입대상자 의식조사 | 강성호

부록

- 89 국민연금 통계(2002년 11월말 기준)

연금포럼 VOL. 9

권두언

- 02 재정계산제도 첫 시행을 맞이하며 | 김상균

기획주제

- 13 분할연금제도의 개선방안 | 권문일
- 21 연금분할제도의 향후 방향 | 이정우
- 20 국민연금 급여간 병급조정방식 변경 요성 검토 | 김성숙
- 32 조기노령연금 급여액 감액율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 | 김순옥
- 41 통일시 남북한 연금제도 통합방안 | 이용하

국내외 연금동향

- 49 선진국의 연금재정 안정화 노력 | 원종현

부록

56 국민연금 통계(2003년 2월말 기준)

연금포럼 VOL. 10

권두언

02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 | 조국준

정책분석

04 국민연금 개혁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 강동수

13 공적연금의 자산운용 국제비교 | 한성운

25 경제부문별 금융거래형태 전망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 박무환

39 2002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 | 정문경

50 국민연금 채권부문 벤치마크에 대한 연구 | 홍우선

61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의 모닝스타 평가방법 적용 | 최태호

73 국민연금기금의 실물투자방안 | 임병진

국내외 연금동향

87 미국 공적 연기금의 운용사 분석 | 김시오

97 장수사회에서의 사회보장 | 이남철

부록

104 국민연금 통계(2003년 4월말 기준)

연금포럼 VOL. 11

권두언

02 노년 경제학(Economics of Aging)의 등장 | 노인철

기획주제

04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현실과 발전방향 | 문춘걸

10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대한 오해와 논란, 그리고 개선방안 | 정홍원

15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의 인구전망 | 이삼식

정책분석

27 우리나라의 장래(2000~2050)경제활동인구변동의 요인분해 | 최기홍

30 공적연금에서의 소득재평가 방법에 대한 국제비교분석 | 김순옥

45 2004년 노령연금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 | 박상현

56 부부가 국민연금 가입자인 인원의 규모 및 영향 | 신경혜

64 출산율이 높아지면 보험료율이 낮아진다 | 박성민

국내외 연금동향

72 일본의 재정투융자 개혁방향에 대한 보고서(자금운용심의회, 197.11) | 이용천

78 선진국 공적연금의 미적립 부채(Unfunded Liability)산정 방법 비교 | 조준행

83 인구 고령화현상이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 신화연

부록

99 국민연금 통계(2003년 7월말 기준)

연금포럼 VOL. 12

권두언

02 국민연금의 형성배경과 특성 | 민재성

기획주제

04 2003년 국민연금 재정안정대책 수립의 당위성 | 박경호

11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시급성과 향후 과제 | 안중범

정책분석

17 수급권 강화와 급여수준 향상방안에 대한 고찰 | 김성숙

23 성직자 노후보장 실태와 정책방향 | 이용하

32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화 방안 모색에 관한 소고 | 오근식

38 점진적 퇴직을 위한 연금제도의 개선방안 | 이정우

45 국민연금법 개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 김상호

국내외 연금동향

53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과정에서의 시사점 | 김대철

63 도시가계패널자료를 이용한 노후소득 및 소비실태 파악 | 강성호

70 연금의 적절성 및 지속가능성(adequate and sustainable pensions) | 이재수

부록

75 국민연금 통계(2003년 11월말 기준)

연금포럼 VOL. 13

권두언

0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대책 마련의 요성 | 장석준

기획주제

04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문제 | 이용하

11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과제 | 왕진호

21 경로연금의 현황과 과제 | 조진희

정책분석

27 기 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한 소득보장체계의 다원화와 사각지대해소방안 | 원종욱

35 은퇴이후 노년소득보장,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 노인철

43 한국과 미국의 소득유형별 불평등유발효과 비교 연구 | 임병인

53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의 재정수지표 작성방법에 대해서 | 김순옥

64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과 탈퇴횟수 추정 | 박성민

73 국민연금 장기재정수지표의 새로운 불변화 방안 | 최기홍

82 국민연금 급여관리체계의 개선방안 | 김성숙

국내외 연금동향

90 부양의식 변화 및 노후준비수단의 변화 추이분석 | 강성호

- 96 재정평가지표의 활용:수리적 수지차(Actuarial Balance) | 조준행
부록
103 국민연금 통계(2004년 1월말 기준)

연금포럼 VOL. 14

권두언

- 02 국민연금제도 개편방향 | 이상용

기획주제

- 04 국민연금 급여간 병급조정방식 변경 요성 검토 | 김성숙
10 의무가입과 강제징수의 요성 | 이용하

정책분석

- 18 거시경제변수 장기전망에 대한 소고 | 박무환
28 2005년도 국민연금 수급자 전망 | 신경혜
37 국민연금기금의 SOC 투자방안 | 한덕희
48 2003년 국민연금 주식부문 성과평가 분석 | 김군호
59 2003년 국민연금 채권부문 성과평가 분석 | 남길남

국내외 연금동향

- 67 연금추계모형별 가입기간산정 방법비교 | 신화연
74 2004년 일본연금개혁의 시사점 | 조재문

부록

- 84 국민연금 통계(2004년 5월말 기준)
89 연금포럼 발간목록

연금포럼 VOL. 15

권두언

- 02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선진화 노력 | 이필상

정책분석

- 04 회사채투자자 보호제도에 대한 새 제도 | 주상룡
12 기업연금회계의 기 개념 | 박일력
20 재정추계모형에서 연금액 추계방법의 개선을 위한 제안 | 김순옥
29 연금기금의 재정안정이 경제정책 목표변수에 미치는 영향 | 박무환
40 노후의 경제적 위험과 개인연금의 한계 | 최기홍
48 국민연금기금의 바람직한 투자방향 | 고흥수, 김근수, 박창욱

국내외 연금동향

- 59 고령사회에 대비한 주요 EU국가들의 연금대처전략 개관 | 김대철
67 아르헨티나 연금제도개혁의 교훈 | 김문길

부록

- 70 국민연금 통계(2004년 7월말 기준)

연금포럼 VOL. 16

권두언

02 기본원칙에 충실한 기금운용 | 김근태

기획주제

04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자본시장 파급효과 분석 | 이창용

10 국민연금기금의 부동산 및 SOC 투자 방안 | 이현석

20 공공목적의 투자 방안 | 김태일 26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방안 | 박상수

33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장기 투자정책방향 | 조진완

41 국민연금기금의 적정 외부위탁투자 비중에 관한 연구 | 박태영

정책분석

47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급체계의 개선 방향 | 정문경

54 2004년 일본의 재정재계산과 연금개혁 | 김순옥

61 국민연금과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수익률 비교 | 최기홍

70 크레딧(Credit)제도의 도입방안 검토 | 김수완

국내외 연금동향

77 CalPERS의 적극적 투자운용 사례 | 원종현

부록

84 국민연금 통계(2004년 11월말 기준)

88 연금포럼 발간목록

연금포럼 VOL. 17

권두언

02 국민연금제도는 지금 당장 개선되어야 한다 | 김근태

기획주제

04 『국민연금 재정 전망과 발전방안』

05 국민연금개혁안의 비교평가 및 추진방향 | 문형표

13 장래 인구와 국민연금 재정 | 김순옥

19 토론 1 | 김동섭

23 토론 2 | 김용하

26 토론 3 | 나성린

28 토론 4 | 노인철

30 토론 5 | 박찬형

33 토론 6 | 배준호

정책분석

37 고령화의 비용,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부과방식 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방안 | 김수완

47 미국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한국에서의 시사점 | 윤석명

57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보완대책: 최저연금과 최저소득보장을 중심으로 | 김성숙

67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투자방안 | 오규택

국내외 연금동향

79 신 BIS협약(바젤II)의 주요내용과 그 영향 | 원중현

부록

87 국민연금 통계(2005년 1월말 기준)

91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현황(2005년 2월말 기준)

96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18

권두언

02 우리 공단의 변화와 혁신 | 김호식

기획주제

05 國民年金 신뢰구축을 위한 提言(1) | 민재성

13 국민연금 신뢰구축을 위한 제언(2) | 김상호

19 국민연금 신뢰구축을 위한 제언(3) | 이호성

23 국민연금 신뢰구축을 위한 제언(4) | 신성식

35 국민연금에 대한 낮은 신뢰의 실태와 원인 | 김성숙

44 국민연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 이용하

정책분석

52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정책서 수립방향 | 박태영

63 인플레이션예측인자로서 수요압력지표의 유용성 검증 | 박무환

72 기업신용위험 측정에 관한 연구 | 남재우

81 국민연금기금의 BTL 사업 참여방안 | 유상현

88 2004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분석 | 김시오

100 2005년 세계은행 연금보고서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윤석명

108 스웨덴 NDC연금의 연금화(annuitization)방식 | 김순옥

부록

116 국민연금 관련 통계(2005년 4월말 기준)

120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19

권두언

02 고령화시대 노후대책, 어떻게 해야 하나 | 노인철

기획주제

05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관하여 | 조기원

10 국민연금법안의 기본방향과 보완을 위한 제언 | 문형표

15 국민연금법 개정의 기본방향 및 보완을 위한 과제 | 권문일

정책분석

23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 개요 | 국민연금연구원 패널조사팀

- 36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구성 및 소득원별 빈곤제거효과분석
| 김수완, 조유미
- 46 외국 연금개혁과정에서 이해집단간 조정경험 사례 및 시사점 | 윤석명
- 55 국민연금기금과 주식시장발전간 인과관계 | 박무환
- 6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복지시설 투자방안 | 유상현

국내외 연금동향

- 72 일본 후생연금의 보수누적액 추계방법에 대하여 | 신화연
- 79 2006년 일본 후생연금보험 및 국민연금 적립금 관리운용체계의 개혁 | 박원웅

부록

- 90 국민연금 관련 통계(2005년 8월말 기준)
- 94 연금포럼(Pension Forum)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20

권두언

- 02 운용규모 150조원 시대의 국민연금기금 | 오성근

기획주제

- 05 자본시장발전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거시적 역할 | 박무환
- 15 국민연금기금 채권 신용위험관리 방안 | 박태영
- 24 국민연금기금이 추가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분석 | 남재우
- 34 국민연금기금의 Buyout 투자에 따른 법적 문제 | 유상현

정책분석

- 44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결과와 시사점 | 이용하, 강성호
- 52 국민연금 제도 및 재정분석관련 할인율의 선택에 대해서 | 김순옥
- 61 2005년도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 평가 | 정문경

부록

- 82 국민연금 관련 통계(2005년 11월말 기준)
- 86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21

권두언

- 02 국가의 백년대계:국민연금 | 유시민

정책분석

- 04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의 모색 | 양준모
- 11 분산분해를 이용한 연금기금과 주식시장발전간의 영향분석 | 박무환
- 20 인구고령화의 위험과 고정보험료(fixed contribution rate)방식 | 김순옥
- 29 연금개혁 논의의 방향에 대하여 | 이용하
- 39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체계에 대한 국제성과평가기준(GIPS)의 적용 | 정문경
- 46 국민연금 내부수익률의 민감도 분석 | 최기홍

연금포럼

Pension Forum

발간목차

56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전략적 자산배분 | 원종현

국내외 연금동향

68 대만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찰 및 시사점 | 김대철

79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 관점에서 보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수준 | 조준행

부록

86 국민연금 관련 통계(2006년 1월말 기준)

90 연금포럼(Pension Forum)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22

권두언

02 국민연금기금의 장기발전 | 김호식

기획주제

05 중기기금운용전략에 근거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 박태영

13 국민연금기금의 KOSPI200 옵션시장 활용방안 | 한덕희

23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확대 요성과 방향 | 온기선

27 2005년 국민연금기금 운용 성과의 계량적 분석 | 남재우

37 2005년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정성평가 | 원종현

051 국민연금기금 자산분배시 대체투자 고려효과 | 박원웅

정책분석

62 국민연금제도 개혁시 고려사항 | 전병목

70 가입자평균소득과 전산업임금간 장기적 관계분석 | 박무환

76 국민연금 재정평가와 추계방식에 대해서 | 김순옥

86 일본 재정재계산의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 최기홍

부록

82 국민연금 관련 통계(2006년 4월말 기준)

86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23

권두언

02 국민연금, 올해 안에 해결하자 | 최원영

기획주제

05 국민연금 개혁, 2008년 이후로 미뤄지나 | 배준호

14 고령사회와 공적연금제도·외국 연금개혁방향 중심으로 | 윤석명

정책분석

27 급여업무 및 수급자 관리의 개선방안 | 김성숙

34 국민연금 기여금 부과기준 변경 가능성에 대한 고찰 | 김시원

43 2001년 이후 독일 연금개혁의 정책과 효과,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 김원섭

51 외국 공적연금개혁에서 급여 자동조정장치 도입 동향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김수완, 김순옥

- 60 이해수준별 국민연금 신뢰도 분석의 필요성 | 강성호
- 73 국민연금의 보장성 급여에 대한 보험수리 분석 | 최기홍
- 82 인플레이션 위험을 반영한 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 원종현

부록

- 94 국민연금 관련 통계(2006년 8월말 기준)
- 98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24

권두언

- 02 우리에게 지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 | 백화중

기획주제

- 04 국민연금 개혁추진 현황과 쟁점 | 조기원
- 11 국민연금 신개정법의 의의와 향후 발전 방향의 모색 | 김원식
- 19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수행 방안 | 정홍원
- 29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그 보험료율의 근거와 기준점에 대해서 | 김순욱

정책분석

- 36 국민연금과 경제부문간의 연계구조에 대한 일 고찰 | 박무환
- 43 새로운 국민연금 가입자의 추계방법과 추계 결과 | 최기홍
- 54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현황과 전망 | 박성민
- 64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추계방법 | 신경혜

부록

- 94 국민연금 관련 통계(2006년 11월말 기준)
- 98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25

권두언

- 02 2008년 제2차 재정계산을 앞두고 | 노길상

기획주제

- 05 장기인구전망과 인구고령화 | 박경애
- 14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거시경제변수 장기전망 | 한진희
- 23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의 개선방향 | 이용하

정책분석

- 29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 2006 | 박성민
- 36 국민연금재정추계를 위한 주요 거시경제변수 중기전망 | 박무환
- 46 국민연금기금의 물가연동 채권 활용방안 | 박태영
- 55 국민연금 가입 및 기여 연수 추정:Markov chain 접근법 | 최기홍
- 65 개인연금의 순보험료산출 방법에 대한 보험수리적 분석 | 한정림
- 72 고령사회를 대비한 퇴직연금제·정년제의 발전 방안 | 이석구

부록

- 80 국민연금 관련 통계(2007년 2월말 기준)
- 84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26

권두언

- 02 국민연금기금 운용방향 | 오성근

기획주제

- 05 공적연금 기금운용 관리체계의 원칙 | 박태영
- 16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GiPS 도입 방향 | 정문경
- 25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의 정성적 분석 | 남재우
- 34 연금기금의 자산부채종합관리 목표 설정 방안 | 원종현
- 44 자본시장통합 후 금융투자상품 전망 및 연금의 투자 가능성 | 진익

정책분석

- 53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연금기금의 역할 | 박무환
- 62 각국의 공적연금 재정계산과 결과보고 | 김순옥
- 71 연금수급자 가구의 '필요(needs)'와 부양가족 연금 | 권혁진
- 80 공적연금이 경제에 미치는 이론적 파급경로에 대한 소고 | 최기홍

부록

- 87 국민연금 관련 통계(2007년 5월말 기준)
- 91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27

권두언

- 02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운용방향 | 한성신

기획주제

- 05 국민연금 재정안정의 장기 지속성과 경제파급효과에 관한 소고 | 양준모
- 13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와 거시경제:일반균형모형의 구축 | 허석균
- 22 거시경제 효과를 고려한 국민연금의 장기 기금운용 전략 | 박창균
- 29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이항용
- 37 국민연금의 주식투자가 국내기업의 경영행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위경우

정책분석

- 47 효율적인 기관투자자로서의 국민연금 기금평가 | 정문경
- 56 적립방식제도의 연금저축이 국민저축에 미치는 영향 | 박무환
- 66 노인기 보장제도의 유형과 특성 | 이용하
- 76 현 노년층의 소득현황 및 소득불평등실태 | 김경아

부록

- 87 국민연금 관련 통계(2007년 8월말 기준)

91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28

권두언

- 02 의미심장했던 2007년 | 김상균 기획주제
- 05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평가와 과제 | 문형표
- 16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소고 | 정호원
- 25 기초 노령연금 도입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 고득영

정책분석

- 33 국민연금의 이해수준에 따른 신뢰도 분석 | 백화중
- 47 World Bank와 ILO의 노령기 소득보장제도 모형의 발전 | 김원섭
- 56 명목확정기여(NDC)의 연금액과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의 비교 | 최기홍
- 65 여성의 노후 빈곤화 경향과 유족연금의 의미 | 강성호
- 78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계산 방식에 대한 검토 | 김대호

부록

- 89 국민연금 관련 통계(2007년 11월말 기준)
- 93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29

권두언

- 02 스무살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급여의 앞길 | 박용주

기획주제

- 05 소득대체율 국제비교에 관한 OECD 연구의 성과와 한계 | 이용하
- 18 재직자노령연금의 현황과 개선방안 | 김원섭
- 28 생애기간을 고려한 개별적 연금수급권 성별격차와 파생적 연금수급권의 역할 | 강성호
- 43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중복급여 현황과 문제점 | 권혁진

정책분석

- 55 국민연금재정추계를 위한 주요 거시경제변수 중기전망 | 박무환
- 64 국민연금의 급여산식 구조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최기홍
- 73 연금기금의 부채 할인을 산출에 대한 소고 | 원종현
- 82 사회조사 자료를 통한 생명표 작성 | 우해봉

부록

- 93 국민연금 관련 통계(2008년 2월말 기준)
- 97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30

권두언

- 02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투자다변화 | 오규택

기획주제

- 05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확대 및 위험관리 | 박영석, 강윤식
- 10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확대 필요성과 방안 | 신진영
- 25 국민연금기금 벤처조합의 수익률과 위험분석 | 정문경
- 32 국민연금 자산군별 운용비용 분석 및 그에 따른 시사점 검토 | 김대호
- 44 투자다변화 시대에 있어서 의결권 행사와 관리 | 이재현

정책분석

- 55 공적연금재정 장기추계를 위한 장기 거시경제 전망모형의 해외사 비교 및 시사점 | 박무환
- 66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성과와 수익요인분해의 시사점 | 남재우
- 75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정책에 대한 일반균형 시뮬레이션 | 최기홍

부록

- 86 국민연금 관련 통계(2008년 5월말 기준)
- 90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31

권두언

- 02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의 국민연금 | 한성신

기획주제

- 05 향후 우리나라 경제전망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에의 시사점 | 양준모
- 15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의 기금운용 | 이준행
- 29 한국 경기상황과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성과 | 원종현

정책분석

- 39 중고령자의 취업 결정요인 | 엄동욱
- 55 고령 가구의 소득과 사적 소득이전 | 김희삼
- 66 고령자 세대의 소득격차 | 석상훈
- 78 공적연금의 기능과 세대간 위험분산(intergenerational risk-sharing) | 최기홍
- 87 국민연금 환혜지와 관련된 제이슈 검토 | 김대호

부록

- 100 국민연금 관련 통계(2008년 7월말 기준)
- 104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32

권두언

- 02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마치며 | 문형표

기획주제

- 05 2008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 김순옥
- 18 재정계산의 재정건정성 평가지표 | 원종욱
- 31 장기추계결과에 따른 장기 기금운용방향 | 연강흠

44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공·사연금제도의 균형발전 방안 | 방하남

정책분석

57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박무환

68 독일의 재정계산제도와 시사점 | 이용하

79 국민연금기금의 환해지 전략에 대한 평가 | 정문경

89 국민연금기금 외부 위탁운용의 주요 이슈 검토-주식 위탁운용을 중심으로 | 김대호

100 경제활동인구의 장기 변동과 요인별 기여도 | 최기홍

109 분권화된 자산분배의 유인기제 역할에 관한 소고 | 이재현

부록

119 국민연금 관련 통계(2008년 10월말 기준)

123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33

권두언

02 국민연금에서의 재활서비스 도입 필요성과 전망 | 한수균

기획주제

05 국민연금 장애판정체계와 재활서비스제도: 현황과 과제 | 우해봉

13 국민연금의 재활서비스 도입의 타당성 검토 | 김진수

21 재활서비스 도입을 위한 장애판정체계 개선방향 | 강동욱

31 산재보험의 재활서비스 현황과 발전방안 | 윤조덕

43 독일 국민연금 재활사업의 역사와 성과 | 이용하

정책분석

52 국민연금 중기재정추계를 위한 주요 거시경제변수 중기전망 | 박무환

59 국민연금 수급부담 구조 분석 | 한정림

69 국민연금기금 운용비용 분석 및 그 의의 | 김대호

79 월간수익률 산출 방식에 따른 기금운용 수익률 오차에 대한 사 분석 | 정문경

86 소비자 선택이론과 Aaron의 조건에 대한 소고 | 최기홍

부록

92 국민연금 관련 통계(2009년 1월말 기준)

96 0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34

권두언

02 금융위기와 국민연금기금 | 김원식

기획주제

05 금융위기가 연금에 미친 영향과 정책 방안 | 신진영

12 금융위기와 연금의 리스크관리 | 홍정훈

20 해외연기금의 중장기 운용목표와 위기대응 | 박태영

연금포럼

Pension Forum

발간목차

정책분석

- 30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 그 실태와 개선방향 | 김우찬
- 40 전략적 자산배분과 ALM | 이재현
- 50 국민연금 국내주식의 운용성과와 과제 | 김대호
- 62 연금기금축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고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박무환
- 72 영국의 연금개혁과정과 주요내용 | 김성숙
- 81 국민노후보장패널에서의 무응답 대체 : 가구소득을 중심으로 | 석상훈

부록

- 91 국민연금 관련 통계(2009년 4월말 기준)
- 95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35

권두언

- 02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상호 협력적 발전방향 | 박현열

기획주제

- 05 노후소득보장 내실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발전방향 | 이용하
- 12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를 위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 류건식
- 22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정착을 위한 제도적 과제 | 권혁주
- 30 영국과 스웨덴의 공사연금 통합 급여정보서비스의 사례와 시사점 | 김원섭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 37 최근의 출구전략(exit strategy) 논의배경 및 시사점 | 박무환
- 48 한국 노동패널 데이터에 의한 소득계층별, 연령별 노동생산성 곡선의 추정 | 최기홍
- 57 국민연금기금의 해외주식 벤치마크 검토 | 김대호
- 65 독일 예술가사회보험제도(Ku·nstlersozialversicherung: KSV) | 김태완·권영혜
- 75 국민연금 수급자 전망(2010~2014년) | 신경혜
- 85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 분석 | 신승희

부록

- 95 국민연금 관련 통계(2009년 7월말 기준)
- 99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36

권두언

- 02 국민연금기금운용과 ALM의 도입 요성 | 백화중

기획주제

- 05 Dynamic ALM의 중요성과 그사: 부채와 자산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 Arun Muralidhar
- 16 공적연금기금의 자산배분-ALM 접근방법 | Yvonne Sin
- 29 2004년 일본공적연금개혁의 위험분석 | 기타무라토모키
- 36 국민연금기금의 ALM 모형: 사례 연구 | 이재현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 43 글로벌 금융충격의 주요 거시경제변수 파급효과 | 박무환
- 51 각국 공적연금 재정계산에서의 인구·경제변수 가정 비교-10개국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 김순옥
- 62 국민연금 가입세대별 소득대체율 및 내부수익률의 변화 전망 | 최기홍
- 71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관계에 대한 해석적 접근 | 김형수
- 83 국민노후보장패널 2차 부가조사 무응답가구의 무응답유형 및 특성 분석 | 송현주·김균희
- 94 미국OASDI의 확률적 재정추계 방법 | 신경혜
- 104 국민연금기금의 성과요인분해방법론 소개 및 향후 과제 | 김대호

부록

- 113 국민연금 관련 통계(2009년 9월말 기준)

연금포럼 VOL. 37

권두언

- 02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노후소득보장 | 방하남

기획주제

- 04 우리나라 인구전개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의미 | 김태현
- 12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국민연금의 역할 | 배준호
- 20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국민연금재정 | 김순옥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 28 연금재정추계를 위한 거시경제변수 중기전망 | 박무환
- 36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요성에 대한 재해석-부채헤징수단으로서의 주식투자 | 정문경
- 43 위탁운용 보수의 적정규모 산정에 관한 연구 | 남재우
- 54 국민연금 해외주식 운용성과 분석 | 김대호
- 63 공적연금 가입자의 직업력 분석: 노후소득보장에 주는 시사점 | 최옥금

부록

- 74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0년 1월말 기준)
- 78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38

권두언

- 02 국민연금의 리스크관리 | 이준행

기획주제

- 04 국내 외환시장 특징과 환위험 관리 | 정영식
- 12 위험예산제도와 액티브위험의 관리 | 남재우
- 20 국민연금 기금의 대체투자 공정가치 평가 현황 및 방향 | 정문경
- 28 국민연금 기금의 대체투자자산 위험관리 방안 | 박성준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 39 국민연금 가입자관리의 적정성 분석 | 이용하
- 48 기초 노령연금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 | 석상훈
- 58 재정방식별 연금기금자산의 경제성장 견인효과 비교분석 | 박무환
- 67 해외 포트폴리오 환관련 성과의 검토 및 해석 | 김대호

부록

- 75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0년 4월말 기준)
- 79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39

권두언

- 02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권 확대 필요성 | 백화중

기획주제

- 05 여성의 공적연금 수급권 확대방안 | 석재은
- 14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적정성 확보에 있어서 공적연금의 역할 | 황정임
- 25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권 확대방안 | 김경아
- 35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제도 현황과 발전방향 | 유호선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 45 공적연금 재정분석에서의 밸런스시트방식 접근: 외국의 동향과 시사점 | 김순옥
- 56 생산함수 접근법에 의한 잠재GDP 추정 및 관련 시사점 | 박무환
- 65 생애주된일자리와 가교일자리를 중심으로 살펴본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과정 | 최옥금
- 77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운용 투자유형 검토와 시사점 | 김대호

부록

- 86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0년 7월말 기준)
- 90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40

권두언

- 02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요성과 방안 | 이찬우

기획주제

- 04 외환시장 파급효과를 고려한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규모 | 류두진
- 15 국민연금기금의 해외 M&A 투자전략 | 이호선
- 26 국민연금기금의 해외 인프라 투자방안 | 박성준
- 38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를 위한 리스크 시스템 구축방안 | 정완호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 45 국민연금재정추계를 위한 동태적 전망모형의 유용성 분석 | 박무환
- 53 재정방식 및 적립수준에 대한 평가: 캐나다연금의 접근과 시사점 | 김순옥
- 66 자산배분 목적 파생상품 평가 방법 검토 | 김대호
- 75 금융위기 이후의 공적연기금의 운용환경 및 정책 변화 | 박원웅

부록

- 86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0년 9월말 기준)
- 90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41

권두언

- 02 국민연금 가입구조 개편 방안 검토 | 이상영

기획주제

- 04 현행 가입구조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 김용기
- 12 국민연금 가입자관리에서 해외사례의 시사점 | 김성숙
- 20 가입자관리구조의 개편방향 검토 | 이용하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 27 특수직종근로자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 김상호
- 33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급연령 연계방안 | 김현수
- 41 비스마르크안 국가들의 연금개혁 동향 - 프랑스, 그리스를 중심으로 | 유호선
- 48 2011 국내외 경제전망 - 주요 기관별 전망 중심으로 | 박무환
- 54 국민연금기금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에 관한 고찰 | 남재우
- 60 사모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 시장 현황 및 국민연금에의 시사점 검토 | 김대호
- 69 미국 주-지방정부 연금 재정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 | 이호선

부록

- 76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0년 12월말 통계)
- 80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42

권두언

- 02 인구 고령화의 예상과 현실의 괴리 | 김상균

기획주제

- 05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전망과 정책적 함의 | 이삼식
- 21 확대되는 노후소득 불평등과 대책 | 배준호
- 33 고령 노동시장 정책의 방향 | 권혁진
- 40 100세 시대 대응을 위한 국민연금의 정책과제 | 윤석명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 49 경제성장의 수렴이론에 대한 실증분석 및 관련 시사점 | 박무환
- 56 국민연금기금의 청산된 사모투자펀드 수익률과 요인 분석 | 정문경
- 64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가 소득계층별 후생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 최기홍
- 73 자산군분류체계 개편에 대한 해외연기금 동향 | 이호선

부록

- 79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1년 3월말 통계)
- 83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43

권두언

- 02 국민노후보장패널의 성과와 과제 | 백화중

기획주제

- 04 공적연금이 노후의 경제적 삶과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 석상훈
- 10 기초 노령연금의 노인 빈곤 감소 효과 | 김희삼
- 19 국민노후보장패널로 본 중·고령자의 은퇴 | 권혁진
- 30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표본 추가의 필요성 | 김재광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 41 복구의 연금개혁과 시사점 | 김성숙
- 5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내용과 그 의의 | 김현수
- 57 공적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주요 거시경제변수 장기 전망모형의 타당성 분석 | 박무환
- 66 Lee-Carter 모형을 활용한 사망력 예측과 불확실성의 측정 | 우해봉

부록

- 75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1년 6월말 통계)
- 79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44

권두언

- 02 국민연금 대체투자의 성과평가 | 이준행

기획주제

- 04 연기금의 대체투자 벤치마크 설정기준과 해외사 | 복재인
- 11 국민연금 부동산 성과평가 현황과 향후 전망 | 노상윤/황정욱
- 20 국민연금 SOC 성과평가 현황과 개선방향 | 정문경
- 28 국민연금 사모투자 성과평가 현황과 개선방향 | 남재우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 36 연기금의 부동산투자 요성과 전략 | 고성수
- 43 국내외 M&A시장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박성준
- 52 공적연금 재정방식의 이해 | 이용하
- 59 남부유럽 국가들의 연금개혁 동향: 연금제도의 유럽화(Europeanization)? | 유호선
- 71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우리나라의 GDP갭 분석 | 박무환
- 81 거시경제변수의 장기전망 방법론: 성장회계 vs 중첩세대 일반균형 | 최기홍
- 91 Hernes 모형을 활용한 혼인율 분석과 전망 | 우해봉

부록

- 99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1년 9월말 통계)

103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45

권두언

0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 양성일

기획주제

04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방안의 개선방향 | 윤석명

14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연금 크레딧 | 김수완

22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 | 심규범

32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확대 | 정병우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37 유럽연합의 연금제도 발전을 위한 준거틀 : 개방형 조정방식(Open Method Coordination) | 유호선

46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수급액 만족도에 대한 연구 | 권혁창

55 국민연금기대자산이 개인연금자산 형성에 미치는 영향 | 이은영

65 2012 국내외 경제전망 : 주요 기관별 전망 중심으로 | 박무환

71 비임금근로자비율의 변화에 대한 요인분해와 국민연금에 대한 시사점 | 최기홍

78 덴마크 ATP의 기금운용목표 설정과 성과보수체계에 관한 소고 | 노상윤

부록

87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1년 12월말 통계)

91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46

권두언

02 국민연금의 투자다변화 필요성과 기금운용 방안 | 신진영

기획주제

04 국민연금과 사회책임투자(SRI) | 권순원

13 헤지펀드의 특성과 위험관리 | 주상철

21 국민연금기금의 실물투자 방안 | 박성준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31 국민연금 대체투자 성과평가 벤치마크에 대한 소고 | 정문경

36 해외DFI(정책금융기관)의 Private Equity 투자 동향과 정책적 함의 | 김대호

47 영국의 공적연금 개혁은 진행 중?: 2005년 터너 위원회 이후 | 김현수

53 사회보험료 지원과 근로장려세제 해외 사 검토 및 시사점 | 최옥금

61 근로유형별 사회보험 가입현황과 시사점 | 김경아

부록

67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2년 3월말 통계)

71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47

권두언

02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의한 중단분석의 의미와 발전과제 | 김성숙

기획주제

04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산보유 현황과 시사점 | 남상호

15 노인 세대의 빈곤 추이와 특징 | 석상훈

23 노인층의 연령별 소비지출의 변화 | 김정근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30 남·북유럽 국가의 복지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 신기철

42 네덜란드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 동향 | 유호선

51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및 관련 시사점 | 박무환

60 거시경제변수의 장기적 관계와 사회보험의 역설에 대한 소고 | 최기홍

66 미국 CalPERS의 헤지펀드 투자사 및 시사점 | 주상철

부록

75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2년 6월말 통계)

79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48

권두언

02 3차 재정계산의 과제 | 김용하 기획주제

04 2011 통계청 인구전망과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의 인구전망의 역할 | 이삼식

14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모형 개선방향 | 이항석

21 주요국의 재정평가기준을 통한 국민연금 재정평가방법에 관한 제언 | 원종욱

33 미국 및 캐나다의 재정추계 수행체계의 시사점 | 최장훈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40 2008년 칠레 연금개혁의 내용과 시사점 | 최옥금

47 일본 연금개혁 2개 법안의 성립과 공적연금을 둘러싼 문제 | 성혜영

53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정책이 연령집단별 내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실험적 추계 | 최기홍

63 2013년 국내외 경제전망 - 주요 기관별 전망 중심으로 | 박무환

70 국민연금의 직접운용과 위탁운용 성과 비교 | 정문경

부록

78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2년 9월말 통계)

82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49

권두언

02 기부연금 도입 필요성과 전망 | 박금렬

기획주제

- 05 기부연금 도입과 나눔문화 | 전현경
- 13 한국에 적합한 기부연금 도입방안 | 신기철
- 24 미국의 기부연금 운영과 시사점 | 김경아
- 31 기부연금 운영에서의 공단의 역할과 필요성 | 최기영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 39 연금 민영화에서 다시 공적연금으로: 2005~2008년 아르헨티나 연금개혁 과정 | 최옥금
- 46 대만의 국민연금 도입과정 | 성혜영
- 55 노르웨이의 연금 개혁 | 유호선 61 OASDI 재정지표에 의한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의 분석 가능성 | 최기홍
- 70 캐나다 CPPIB 투자전략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 주상철

부록

- 78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2년 12월말 통계)
- 82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50

권두언

- 02 고용, 거시경제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 김용

기획주제

- 04 장기 경제성장 전망과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시사점 | 신석하
- 12 노동시장 전망과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 금재호
- 21 기금운용수익률의 장기적 변화와 기금운용 전략 | 양준모
- 30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의 목적, 현황 및 발전방향 | 성주호
- 40 국민연금제도와 재정추계 : 국민신뢰를 향하여 | 전병목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 47 독일 리스터 연금의 현황과 과제 | 정인영
- 55 '노인실태조사'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노후생활 현황을 중심으로 | 김경아
- 63 국민연금 적용상태 변동유형과 노후소득구성 추이 | 송현주
- 71 연금부채 산출방법 비교 | 최장훈
- 80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확대와 환위험관리 | 주상철
- 90 해외사례로 살펴본 국내부동산 시장지수 작성을 위한 기반조성 방안 | 노상윤
- 99 2012년도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운용 성과분석과 개선 방향 | 정문경

부록

- 106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3년 3월말 통계)
- 110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목차

연금포럼 VOL. 51

권두언

- 02 국민연금의 장기기금 운용방향 | 김경수

연금포럼

Pension Forum

발간목차

기획주제

- 04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필요성 및 확대방안 | 김병덕
- 13 국민연금기금 목표투자수익률 분석 | 신성환
- 23 국민연금의 장기투자 정책과 위험관리 | 신진영
- 31 기금의 장기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 | 남재우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 40 이태리 연금 개혁의 정치경제 | 유호선
- 48 패널자료를 이용한 노후소득원 추정 | 이은영
- 56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구성 변화와 그 의미 | 김현수
- 65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이력자료의 세대별 구조에 대한 기초 분석 | 최기홍
- 75 해외 연기금의 책임투자 동향과 시사점 | 김순호
- 81 통화 오버레이를 활용한 환위험관리 | 주상철

부록

- 106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3년 6월말 통계)
- 110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목차

연금포럼 VOL. 52

권두언

- 02 국민노후보장패널의 성과와 과제 | 김성숙

기획주제

- 04 적정노후소득 추정과 노후소득원 확보 방향 | 강성호
- 12 독거노인의 이전소득추이 및 시사점 | 송현주
- 21 준고령자의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의 노후준비 영향 | 김미령
- 34 배우자 사별후 고령층의 가구소득변화 분석 | 김정근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 44 연금개혁의 효과성: OECD 국가들의 1990년 이후 연금개혁의 성과를 중심으로 | 권혁창·김평강
- 53 일본의 사회보장 및 세제일체개혁 시 사회적 합의 과정 | 유호선
- 62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분위별 소득수준과 가입기간 | 최기홍
- 69 미국 출구전략 추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성명기
- 79 독일과 일본의 자동조정장치 비교·분석 | 최장훈

부록

- 101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3년 9월말 통계)
- 105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목차

연금포럼 VOL. 53

권두언

- 02 국민연금 크레딧 개선논의 동향 | 양성일

기획주제

- 04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도의 개선방안 | 김진·이정우
- 13 공적연금에서 크레딧제도의 개념과 의미 | 제갈현숙
- 17 독일의 크레딧 제도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 김경아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 24 일본의 피용자연금 일원화 과정 | 성혜영
- 30 국내외 실물경제 회복속도 검토 | 성명기
- 37 국민연금기금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 주상철
- 44 국내 인프라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 노상윤
- 51 연기금의 사모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정문경

부록

- 58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3년 12월말 기준)
- 63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목차

연금포럼 VOL. 54

권두언

- 02 국민연금과 거시경제 | 김석진 기획주제
- 04 국민연금제도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 양준모
- 12 국민연금기금의 거시경제적 효과 | 홍기석
- 20 국내외 거시금융 환경변화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시사점 | 송치영
- 28 국민연금이 소비와 저축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성명기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 36 독일의 공적연금 관리운용과 시사점 | 정인영
- 46 영국 공적연금 단일화 개혁 내용과 의의 | 최옥금
- 53 국민연금 급여 산식의 구조와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재검토 | 최기홍
- 60 국민연금 국내주식 운용성과와 경제변수의 국면별 관계 분석 | 정문경
- 67 글로벌 통화시장의 특징과 외화관리에 대한 시사점 | 주상철

부록

- 74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4년 3월말 통계)
- 79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목차

연금포럼 VOL. 55

권두언

- 02 연금의 리스크관리와 성과평가 | 길재욱

기획주제

- 04 대체투자의 현황과 유의점 | 변진호
- 13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체계(기간) 개선방안 | 박영규
- 23 미국 정책금리 인상과 국민연금 해외투자 기회와 위험 | 강대일

36 스마트 베타와 연기금 투자전략 | 최영민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44 최근 연금 시위를 통해 살펴본 싱가포르 연금제도의 과제와 시사점 | 최옥금

52 OASDI의 계리적수지차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 최기홍

61 라소 모형을 이용한 자산의 추정 | 최장훈

68 거시경제 및 제도변화가 국민연금 가입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성명기

74 해외연기금의 투자정책서 비교분석 | 박태영

82 글로벌 메가프로젝트 사업의 위험과 시사점 | 노상윤

91 국민연금 국내주식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의 성과 분석 | 정문경

99 국민연금기금의 환헤지 정책의 효과 | 주상철

107 해외 주요연기금의 기금운용 및 보상체계 비교 | 황정욱

부록

118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4년 6월말 기준)

123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56

권두언

02 기초 연금의 성공적 안착을 기대하며 | 조남권

기획주제

04 우리나라 노인빈곤 현황과 기초 연금의 필요성 | 김태완

13 노인기초 보장제도의 유형 | 이용하

19 외국의 노인기초 보장제도 운영실태 | 김원섭·이용하

26 우리나라 기초 연금의 특징과 향후 검토 과제 | 최옥금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33 국민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판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정인영

42 일본의 정년제 법제화 과정과 공적연금제도와의 관련성 | 김현수

51 최근 주요국의 연금수급자 지원서비스 사례와 시사점 - 호주, 미국, 독일을 중심으로 - | 김경아

59 사회보장연금의 연금부채에 대한 동향과 시사점 | 최기홍

66 국내부동산 투자기회와 투자다각화 방안 | 노상윤

부록

76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4년 9월말 기준)

81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57

권두언

02 1인 1연금을 향한 첫걸음 경력단절 여성, 실직자, 저소득근로자 등 사각지대 해소 | 조남권

기획주제

04 최근 노후소득보장 강화 장치의 젠더적 실효성에 관한 시론 | 김수완

- 12 유족연금수급권의 재혼 시 소멸 타당인가 | 권문일
- 20 여성 노인의 빈곤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공적노후소득보장을 중심으로 | 김경아
- 26 독거노인의 소득보장제도 수급 실태 및 대안적 정책의 활용 가능성: 젠더(gender)에 따른 비교 | 송현주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 33 영국 공적연금 급여 연동 변화 과정과 시사점: 국가기 연금과 연금크레딧을 중심으로 | 최옥금
- 41 비근로자를 위한 보충연금제도 해외사례와 시사점
- 일본 국민연금기금 제도와 뉴질랜드 Kiwisaver의 비교 - | 성혜영
- 48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분위별 가입기간과 소득대체율 | 최기홍
- 56 최근 저물가 요인과 향후 전망 검토 | 성명기
- 65 액티브 외화관리전략의 특징 및 수익성 | 주상철

부록

- 73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4년 12월말 기준)
- 78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58

권두언

- 01 국민연금 중기재정 추계를 위한 거시경제 여건과 전망 | 양준모

기획주제

- 04 잠재성장률 추정과 중기성장률 전망 | 이준상
- 14 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전망 | 이항용
- 21 고용 및 임금 추이와 중기전망 | 장인성
- 30 3요인 금리기간구조를 이용한 채권수익률 예측 | 이준희, 김태연
- 39 대외경제 여건과 전망 | 성명기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 51 일본 공무원 공제연금과 후생연금보험의 일원화 과정이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 개혁에 주는 시사점 | 김현수
- 58 장기재정추계를 위한 사망률 전망 | 최장훈
- 67 국민연금 이력자료에 의한 계층별 생애 가입기간의 전망 모형 | 최기홍
- 77 국민연금 대체투자의 성과와 위험 분석 | 정문경
- 85 미국 CalPERS의 부동산투자 다각화 정책 및 시사점 | 노상윤

부록

- 92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5년 3월말 기준)
- 97 연금포럼(Pension Forum) 발간 목차

연금포럼 VOL. 59

권두언

01 자산배분 및 투자 다변화 | 연강흠

기획주제

- 03 국민연금기금의 기준포트폴리오 | 이재현
- 11 해외대체투자 확대 현황 및 시사점 | 남재우
- 19 헤지펀드를 고려한 전략적 자산배분 | 최영민
- 29 주식시장의 위험프리미엄 예측에 따른 투자전략 | 손경우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 38 노인가구의 소득수준과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국가 간 비교 | 이순아
- LIS 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
- 48 호주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소득, 재산조사 방식과 최근 동향 | 최옥금, 한신실
- 55 선진국의 공적연금제도 형태와 시사점 | 정인영
- 62 캐나다 CPPIB의 대체투자 평가방법과 시사점 | 정문경
- 72 미국 CalSTRS의 부동산 투자정책과 시사점 | 노상윤
- 81 해외 연기금의 자산배분 동향 비교와 시사점 | 이정화

부록

- 92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5년 6월말 기준)
- 97 연금포럼 발간목차

연금포럼 VOL. 60

권두언

01 노인 빈곤 해소와 국민노후보장패널의 역할 | 김성숙

기획주제

- 03 한국 노인의 다차원 빈곤 실태와 시사점 | 황남희
- 12 노년기 경제적 능력과 신체적 건강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이종하·조지용
- 21 노인빈곤과 우울감 간의 관계 | 김태완
- 32 국민연금 제도 성숙에 따른 노인빈곤 개선 효과 | 강성호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분석

- 41 중·고령자에 대한 공적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 김현수
- 49 한국, 미국, 일본 노인 가구의 소비지출 비교 | 성혜영
- 56 기초연금 시행 후 노인의 가계동향 | 이은영
- 66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와 소득계층별 급여수준의 모의실험 | 최기홍
- 74 연기금 적정 환혜지비율에 관한 소고 | 주상철

부록

- 83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5년 8월말 기준)
- 88 연금포럼 발간목차

연금포럼 VOL. 61

권두언

01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의의 | 박인석

기획주제

0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 이병희

1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 최옥금

20 실업 크레딧 제도의 의미와 도입과제 | 김진수

29 해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현황과 시사점 | 유호선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분석

39 호주 연금수급자 및 사회보장급여 생계비 지수 소개 및 시사점 | 최옥금·한신실

47 통일 후 사회복지분야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 민기채

59 최근 국내의 실물경제 여건 검토 | 성명기

70 세계 원자재 시장 동향 및 전망 | 권미애

79 미국 대형 연기금의 운용 현황 | 원상희

89 정부3.0 하의 주요 공공기관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사업현황과 시사점 | 노상윤

부록

98 국민연금관련통계(2015년 12월말 기준)

103 연금포럼 발간목차

연금포럼 VOL. 62

권두언

01 국민연금과 거시경제 | 양준모

기획주제

04 인구구조 변화와 국민경제 | 성명기

09 고령화, 국민연금과 실물경제 | 홍기석

17 고령화, 국민연금 그리고 금융시장 | 유경원

27 고령화와 노동인력의 특징 및 변화 전망 | 장인성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분석

36 뉴질랜드의 긍정적 노후 전략(Positive Ageing Strategy)과 시사점 | 이상봉

46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정책과제와 대안 검토 | 유희원

61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와 정책적 시사점 | 최기홍

69 연기금의 옵션-복제 동태적 환헤지 전략 | 주상철

78 해외 주요 연기금의 해외투자 및 외환 정책 | 원상희

부록

88 국민연금관련통계(2016년 3월말 기준)

93 연금포럼 발간목차

연금포럼 VOL. 63

권두언

01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방향 | 강면욱

기획주제

03 베이비붐 관점에서 대체투자 전략에 대한 소고 | 한상일

14 책임투자의 기회와 과제 | 조 훈

22 국민연금 헤지펀드 벤치마크 설정에 관한 제언 | 최영민

32 국민연금 액티브운용 관리 체계의 전략적 과제 | 강대일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분석

44 헝가리의 법정 민간연금제도의 도입과 폐지에 관한 고찰 | 민기채

52 Scaled Factor를 활용한 미국 OASDI의 수급부담구조 분석 | 한정림

60 국장기운용성과 개선을 위한 해외 연기금의 투자전략 동향 | 이정화

부록

70 국민연금관련통계(2016년 6월말 기준)

75 연금포럼 발간목차

연금포럼 VOL. 64

권두언

01 장애소득보장제도의 중장기 발전과제 | 문형표

기획주제

03 장애인의 경제상태와 정책적 시사점 | 김성희

12 장애소득보장체계의 현황 및 과제 | 윤상용

20 장애연금과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역할분담관계에 대한 해외사례 분석 | 정인영

32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역할정립을 위한 정책과제 | 오욱찬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43 OECD 국가들의 은퇴 준비 재무교육 동향과 시사점 | 성혜영

50 저금리 환경이 국민연금 장기재정에 미치는 영향 | 권미애

58 환 헤지 전략의 제약이 해외투자 배분에 미치는 영향 | 손경우

부록

65 국민연금관련통계(2016년 8월말 기준)

70 연금포럼 발간목차

연금포럼 VOL. 65

권두언

01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과 재정목표 설정 방안 | 김용하

기획주제

04 공적연금의 재정방식과 재정목표 | 유호선

- 14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논의방향 | 윤석명
- 26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과 재정목표 | 전병목
- 35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의 새로운 접근에 관한 시론 | 김연명
- 45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과 재정목표 논의를 위한 제안 | 오건호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분석

- 52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과 임금 관계 검토 | 성명기
- 60 국민연금 소득재분배의 통계적 측정 | 최기홍
- 69 기대여명을 이용한 노령연금 수급기간 전망과 국민연금 수급부담구조 분석 | 한정림
- 77 GDP 연계채권과 국민연금 | 손경우
- 84 트럼프정부의 인프라투자 확대 발표와 공적연기금의 인프라투자 현황 | 이정화

부록

- 91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6년 12월말 기준)
- 96 연금포럼 발간목차

연금포럼 VOL. 66

권두언

- 01 무엇을 위한 장기재정추계인가? | 성주호

기획주제

- 03 2016년 인구추계와 재정계산 | 신화연
- 14 기금운용환경 변화와 기금투자수익률 | 이항용
- 23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노령연금 수급 현황과 특징 | 권혁진
- 35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과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 최강식
- 49 국민연금 제도 관련 변수의 최근 변화 추이 | 윤병욱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분석

- 62 폴란드의 연금제도 - 개혁배경 및 현황 | 유호선
- 74 노년기의 공적연금 수급권과 결혼 불안정성에 관한 연구 | 안서연
- 83 국민연금 상품투자의 기대효과 및 시사점 | 주상철
- 92 국민연금의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지표와 의미 | 최기홍

부록

- 102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7년 3월말 기준)
- 107 연금포럼 발간목차

연금포럼 VOL. 67

권두언

- 01 국민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 길재욱

기획주제

- 04 연금의 자산배분과 팩터(Factor) 기반 SAA | 이준행
- 14 국민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의 한계와 극복 방안 | 손경우

23 Black-Litterman모형을 이용한 국민연금의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방안 | 원종욱

36 ALM 모델의 활용 현황 및 개선과제 | 김민정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분석

45 한국과 일본의 공적연금 비교 검토 | 성명기

59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와 외환시장 | 주상철

69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 국제기구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 유호선

82 책임준비금 적립방법으로 살펴본 개인연금 수급부담구조의 이해 | 한정림

90 기금운용성과에 대한 환혜지의 영향 | 태업철

103 미국 CalPERS의 적립위험과 위험완화정책 | 이정화

부록

115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6년 6월말 기준)

120 연금포럼 발간목차

연금포럼 VOL. 68

권두언

01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빈곤 실태와 향후 과제 | 이용하

기획주제

03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실태: 객관적 빈곤과 주관적 빈곤의 비교분석 | 황남희

15 중고령 노인의 빈곤특성에 관한 연구: 소득빈곤, 의료빈곤, 자산빈곤을 중심으로 | 김경휘

29 여성의 중고령기 이혼 및 사별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 수급을 중심으로 | 조보배·최요한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41 퇴직연금 자산의 연금화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 김현수

54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일반균형 세대간회계 접근법 | 최기홍

64 인구구조 고령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 성명기

75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동향 및 시사점 | 최영민

부록

85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7년 9월말 기준)

90 연금포럼 발간목차

연금포럼 VOL. 69

권두언

01 고령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논의 필요 | 장호연

기획주제

04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 쟁점 그리고 발전방향 | 김수완

18 복지국가형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 김원섭

26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와 국민연금의 역할 및 향후 과제 | 김현수

39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 퇴직연금의 역할과 향후 과제 | 정창률

51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 기초연금의 역할 및 향후 과제 | 최옥금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분석

59 분할연금제도의 법적 성격 고찰 | 유호선

65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 불평등 변화: 공적연금 수급과 사회인구학적 조건을 중심으로 | 안서연

79 OASDI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대체율: 평가방법에 따른 의미와 비교 | 한정림

88 일본의 금융 완화정책이 연기금 운용에 미치는 영향 | 이정화

부록

98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7년 12월말 기준)

103 연금포럼 발간목차

연금포럼 VOL. 70

권두언

01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와 경제 | 박무환

기획주제

03 한일 인구구조와 성장잠재력 추이 비교 | 성명기

15 한일 노동구조 변화 추이 비교 | 박철성

29 한·일 가계경제 변화 추이 비교 | 유경원

45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및 재정의 한일 비교 | 양준모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분석

58 임의가입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여량 분포 분석 | 한정림

67 노인의 소득-자산을 이용한 빈곤의 재측정 | 안서연

79 국민연금의 세대간 부양과 재보험 | 김형수

부록

88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8년 3월말 기준)

93 연금포럼 발간목차

연금포럼 VOL. 71

권두언

01 국민연금의 성과평가와 보상체계 | 신진영

기획주제

04 국민연금기금 대체투자 성과평가 방안 | 남재우

14 성과평가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 강병진

27 성과평가를 위한 위험분해방안 | 김명현

37 국민연금 성과 요인분석과 그 의의 | 정창률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분석

49 미국 공적연금제도 도입 이후 노후생활 변화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성혜영

61 우리나라, 일본 및 캐나다 재정계산보고서의 가입자 평균소득 전망 방법 비교 | 한정림

71 OASDI와 CPP로 살펴본 국민연금 재정지표 | 김형수

부록

81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8년 6월말 기준)

86 연금포럼 발간목차

연금포럼 VOL. 72

권두언

01 기초연금 시행 4년,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 서일환

기획주제

03 기초연금의 제도성격 및 발전방향 | 이상은

14 기초연금과 관련 제도의 재정립 | 오건호

2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내용 및 검토사항 | 최옥금

32 기초연금 차등보조율 현황과 향후 과제 | 안서연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분석

39 국민연금 주식대차 현황과 공매도 영향 | 원종현

52 1985년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과 시사점 | 성혜영

60 중·고령자 근로욕구 실태와 시사점 | 송현주, 임란, 왕승현

부록

71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8년 9월말 기준)

76 연금포럼 발간목차

연금포럼 VOL. 73

권두언

03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의 의의와 향후 과제 | 류근혁

기획주제

06 노후소득보장의 적정 수준과 확보 방안 | 정해식

17 국민연금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사회적 합의: 왜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 최영준

30 국민연금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 원종현

4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 | 김현수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분석

51 저소득노인 소득보장 해외사례 및 지원강화 시 고려사항: 호주·캐나다를 중심으로 | 최옥금

63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여패턴이 국민연금 급여수준에 미치는 영향 | 한정림

73 최근 경제동향과 국민연금 변화 추이 | 성명기

84 고령화와 가계 저축률 | 김경빈

95 변동성 지수와 기금운용 과제 | 최영민

부록

103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8년 11월말 기준)

108 연금포럼 발간목차

연금포럼 VOL. 74

권두언

03 2018년 제4차 재정추계를 마치고 | 성주호

기획주제

06 제4차 재정계산 방법론에 대한 소고: 거시경제변수 전망 방법론을 중심으로 | 윤병욱

14 제4차 재정계산의 제도변수 전망 방법론과 향후 보완 | 이항석/이가은

23 제4차 재정계산과 기금수익률 가정 | 이항용

32 납부예외자 비율과 지역가입자 비율 추정에 고려할 노동시장 구조와 동향 | 허재준

44 재정계산과 남은 과제 | 전병목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54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과 최근 기업배당 | 최희정

65 해외노인기초보장제도의 수급권 강화를 위한 노력과 우리나라 기초연금에 주는 시사점 | 최옥금

73 국내 상장기업들의 이전상장 현황 및 운용전략에 주는 시사점 | 조은영

85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성명기

부록

96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9년 3월말 기준)

101 연금포럼 발간목차

연금포럼 VOL. 75

권두언

02 기금운용본부 20년 성과와 향후 과제 | 안효준

기획주제

07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방안: 기금분할 운용을 중심으로 | 이준행

19 연금재정과 기금운용 전략 | 전창환

30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 현황 및 시사점 | 조은영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49 국민연금소득재분배 기능과 후생효과 | 김혜선

57 국민연금 주요 개혁논의의 전환: 실질 소득대체율 개념을 중심으로 | 문현경

69 10년 미만 가입자의 가입행태와 특성: 연금수급을 위한 비용 편익 분석 | 한정림

78 연금수급과 근로활동 병행에 대한 논의 동향과 해외사례 검토 | 김혜진/유현경

91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운용 유형체계 현황 및 개편방향에 대한 시사점 | 태엄철

105 국민연금 대체투자 투자현황과 과제 | 이성훈

부록

117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9년 6월말 기준)

122 연금포럼 발간목차

연금포럼 VOL. 76

권두언

03 노후설계 준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 나영희

기획주제

07 노후에 대한 책임인식이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김정근

08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준비가 건강변화궤적에 미치는 영향 | 이은실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29 블록체인(Blockchain)이 자산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최영민

39 최근 캐나다 연금개혁과 국민연금에의 시사점 | 김현수

49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제도의 필요성과 과제 | 류재린

부록

61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9년 8월말 기준)

66 연금포럼 발간목차

연금포럼 VOL. 77

권두언

01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과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 이용하

기획주제

04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현황과 쟁점 | 최영준

19 크레딧 제도 도입 현황과 향후 과제 | 김수완

32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와 지역가입자의 관리강화 및 지원 필요성 | 류재린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47 기초연금의 목표수급률 설정에 대한 소고(小考) | 최옥금

55 캐나다 연금보험료율 인상 경험과 시사점 | 한신실

66 책임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종목의 특징과 성과 | 조은영

80 국내 상장기업 배당수준의 국제비교 | 최희정

92 임의가입 탈퇴 결정요인 분석 | 오유진

부록

100 국민연금 관련 통계(2019년 12월말 기준)

106 연금포럼 발간목차

연금포럼 VOL. 78

권두언

01 공적연금제도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모형: 모형소개와 향후 개발방향 | 이용하

기획주제

04 동태행위모형을 활용한 제도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 동향 | 장인수

- 18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형의 소개 및 시사점 | 류재린
- 29 공적연금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의 구축 방향 | 남상호
- 41 이질적 경제주체를 고려한 동태·확률적 중첩세대 모형:
국민연금 사회후생분석 모형의 소개와 향후 개선방향 | 윤병욱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 48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개선방안 | 최옥금
- 59 2019년 일본 공적연금 재정검증 결과 및 제도개선 과제 | 성혜영
- 66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과 시사점 | 김경빈
- 74 주식시장에서의 꼬리위험 검정 및 기금운용에 주는 시사점 | 조은영
- 83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과 신(新)외부감사법 활용 | 노정희

부록

- 99 국민연금 관련 통계(2020년 1월말 기준)
- 104 연금포럼 발간목차

연금포럼 VOL. 79

권두언

- 01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금융시장 | 안희준

기획주제

- 04 COVID-19: 금융시장 현황 및 과제 | 김창수
- 23 POST-COVID19: 기금운용과 리스크관리 | 이효섭
- 39 POST-COVID19 시대의 회계와 금융의 변화 | 손혁
- 47 COVID-19 대체투자시장 현황 및 기금의 과제 | 노정희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 64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으로서 자동가입 규정의 가능성 | 문현경
- 76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재정정책: 공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 김경빈
- 83 최근 국민연금 해외채권의 운용방향 변화와 향후 과제 | 태엄철

부록

- 97 국민연금 관련 통계(2020년 5월말 기준)
- 102 연금포럼 발간목차

연금포럼 VOL. 80

권두언

- 01 공적소득보장체제와 기초연금의 발전방향 | 이형훈

기획주제

- 04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제도 간 관계 | 최옥금
- 14 기초연금과 직역연금 관계에 대한 해외사례와 시사점 | 김원섭·최옥금
- 26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기적 변화 방향과 기초연금과의 관계 | 정해식

- 42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정책과제 | 한신실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55 중년 1인 가구의 현황 및 사회경제적 취약성 기초분석 | 성혜영
6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현황 및 실태분석 | 문현경·류재린
75 해외 연기금의 공정가치 평가체계 사례와 국민연금에의 시사점 | 태엄철
89 국내외 ESG 투자 동향 및 시사점 | 조은영

부록

- 101 국민연금 관련 통계(2020년 7월말 기준)
106 연금포럼 발간목차

연금포럼 VOL. 81

권두언

- 05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 김용진

기획주제

- 08 노인빈곤문제에 국민연금제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주은선
19 인구구조 변화와 국민연금의 대응방안 | 우해봉
31 해외 연금개혁 사례와 시사점 | 성혜영
40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의 대응과 향후 개선과제 | 문현경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 54 공단의 기초연금 관리운영 현황 및 발전방향 | 최옥금
63 글로벌 대체투자펀드의 성과평가 적정성 분석 | 노정희
73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소고 | 김형수
82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 한신실
94 코로나19 발생 1년 이후 국내외 경제 상황 변화 | 김경빈

부록

- 105 국민연금 관련 통계(2020년 12월말 기준)
110 연금포럼 발간목차

연금포럼 VOL. 82

권두언

- 05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의의와 발전과제 | 이형훈

기획주제

- 08 국민연금 재정계산 운영 개선방안 | 전병목
17 재정추계보고서의 개념과 개선방향 | 이항석
28 한국의 출산율: 동향과 모형들 | 김현태
38 코로나19 이후 경제여건의 변화와 국민연금 재정 | 신석하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 47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방안 | 최옥금

- 56 해외 주요 연금의 ESG 투자전략 및 시사점 | 조은영
- 66 이자율 장기전장에서 실물변수와의 일관성 및 국제이자율 추세 반영의 필요성 | 황선호
- 78 국민연금기금의 증장기 외환 정책 필요성과 방안 | 황준호
- 86 Lee-Carter & 보험계리적 기법을 이용한 장애연금 수급자의 사망률 추정 | 최강훈

부록

- 97 국민연금 관련 통계(2021년 3월말 기준)
- 102 연금포럼 발간목차

연금포럼 VOL. 83

권두언

- 05 국민연금의 ESG에 대한 기대 | 원종현

기획주제

- 08 공적기금의 바람직한 ESG 투자 확대를 위한 제언 | 남재우
- 20 기업의 ESG 대응전략 | 이은정
- 29 기업별 특성 차이를 고려한 ESG 리스크 평가 | 이윤아
- 38 비재무적 측정지표를 활용한 연구(환경 및 사회를 중심으로) 및 ESG공시 이슈 | 배창현
- 51 해외 주요 공적 연금의 기후변화 위험 대응 현황 및 시사점 | 김혜리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 63 주요 해외연금의 사모투자 ESG 현황 및 정책 | 태엄철
- 78 독일과 스웨덴의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개혁 비교 | 유호선
- 91 필요 노후소득의 다양한 산출 방법과 정책적 활용 | 성혜영

부록

- 102 국민연금 관련 통계(2021년 5월말 기준)
- 107 연금포럼 발간목차

연금포럼 VOL. 84

권두언

- 05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노후 준비 실태와 정책 과제 | 권문일

기획주제

- 07 고령층의 연금 수급권 구조 분석 | 황남희
- 18 생애 불안정 노동과 연금 소득 | 김윤영, 백승호
- 31 여성 노인의 빈곤 이행에 대한 배우자 사망과 공적연금 변동의 위험률 | 성혜영, 이은영
- 41 중·고령자 은퇴 가구의 자산 및 부채 보유 행태분석 | 정지수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 52 사모투자 ESG 사례분석 및 시사점 | 노정희, 김수진
- 61 반환일시금 수급자 현황 및 특성과 정책과제 | 김혜진
- 72 프랑스 연금개혁 동향 - 포인트 시스템 도입(안)을 중심으로 | 유호선

- 83 해외 주요 자산운용사의 대체투자 ESG 현황 및 정책 | 태업철
- 98 국내외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시사점 | 김경빈
- 107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현황 및 시사점 | 황준호

부록

- 117 국민연금 관련 통계(2021년 7월말 기준)
- 122 연금포럼 발간목차

연금포럼 VOL. 85

권두언

- 05 회색 코뿔소와 검은 고니 | 김상균

기획주제

- 08 5차 재정계산 대비 주요 논점과 재정안정화 방안 | 오건호
- 19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상태 진단과 제도적 재설계 방안 모색 | 정해식
- 31 연금개혁과 급여적정화 방안 | 석재은
- 38 국민연금 급여 적정성 이론적 검토 | 성해영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 58 기후변화와 거시경제 | 황선호
- 69 국내 운용기관의 ESG 투자현황 및 정책-대체투자를 중심으로 | 태업철
- 81 네덜란드의 연금개혁 동향 | 유호선

부록

- 93 국민연금 관련 통계(2021년 12월말 기준)
- 98 연금포럼 발간목차

연금포럼 VOL. 86

권두언

- 05 제5차 재정계산의 미션 | 김용하

기획주제

- 09 재정추계의 발전, 개선논의 및 장기재정균형 | 이항석
- 17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모형 | 김형수
- 26 2021년 장래인구추계로 보는 우리나라 인구전망 | 노형준
- 42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거시경제변수 전망 | 신석하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 49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간 관계에서의 쟁점 | 최옥금
- 59 조기노령연금 주요 현황 및 쟁점 | 김혜진
- 71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제도 검토 - 최소 적립금제도를 중심으로 | 유호선
- 79 해외 주요 공적 연기금의 TCFD 공시 및 시사점 | 김혜리

부록

- 95 국민연금 관련 통계(2022년 2월말 기준)

100 연금포럼 발간목차

연금포럼 VOL. 87

권두언

05 기금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당면 위험과 과제 | 박성태

기획주제

07 국민연금 해외투자 효과 및 향후 과제 | 김병덕

18 해외투자 확대와 대외건전성 | 김경훈

30 국민연금기금의 환효과 및 적정 환헤지 정책 분석 | 김재욱, 강태현

47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가 국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김한수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60 캐나다 공적연금(CPP) 개혁 사례로 살펴본 정상상태 재정방식에 대한 이해 및 시사점 | 최강훈

72 전망을 위한 DSGE 모형의 기본구조 | 황선호

82 임팩트(Impact) 투자 소개와 시장 동향 | 노정희, 김혜리

98 글로벌 연기금들의 기금운용비용 공시현황 및 시사점 | 노정희, 태엄철

부록

116 국민연금 관련 통계(2022년 5월말 기준)

121 연금포럼 발간목차

2022 Pension Forum

등록번호	전주바0026
등록일	2001년 3월 29일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인 · 편집인	김태현(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편집위원장	권문일(국민연금연구원장)
편집위원간사	문현경(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편집위원	성혜영(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한정림(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장) 최영민(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분석실장)
편집실무	유현경(국민연금연구원 전문연구원)
디자인	(사)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 인쇄사업부
인쇄	(사)체육장애인자활협회
발행처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70(만성동) Tel. 063-713-6716 Fax. 063-713-6565 http://institute.nps.or.kr

「연금포럼」을 포함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되는 각종 간행물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국민연금연구원/연구자료실)